

정책연구 2011-17

2011년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및 서비스 제공방안

2011
Global Leader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김 필 두 (연구위원)

이 현 옥 (DATABASE센터)

정 예 슬 (객원연구원)

오 희 환 (선문대)

김 성 현 (중앙대)

전 성 훈 (명지대)

김 현 (고려대)

박 석 민 (나라넷)

김 영 량 (나라넷)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1
3. 연구 내용	2
4. 연구 방법	3
5. 연구 기간	4
제2장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결과	5
제1절 법령내용	7
제2절 타당성 검토	9
1. 타당성 검토 기준	10
2. 검토 결과	13
3. 타당성 검토 완료현황	27
제3장 현황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29
제1절 단위사무 실태파악의 구조	31
제2절 사무배분의 기준	32
제3절 관장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33
1. 국가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33
2.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실태	37
3. 국가 및 지방사무 배분 종합	42

차 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절 사무의 성격별 배분실태	43
1.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43
2. 분야별 배분실태	45
제5절 기존조사와의 비교분석(2010년과의 비교분석) ·	48
1. 조사대상 법령 변동 현황	48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49
3.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58
4. 비교분석의 결과 및 특징(종합)	62
제4장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65
제1절 사무배분기준의 재정립	67
1. 재정립의 목적	67
2. 재정립의 내용	68
3. 재정립의 효과	68
제2절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70
1.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내역	70
제3절 기존 대비 변화(현행 사무배분과의 대비)	79
1. 국가사무 비교	79
2. 지방사무 비교	80
3. 위임사무/법정수입사무 비교	82



제5장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법령 재정비 85

제1절 지방이양사무 발굴 87

1. 사무재분류 현황 87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후속 조치 94

1. 법령 정비 94

2. 인력 및 자원 조정 95

제6장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방안 97

제1절 사업 추진 목적 99

제2절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100

1. 현재 주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0

2. 기존사무 검색 및 연구 방법 102

3. 개선된 사무작업 방안 103

4. 향후 사무조사 DB유리·보수 및 개편관련 예산 상세내역 106

제3절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고도화 110

1. UI(User Interface) 변경 110

2. 연구진 / 관리자 편의기능 추가 구현 111

제4절 법령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114

1. 기존 법령입력 작업의 문제점 도출 114

2. 법령데이터 입력 고도화 115

차 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5절 법령사무DB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준비	117
1. 시스템 고도화 컨셉 설정	117
2. 주요 요구사항(CSF; Critical Success Factors) 분석	118
3. 기능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119
4. 법령사무DB시스템 사이트맵 구성	119
5. 시스템 구조	120
6. 시스템 개발 현황	121
제7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건의	123
1. 연구결과의 활용	125
2. DB의 활용	126
3. 정책건의	126
4. 향후 연구과제	132



부 록 차 례

<부록1 :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 국가사무>	135
<부록2 :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 지방사무>	137
<부록3 :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 국가사무>	139
<부록4 :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 지방사무>	141
<부록5 : 사무유형 변화비교>	143
<부록6 : 통합된 단위사무>	144
<부록7 : 법조문의 폐지·수정에 따라 삭제된 단위사무>	146
<부록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사무>	149
<부록9 : 공동사무의 사무유형 변화(국가)>	166
<부록10 : 공동사무의 사무유형 변화(지방)>	168

표 차례

<표 2-1> 법령입력 현황	7
<표 2-2> 단위사무명 추출 기준	10
<표 2-3> 단위사무 처리권자 기준	11
<표 2-4> 사무유형 구분 체계 기준(원처리권자 중심) ..	12
<표 2-5> 타당성 검토기준 변화	25
<표 2-6> 타당성 검토 완료현황	27
<표 3-1> 사무배분 기준	32
<표 3-2> 부처별 사무배분 실태 종합	33
<표 3-3>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38
<표 3-4>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39
<표 3-5> 광역-기초 공동사무 배분실태	41
<표 3-6> 현행 사무배분 실태	42
<표 3-7> 사무의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43
<표 3-8> 사무의 분야별 배분실태	45
<표 3-9> 조사대상 법령 변동 현황	48
<표 3-10>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사무배분 실태 비교 ·	49
<표 3-11> 법 신설에 의한 사무 유형	54
<표 3-12> 법 개정에 의한 사무 유형	54
<표 3-13> 2010년 지방사무가 2011년 국가사무로 사무 유형이 변경된 법률 사례	55
<표 3-14> 2010년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2011년 광역자치 단체 사무로 사무유형이 변경된 법률 사례 ·	56
<표 3-15>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	58



표 차례

<표 3-16>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	59
<표 3-17> 광역-기초 공동사무 배분 실태	60
<표 3-18> 2010년, 2011년의 사무배분 실태 비교 종합 ...	62
<표 4-1>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70
<표 4-2> 국가사무의 재배분	71
<표 4-3>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방사무	73
<표 4-4> 행정안전부 사무재배분	75
<표 4-5> 사무재배분에 따른 행정안전부 국가사무	76
<표 4-6> 사무재배분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사무	77
<표 4-7>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사무 비율 비교	79
<표 4-8>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지방 사무 비율 비교	81
<표 4-9>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위임/ 법정수입사무 비교	83
<표 5-1> 사무재배분에 따른 사무유형 변화	87
<표 5-2> 사무재배분에 따른 국가사무 유형변화	88
<표 5-3> 사무재배분에 따른 국가사무 유형변화	89
<표 5-4> 사무재배분에 따른 광역/공동(광역기초) 사무 유형변화	91
<표 5-5> 사무재배분에 따른 법정수입사무 유형 분석 ·	91
<표 5-6> 사무재배분에 따른 환원사무 유형 분석	93

표 차례

<표 6-1> 개편내용 비교	106
<표 6-2> 필요 업무 내역(시스템 유지·보수)	107
<표 6-3> 필요 업무 내역(시스템 고도화)	108
<표 7-1> 법령사무DB시스템 운영계획	128
<표 7-2> 법령사무DB시스템 운영계획	129



그림 차례

[그림 3-1] 단위사무 실태파악 구조	31
[그림 3-2] 2011 사무조사 전체 배분 실태	37
[그림 3-3] 광역사무 배분 현황	39
[그림 3-4] 기초사무 배분 현황	40
[그림 3-5] 사무의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44
[그림 3-6] 사무의 분야별 배분실태	46
[그림 3-7] 법령 변동 현황	48
[그림 3-8] 2010년 대비 2011년 전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	53
[그림 3-9] 2010년 대비 2011년 광역사무 배분 실태 비교	59
[그림 3-10] 2010년 대비 2011년 기초사무 배분 실태 비교	60
[그림 3-11] 2010년 대비 2011년 전체 사무배분 비교	63
[그림 3-12] 2010년 대비 2011년 지방사무 배분 비교	63
[그림 4-1]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안	69
[그림 4-2] 사무재배분에 따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	71
[그림 4-3] 사무재배분에 따른 국가사무	72
[그림 4-4]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방사무	74
[그림 4-5] 행정안전부 사무 재배분	75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4-6] 사무재배분에 따른 행정안전부 국가사무	77
[그림 4-7] 사무재배분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사무	78
[그림 4-8]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사무 비율 비교	80
[그림 4-9]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지방 사무 비율 비교	82
[그림 5-1] 사무재분류에 따른 사무유형 변화	88
[그림 5-2] 사무재분류에 따른 국가사무 유형변화	89
[그림 5-3] 사무재분류에 따른 국가사무 유형변화	90
[그림 5-4] 사무재분류에 따른 법정수입사무	92
[그림 5-5] 사무재분류에 따른 환원사무	93
[그림 6-1] 현재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 시스템	102
[그림 6-2] 개선된 사무작업 시스템 예시	103
[그림 6-3] 개선된 조회 시스템 예시	104
[그림 6-4] 개선된 비교 시스템 예시	105
[그림 6-5] 개선된 유관사무 검색 방안	106
[그림 6-6] 법률보기 UI 전환	110
[그림 6-7] 편의기능 추가	112
[그림 6-8] 이력보기 기능	113
[그림 6-9] 단위사무 통계 페이지	113
[그림 6-10] DB테이블 정규화	116
[그림 6-11] 시스템 고도화 컨셉 및 서비스 네트워크	117
[그림 6-12] 기능구현 프레임워크 설정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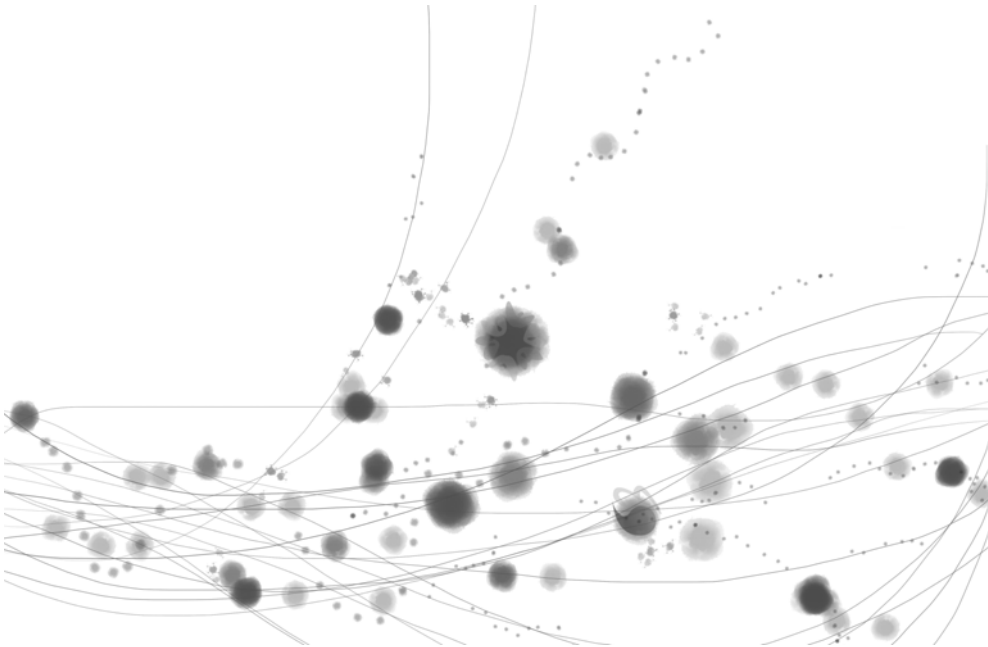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6-13] 사이트맵 구성	120
[그림 6-14] 시스템 구조	121
[그림 6-15] 시스템 개발 현황	122
[그림 7-1]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방안	129
[그림 7-2] 향후 유료화 서비스 제공 방안	130
[그림 7-3] 향후 제공될 서비스 방향	131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 사무총조사 결과의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 사무총조사 결과를 지방자치정책개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수치들의 정확성 확보가 필요
 - － 단위사무 변화의 흐름과 논리 구조의 문제점 보완 및 조정
-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 － 1회성 자료가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령 등의 변화를 작성된 D/B에 적용
 - －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 등의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변화된 법령 등의 반영
 - － 2010. 9. 1. 이후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 반영
 - － 신규 법령 제정시 단위사무 발굴

2. 연구 범위

- 2010년도 법령상 사무총조사 결과의 타당성 검토
- 향후 대국민 오픈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3. 연구 내용

- 법령입력사항 검토
 - 근거 법령 조정: 단위사무와 근거 법령의 정확한 매치상태 점검
 - 법령의 변화사항 점검:
 - 개정된 법령에 따른 단위사무 변경
 - 신설된 법령에 따른 단위사무 추가 발굴
 - 폐지된 법령 관련 단위사무의 삭제
- 단위사무의 명칭 검토
 - 단위사무의 성격이 불분명한 명칭 보완
 - 부적절한 단위사무 명칭 수정 등
 -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은 경우 다수 사무를 하나의 사무로 합침
- ‘현행 사무구분체계’에서 ‘향후 사무구분체계’로 변화되는 과정 점검
 - 처리권자의 구분의 타당성 검토
 - 처리권자와 사무성격의 합치 여부 검토
 - 예: 원처리권자가 시도지사인데 국가사무로 분류한 경우의 수정
- 기관위임사무 목록 재검토
 - 누락된 기관위임사무 추가 발굴
- 법정수임사무 재검토
 - 세부적인 기준 점검 및 보완
 -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재분류
- D/B 성능 제고방안 탐색
 - 단위사무 입력시스템 고도화
 - 법령입력 프로세스 변경 및 DB 정규화
 - 대국민 서비스 준비

4. 연구 방법

- 2010년도 조사내용의 타당성 검토
 - 1단계: 과제를 4개 소과제로 구분
 - ① 법령입력사항 검토 과제
 - ② 단위사무의 명칭 검토 과제
 - ③ 현행 사무유형 검토 과제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사무 검토 과제
 - 2단계: 소과제별 담당인력 배정 및 책임 수정
 - 3단계: 작업 분량 적정 배분
 - 월별 작업 분량 배분 - DB상 입력된 중앙부처 단위로 배분
 - 4단계: 작업진행 상황 점검
 - ① 1주일 단위로 작업한 내용을 소과제별로 취합
 - ② 격주로 연구진 검토회의 - 월 2회 2째, 4째 금요일
- DB유지관리 및 서비스제공방안 모색
 - 1단계: 단위사무 입력시스템 고도화
 - 기존 시스템 오류 수정 및 보완
 - 단위사무 입력시스템 UI 변경
 - 사무작업 이력, 사무작업 통계 등 기능 추가
 - 2단계: 법령 DB 입력 고도화
 - 법령입력 프로세스 변경 및 입력방식 고도화
 - 법령DB 테이블 정규화 및 DB 스키마 변경 등
 - 3단계: 대국민 서비스 준비
 - 각종 검색기능 보완
 - 전반적 디자인 재구성
 - SSL 보안 계층 도입
 - 출력 인터페이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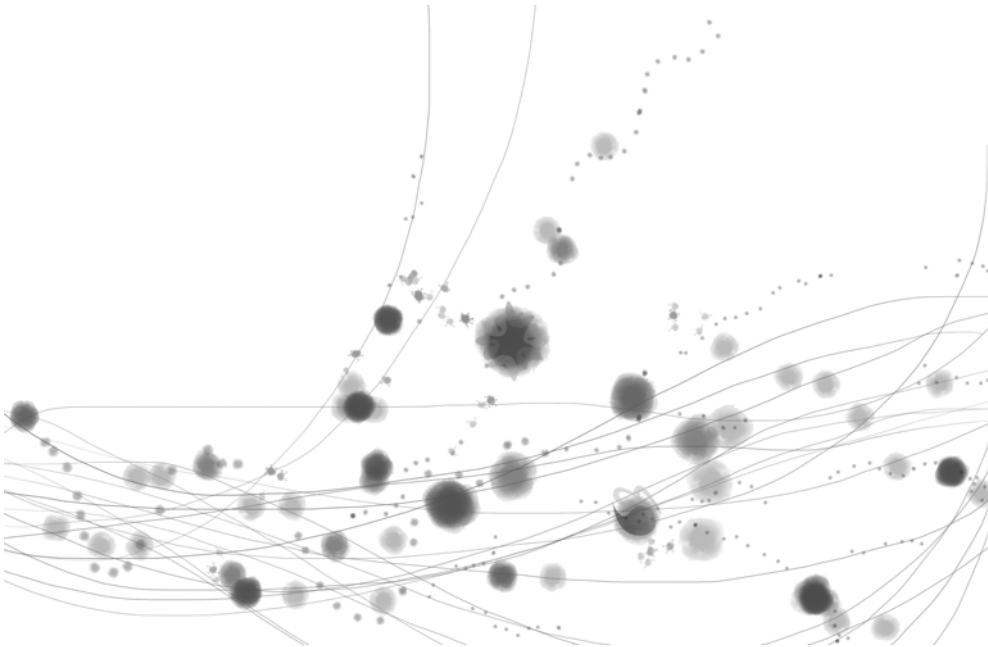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5. 연구 기간

- 과업기간: 2011. 4. 1 - 2011. 12. 31(9개월)

제 2 장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결과

제1절 법령내용
제2절 타당성 검토



제 2 장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결과

제1절 법령내용

- 소관부처, 법률명, 법률조항, 시행령 및 시행규칙명,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됨
- 법령상의 각 조항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을 기재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단위사무명을 추출하는 준거임
- 법령입력 완료 현황

〈표 2-1〉 법령입력 현황

부처 (38개)	2010년 조항수 (A)	2011년 조항수						증감 현황 (B)-(A)
		총계 (B)	개정	신규	삭제	폐지	변동 없음	
계	71866	78149	6605	10661	435	2258	62568	6283
국방부	3405	3726	186	487	6	94	3119	321
국토 해양부	10091	11279	1008	1454	73	139	8871	1188
기획 재정부	3976	4199	661	422	20	142	3153	223
고용 노동부	2689	2713	268	424	35	294	2092	24
농림수산 식품부	4000	4322	443	363	21	0	3536	322
문화체육 관광부	1844	2010	120	234	13	18	1693	166
법무부	10273	11009	338	928	32	134	9769	736
보건 복지부	4173	3808	181	295	20	119	3853	-365
여성 가족부	680	715	1	90	7	47	625	35
외교 통상부	732	862	1	146	1	0	730	130
지식 경제부	4610	5690	655	1158	36	39	3880	1080

부처 (38개)	2010년 조항수 (A)	2011년 조항수						증감 현황 (B)-(A)
		총계 (B)	개정	신규	삭제	폐지	변동 없음	
통일부	278	309	1	32	1	0	276	31
행정 안전부	6018	7976	584	2555	34	165	5235	1958
환경부	2346	2621	111	2229	24	0	2211	275
국가 보훈처	752	753	72	3	2	0	678	1
법제처	72	74	36	2	0	0	36	2
경찰청	981	978	127	35	5	32	817	-3
관세청	43	0	3	0	0	0	40	-43
국세청	50	50	2	0	0	0	48	0
기상청	143	143	0	2	2	0	141	0
농촌 진흥청	70	83	20	13	0	0	50	13
문화재청	245	341	14	112	2	0	229	96
방위 사업청	50	51	4	1	0	0	46	1
병무청	156	156	1	1	1	0	154	0
산림청	708	745	57	53	5	0	646	37
소방 방재청	1222	1265	212	88	29	45	936	43
식품의약 부안전청	33	33	0	0	0	0	33	0
조달청	220	244	0	24	0	0	220	24
중소 기업청	782	791	98	13	10	0	674	9
통계청	185	171	50	21	1	17	117	-14
특허청	1153	1172	77	24	4	0	1072	19
해양 경찰청	252	259	1	8	1	0	250	7
공정거래 위원회	557	662	0	108	3	0	554	105
국민권익 위원회	179	196	1	41	0	0	178	17
금융 위원회	2651	2777	714	246	19	96	1822	126
방송통신 위원회	1106	968	17	101	3	232	854	-138
기타	353	327	60	356	0	289	4	-26

주 1) 2011년 법조항 총계 : 2010년 총계+신규-폐지

주 2) 삭제 : "법령 제 1조 삭제"와 같이 법령조항에는 있지만 삭제된 법률(법령총계에 포함)

주 3) 폐지 : 법령이 폐지(이동)되어 해당 법령이 없는(이동) 경우(법령총계에 포함되지 않음)

주 4)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은 '기타'소속으로 들어감

제2절 타당성 검토

- 기존 연구를 통해 설정된 기준에 맞추어 단위사무를 추출하였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반복적으로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지는 바, 대표적 사례에 대한 전체 회의를 거쳐 예외적 사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시켜 단위사무를 추출하였음. 첫째, 단위사무 명칭과 관련된 문제점, 둘째, 처리권자로 인한 추출의 문제점, 셋째, 사무유형 판단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점
-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단위사무 추출 시 발생한 반복적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그에 타당한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타당성 검토 기준

가. 단위사무명 추출 기준

〈표 2-2〉 단위사무명 추출 기준

구분	내용	설명
1. 단위사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권한과 책임 및 의무가 발생하는 처리권자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최소단위, 즉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업무단위 	
2. 단위사무의 판별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권자의 존재 · 처리권자의 일정한 직접적인 행위가 발생으로 대·내외적 효력 보유 · 수행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최종처리 권자 · 인가, 허가, 특허, 계획수립/결정, 확인, 감사·조사, 연구 등(단, 일상적·부수적인 접수, 작성, 실시 등 제외) · 인력과 재원 투입 필요
3. 단위사무의 판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조에서 1개 단위사무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조의 항·호 그리고 관련 시행령의 조·항·호와의 연계 하에서 판단하되, 기능적으로 동일한 업무라면 1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단 동일 기능의 성격이라도 처리권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하고, 성격적으로 다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2개의 조가 연계성을 갖는 경우(동일 내용의 계획수립, 변경, 고시가 각기 다른 조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처리권자가 동일하다면 통합하여 1개 단위사무로 보아야 하고, 처리권자가 각기 다를 경우 개별 단위사무로 보아야 할 것임 · 1개 조 내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 혹은 단서적 업무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것이 절차적 규정일 경우는 1개의 단위사무로 추출하고, 행위주체가 각기 다를 경우는 별개의 업무로 판단함
3. 단위사무의 판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조 내의 항·호의 위임근거가 다른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 추출 · 공동사무의 형태로 규정된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 내에서 항과 호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가 각기 다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각 조별 항과 호의 수입기관이 다르고 원처리권자와 현처리권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각 조 내에서 처리권자가 2이상일 경우 별개의 단위사무로 판단함

※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단위사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사항은 당 연구원의 강기홍 박사에게 문의 후 결정함

※ 즉시 결정이 가능한 것은 본 조사에서 적용하고, 판별이 불가능하거나 결정이 어려운 것은 연구진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함

나. 단위사무 처리권자 기준

〈표 2-3〉 단위사무 처리권자 기준

구분	내용	예시
원처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되어진 단위사무의 경우, 위임을 한 자가 원처리권자가 되고, 반대로 위임을 받은 자가 현처리권자가 됨 ○ 장관 : 대통령, 정부, 국무총리, 정부위원회 등의 범형식을 포함 ○ 소속기관은 직속기관(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 등)과 사업소 등을 의미함 ○ 산하기관은 공사,공단 등을 의미함 	111. 장관(대통령,총리, 위원장등) 112. 특별지방행정기관 11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114. 특별시장 115. 광역시장 116. 도지사 117. 시장+군수+자치구청장 118. 50만 이상 시장 119. 시장 120. 군수 121. 자치구청장 122. 행정구장/행정시장 123. 읍면동장 124. 국가의 소속기관장 125. 시도의 소속기관장 126. 시군자치구의 소속기관장 127. 국가의 산하기관장 128. 시도의 산하기관장 129. 시군자치구의 산하기관장 130. 기타
현처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에 의하여 일정한 사무를 위임을 받은 자로서, 법규상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경우는 현처리권자인 동시에 원처리권자가 되기도 하지만, 위임사무의 경우 법령상 위임받은 자가 현처리권자가 됨 	211. 특별지방행정기관 21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3. 특별시장 214. 광역시장 215. 도지사 216. 시장+군수+자치구청장 217. 50만 이상 시장 218. 시장 219. 군수 220. 자치구청장 221. 행정구장/행정시장 222. 읍면동장 223. 국가의 소속기관장 224. 시도의 소속기관장 225. 시군자치구의 소속기관장 226. 국가의 산하기관장 227. 시도의 산하기관장 228. 시군자치구의 산하기관장 229. 기타

다. 사무유형 구분 체계 기준

〈표 2-4〉 사무유형 구분 체계 기준(원처리권자 중심)

사무구분	사무유형	사무성격
1. 국가사무	11. 국가사무 111. 국가직접처리사무 112.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 113. 국가⇒ 소속기관 114. 국가⇒ 산하기관 115. 국가⇒ 민간위탁기관	국가사무 국가(특행)사무 국가(소속)사무 국가(산하)사무 국가(위탁)사무
	12. 단체위임사무 121. 국가⇒ 광역자치단체 122. 국가⇒ 기초자치단체 123.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24. 국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위임사무 기초(단체)위임사무 기초(단체)재위임사무 광역/기초(단체)위임사무
	13. 기관위임사무 131. 국가⇒ 광역자치단체장 132. 국가⇒ 기초자치단체장 133. 국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134. 국가⇒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관)위임사무 기초(기관)위임사무 기초(기관)재위임사무 광역/기초(기관)위임사무
	14. (국가-지방) 공동사무 141.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142. 국가+광역자치단체(장) 143. 국가+기초자치단체(장)	(국가광역기초) 공동사무 (국가광역) 공동사무 (국가기초) 공동사무
2. 지방사무	21. 광역자치단체 자치사무 211.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212.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213.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 214.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215.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사무 광역(소속)사무 광역(산하)사무 광역(위탁)사무 광역(위임)사무
	22.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 221.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222. 기초자치단체⇒ 소속기관 223.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224.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225.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사무 기초(소속)사무 기초(산하)사무 기초(위탁)사무 기초(위임)사무
	23. (광역-기초) 공동사무 231.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광역기초) 공동사무

2. 검토결과

가. 현행법상 기능배분의 문제

1) 검토사례 1

- 법령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8조(지도·감독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명할 수 있다.

제119조(보고와 검사)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위의 법률의 경우도 동일 조항 내에 처리권자가 다수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법상 행정책임이 불명확하여 사무유형을 판단하기 힘들

- 검토결과

- 위의 경우 법조항의 내용에 따라 각 각의 처리권자에 따른 사무를 생성하여 공통사무화 함

2) 검토사례 2

- 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법

제17조(시설환경개선준비금)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란·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쟁점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경주사업자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정은 지나친 관여로 판단됨. 이러한 내용의 사무를 국가사무(장관이 처리권자)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문제시 됨

- 검토결과

- 연구자의 판단으로 관련 사무를 하나로 생성하도록 하거나 장관의 사무로 법률상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무의 내용이 장관이 권장할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조항은 국가 사무를 생성하지 않음

3) 검토사례 3

- 법령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쟁점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법규정상으로는 사무를 생성해야 하지만 내용을 살펴 보면 단순영유기능이기 때문에 처리권자가 다르다고 단순히 개별 사무를 생성하는 것은 실제 내용상 맞지 않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연구자의 판단으로 관련 사무를 하나로 생성하도록 하거나 장관의 사무로 법률상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무의 내용이 장관이 권장할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조항은 국가 사무를 생성하지 않음

4) 검토사례 4

○ 법령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및 동 시행령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우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처에서 국가의 사무와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게 인식된 상태에서 법의 내용을 지정하였을 것이라 사료됨. 이와 같은 경우 사무 생성에 있어서도 혼란이 발생함
- 중복된 처리권자의 지정은 행정책임을 불명확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조항들이 다수이며 개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음

○ 검토결과

- 각 처리권자의 개별사무로 생성하되 사무명은 동일하게 하고, 동일 사무명 뒤에 국가, 광역, 기초를 표시하여 동일 사무의 처리권자가 다른 공통사무로 만들도록 함

5) 검토사례 5

- 법령 :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 쟁점사항

- 법률상의 내용으로는 실제 처리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음. 즉 법률상 행정책임이 명확히 되어야 함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규정 사례 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은 국가, 광역, 기초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어 각 각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법 제정·개정 시 법 규정의 편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담당부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광역·기초 간 행정책임이 명확하도록 규정해 줄 것을 각 부처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호한 법 규정은 지방분권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각 처리권자의 개별사무로 생성하되 사무명은 동일하게 하고, 동일 사무명 뒤에 국가, 광역, 기초를 표시하여 동일 사무의 처리권자가 다른 공통사무로 만들도록 함

나. 기존 사무의 단일화 및 사무명 수정

1) 검토사례 1

○ 법령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단체적 계약의 체결 6.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 4호 중 규약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쟁점사항

-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고 기능이 같은 사무지만 2010년 사무 생성 시에는 대상이 되는 조직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각 조직의 사무를 달리 생성함

○ 검토결과

- 이로 인하여 사무수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였으므로 2011년에는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고 기능이 같은 사무의 경우 1조항 당 1개 사무 생성 원칙을 기준으로 사무를 합치도록 함

2) 검토사례 2

○ 법령 :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의 조정을 받아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예의 승진시험의 실시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간부후보생의 선

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당해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 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결원상황 및 승진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쟁점사항

- 동일 조항 내의 사무로 처리권자인 시험실시기관이 같지만 신규채용 시험, 승진시험,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같이 3가지 다른 유형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2010년 사무 생성시에는 시험의 유형이 다른 것을 우선적 기준으로 하여 3개의 사무로 생성하였음

○ 검토결과

- 이로 인하여 사무수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였으므로 2011년에는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고 기능이 같은 사무의 경우 1조항 당 1개 사무 생성 원칙을 기준으로 사무를 합치도록 함. 그러므로 동 법률의 사무도 3가지 다른 유형의 시험을 실시하는 처리권자는 같기 때문에 하나의 사무로 생성함

3) 검토사례 3

○ 법령 : 지식경제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 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맡겨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맡기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 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쟁점사항

-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지만,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지정, 감리원 배치 기준 지정,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등 다수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2010년에는 각 업무 당 단위사무를 개별적으로 생성함

○ 검토결과

- 2011년 사무조사 시에는 이러한 기준을 수정하여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은 경우 비슷한 기능의 사무를 하나로 합치도록 함. 그러므로 위의 법률의 사무도 같은 처리권자의 1개의 단위사무로 발굴하되 사무명을 업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함

4) 검토사례 4

○ 법령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라 한다)에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으나, 단위물류정보망 구축·운영, 단위물류 정보망과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구축대책 수립, 단위물류 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 요청과 같이 다수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

○ 검토결과

- 2010년 사무생성 시에는 업무단위로 사무를 발굴하여 동일 조항에서 다수의 사무가 발굴되었지만 2011년에는 이러한 기준을 조정하여 1조항 내 1개 단위사무의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여 처리권자가 같은 경우 1개의 사무로 생성하도록 함

5) 검토사례 5

○ 법령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해당 법률의 경우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지만 여러 개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 2010년에는 동일 조항이지만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사무로 생성하였음

○ 검토결과

- 2011년에는 이러한 기준을 조정하여 1조항 내 1개 단위사무의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여 처리권자가 같은 경우 1개의 사무로 생성하도록 함

6) 검토사례 6

○ 법령 : 환경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쟁점사항

- 해당 법률의 경우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지만 여러 개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 2010년에는 동일 조항이지만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사무로 생성하였음

- 검토결과
 - 2011년에는 이러한 기준을 조정하여 1조항 내 1개 단위사무의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여 처리권자가 같은 경우 1개의 사무로 생성하도록 함

다. 기타

1) 검토사례 1

- 법령 :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10조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 현재 사무조사 시스템으로는 표현이 불가능
- 사무유형 구분 시 처리권자 중심으로 봐야하는지 기관중심으로 나누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향후 사무조사 시스템 상에는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조사표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무명을 생성한 후 사무명 뒤에 '사무명(민간위탁)' 으로 사무명을 수정하여 단위사무명을 통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표 2-5〉 타당성 검토기준 변화

구분	기준변화
1. 단위사무명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위임, 위탁” 자체는 사무가 아님. 법령이나 시행령 상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무가 어디로 위임, 위탁됐다”는 내용이 나오면 사무로 분류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단위사무가 아님. 다만, 조항 안에 구체적인 사무내용이 언급되면 사무로 처리. 애매한 경우, 누락되는 것 보다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판단이 애매한 경우, 담당 연구자의 재량에 맡김 - 국가, 광역, 기초로 분류하되 뒤에 괄호 안에 소속/산하기관 포함을 명시하도록 함. 예) 사무명(국가: 소속/산하기관 포함)/사무명(광역: 소속/산하기관 포함)/사무명(기초: 소속/산하기관 포함)
2. 단위사무의 처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조 1개 단위사무 추출원칙이나, 위임·위탁 사무는 각 호별로 위임·위탁근거가 다르므로, 별개의 단위사무로 추출 -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은 경우 기존의 업무중심으로 생성된 다수의 사무를 통합하여 1개의 사무로 생성하고 사무명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수정 - 최종 처리권자에 따라 동일사무라 할지라도 개별 단위사무로 분류해야 함. 예) 연안관리법 제2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단위사무명이 동일하여 같은 사무 대상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안에 사무 대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표시함 예)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국가: 국가관리항)/연안정비사업의 시행(광역: 지방관리항)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기초: 연안항) -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없으면 분리하여 2개의 단위사무(‘승인’과 ‘시행’)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승인’만 1개의 단위사무로 함 - 금융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여기에 부속된 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봐서 사무 만들지 않음. 금융위원회의 분과 소위원회 구성은 단위사무로 만들 - 국공립학교장의 처리권자 표시. 초중등 교육법의 모든 업무는 교육감,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관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 고등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로 표시 - 민간으로 위임, 위탁이 되었다고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단위사무로 발굴하지 않도록 함
3. 사무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또는 공단은 공무원 단체는 아니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무유형을 국가>민간위탁기관 사무가 아닌 국가>산하기관 사무로 판단 - 공동사무인 경우 책임성 소지 불분명,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책임소재를 정하도록 할 것 예) 별표에 금액별로 처리권자를 나눠 놓으면 개별사무가 되지만 그러한 언급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공동사무임. 공동사무인 것은 향후 어느 한쪽으로 이양시키도록 함
3. 사무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사무 발굴시에는 “공동사무”는 국가 혹은 광역, 광역 혹은 기초가 함께 수행하는 사무로 1개의 단위사무로 처리해 왔고 “공통사무”는 동일한 성격의 사무지만 국가, 광역, 기초 모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3개의 단위사무로 처리. 법 조문상 원처리권자가 “○○장관과 시도지사는” 과 같이 접속사 “... 과 ...” 로 표현

	<p>되는 경우, 공동사무로 처리함. “... 또는 ...”로 표현되면 공통 사무로 처리함. 그러나 2011년부터는 공동사무를 최소화하고 이를 공통사무화 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 ‘시도지사 → 민간위탁’으로 표시하고, 단위사무명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실시[국가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탁]’으로 표시 -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 현재 사무조사 시스템으로는 표현이 불가능. 그러므로 사무명을 생성한 후 사무명 뒤에 ‘사무명(민간위탁)’으로 수정하여 단위사무명을 통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사무명이 동일한 사무라 할지라도 최종처리권자가 다른 경우 개별사무로 분류해야 함. 000사무(국가), 000사무(광역), 000사무(기초) - 법령상 표현 기준: 국가와 광역-공동사무, 국가 또는 광역-개별사무. 사무의 성격이 같고,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사무의 성격은 같지만, 영역이 다른 경우: 개별사무, 공동사무(보안사무, 직무교육, 공무원복지사무 등: 각 기관별 개별 사무)로 구분하고 기존의 ‘공동사무’는 사무유형에서 제외하도록 함. 구분이 애매한 경우: 향후 연구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사무로 합치는 것보다는 개별사무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함 예)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분양을 허가한다’: 건축물분양허가(국가)/건축물분양허가(광역)/건축물분양허가(기초) - 특별지방행정기관: 전국에 걸쳐서 일정한 관할구역 존재. 전국을 일정한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행정업무 수행. 예)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소속기관: 특정지역에 하나 혹은 소수가 설치됨(불규칙적으로). 일정한 관할 구역이 없음.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소록도병원 등 - 처리권자를 50만이상 대도시시장으로 표시, 광역 직접처리 사무로 표시. 2개로 나누되, 광역, 광역(50만이상)으로 나눔. 포괄적으로 보면 광역사무 - 공동사무가 아닌 공통사무로 처리하여 국가, 광역, 기초 개별사무로 나눠 작업. 중복이 되더라도 일단은 개별사무 만들. 법의 명칭이 추상적, 선언적인 것은 사무만 들지 않음. 이후 분권위원회에서 확정, 피드백 필요
--	--

3. 타당성 검토 완료현황

〈표 2-6〉 타당성 검토 완료현황

구분	총계	국가사무				지방사무			
		소계	국가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총계	42,947	29,675	28,644	1,031	0	13,272	7,013	6,259	0
	100	69.1	66.7	2.4	0.0	30.9	16.3	14.6	0
고용 노동부	1,167	1,020	1,008	12	0	147	76	71	0
	100	87.4	86.4	1.0	0.0	12.6	6.5	6.1	0.0
국토 해양부	6,144	3,517	3,239	278	0	2,627	1,461	1,166	0
	100	57.2	52.7	4.5	0.0	42.8	23.8	19.0	0.0
농림수산 식품부	3,067	1,849	1,751	98	0	1,217	540	677	0
	100	60.3	57.1	3.2	0.0	39.7	17.6	22.1	0.0
문화 재청	221	129	124	5	0	92	46	46	0
	100	58.4	56.1	2.3	0	41.6	20.8	20.8	0
산림청	874	558	511	47	0	316	174	142	0
	100	63	58.5	5.4	0	36.2	19.9	16.3	0
조달청	189	141	141	0	0	48	24	24	0
	100	74.6	74.6	0	0	25.4	12.7	12.7	0
관세청	4	4	4	0	0	0	0	0	0
	100	100	100	0	0	0	0	0	0
법제처	52	50	50	0	0	2	1	1	0
	100	96.2	96.2	0	0	3.9	1.9	1.9	0
기상청	50	50	50	0	0	0	0	0	0
	100	100	100	0	0	0	0	0	0
교육과학 기술부	2,454	1,604	1,548	56	0	850	646	204	0
	100	65.4	63.1	2.3	0.0	34.6	26.3	8.3	0
문화체육 관광부	1,206	731	726	5	0	475	263	212	0
	100	60.6	60.2	0.4	0.0	39.4	21.8	17.6	0
방위 사업청	5	5	5	0	0	0	0	0	0
	100	100	100	0	0	0	0	0	0
중소 기업청	588	390	383	7	0	198	112	86	0
	100	66.3	65.1	1.2	0	33.7	19.1	14.6	0
통일부	164	149	148	1	0	15	7	8	0
	100	90.8	90.2	0.6	0	9.2	4.3	4.9	0
특허청	422	416	412	4	0	6	3	3	0
	100	98.6	97.6	1	0	1.4	0.7	0.7	0

구분	총계	국가사무				지방사무			
		소계	국가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통계청	181	118	114	4	0	63	37	26	0
	100	65.2	63	2.2	0	34.8	20.4	14.4	0
행정 안전부	4,561	2,060	2,027	33	0	2,500	1,221	1,279	0
	100	45.2	44.4	0.7	0.0	54.8	26.8	28.0	0
기타	160	133	133	0	0	27	14	13	0
	100	83.1	83.1	0	0	16.9	8.8	8.1	0
국방부	1.42	1.379	1.379	0	0	41	19	22	0
	100	97.1	97.1	0	0	2.9	1.3	1.6	0
법무부	4,814	4,632	4,607	25	0	182	75	107	0
	100	96.2	95.7	0.5	0	3.8	1.6	2.2	0
기획재정부	1,935	758	1,690	93	0	151	77	74	0
	100	92.2	87.3	4.8	0.0	7.8	4.0	3.8	0
경찰청	462	437	437	0	0	25	14	11	0
	100	94.6	94.6	0	0	5.4	3	2.4	0
외교 통상부	324	324	324	0	0	0	0	0	0
	100	100	100	0	0	0	0	0	0
농촌 진흥청	71	57	57	0	0	14	7	7	0
	100	80.3	80.3	0	0	19.7	9.9	9.9	0
해양 경찰청	143	97	97	0	0	46	15	31	0
	100	67.8	67.8	0	0	32.2	10.5	21.6	0
소방 방재청	1,097	516	507	9	0	581	401	180	0
	100	47	46.2	0.8	0	53	36.6	16.4	0
보건 복지부	2,949	1,625	1,537	88	0	1,324	568	756	0
	100	55.1	52.1	3.0	0.0	44.9	19.3	25.6	0
여성 가족부	625	290	272	18	0	335	150	185	0
	100	46.4	43.5	2.9	0	53.6	24	29.6	0
지식 경제부	2,694	2,073	2,015	58	0	621	308	313	0
	100	76.9	74.8	2.2	0.0	23.1	11.4	11.6	0
국가 보훈처	527	435	435	0	0	92	46	46	0
	100	82.5	82.5	0	0	17.5	8.7	8.7	0
병무청	131	116	116	0	0	15	8	7	0
	100	88.5	88.5	0	0	11.5	6.1	5.3	0
환경부	2,412	1,338	1,156	182	0	1,074	567	507	0
	100	55.5	47.9	7.6	0	44.5	23.5	21	0
위원회	1,837	1,649	1,641	8	0	188	133	55	0
	100	89.8	89.3	0.4	0	10.2	7.2	3	0

제 3 장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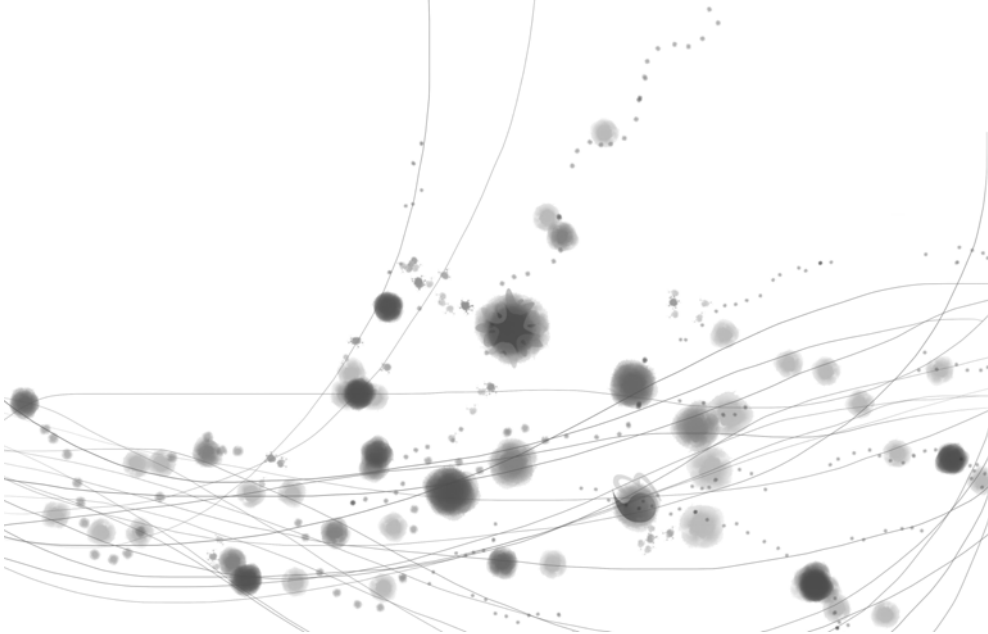
제1절 단위사무 실태파악의 구조

제2절 사무배분의 기준

제3절 관장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제4절 사무의 성격별 배분실태

제5절 기존조사와의 비교분석(2010년과의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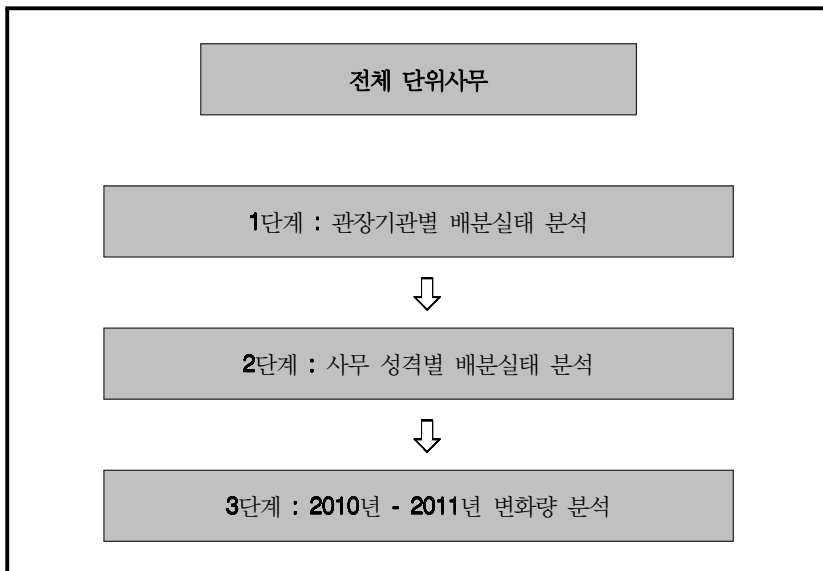
제 3 장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제1절 단위사무 실태파악의 구조

-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는 다음과 같은 접근구조에 입각하고 있음
 - 국가 전체법령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도출된 단위사무를 3단계의 순차적 과정에 따라 배분실태를 파악
 - 1단계에서는 관장 기관을 기준으로 국가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및 지방사무별 배분실태를 분석
 - 2단계에서는 사무성격을 기준으로 내용, 목적, 형태 및 분야별 배분실태를 분석
 - 3단계에서는 2010년과 2011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변화량을 도출

[그림 3-1] 단위사무 실태파악 구조



제2절 사무배분의 기준

○ 현행사무구분체계에 의한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3-1〉 사무배분 기준

국가사무	국가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국가>소속/산하기관사무
		국가>민간기관위탁사무
	위임사무	국가>광역자치단체사무
		국가>기초자치단체사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사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사무
	공동사무	국가 + 광역자치단체사무
		국가 + 기초자치단체사무
국가 + 광역자치단체사무 + 기초자치단체사무		
지방사무	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직접처리사무
		광역>소속/산하기관사무
		광역>민간위탁기관사무
		광역>기초자치단체사무
	기초사무	기초자치단체직접처리사무
		기초>소속/산하기관사무
		기초>민간위탁사무
		기초>광역자치단체사무
	공동사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사무

제3절 관장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1. 국가기관별 사무 배분실태

○ 부처별 사무배분 실태 종합

〈표 3-2〉 부처별 사무배분 실태 종합

구분	총계	국가사무				지방사무			
		소계	국가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총계	42,947	29,675	28,644	1,031	0	13,272	7,013	6,259	0
	100	69.1	66.7	2.4	0.0	30.9	16.3	14.6	0
고용 노동부	1,167	1,020	1,008	12	0	147	76	71	0
	100	87.4	86.4	1.0	0.0	12.6	6.5	6.1	0.0
국토 해양부	6,144	3,517	3,239	278	0	2,627	1,461	1,166	0
	100	57.2	52.7	4.5	0.0	42.8	23.8	19.0	0.0
농림수산 식품부	3,067	1,849	1,751	98	0	1,217	540	677	0
	100	60.3	57.1	3.2	0.0	39.7	17.6	22.1	0.0
문화 재청	221	129	124	5	0	92	46	46	0
	100	58.4	56.1	2.3	0	41.6	20.8	20.8	0
산림청	874	558	511	47	0	316	174	142	0
	100	63	58.5	5.4	0	36.2	19.9	16.3	0
조달청	189	141	141	0	0	48	24	24	0
	100	74.6	74.6	0	0	25.4	12.7	12.7	0
관세청	4	4	4	0	0	0	0	0	0
	100	100	100	0	0	0	0	0	0
법제처	52	50	50	0	0	2	1	1	0
	100	96.2	96.2	0	0	3.9	1.9	1.9	0
기상청	50	50	50	0	0	0	0	0	0
	100	100	100	0	0	0	0	0	0
교육과학 기술부	2,454	1,604	1,548	56	0	850	646	204	0
	100	65.4	63.1	2.3	0.0	34.6	26.3	8.3	0
문화체육 관광부	1,206	731	726	5	0	475	263	212	0
	100	60.6	60.2	0.4	0.0	39.4	21.8	17.6	0
방위 사업청	5	5	5	0	0	0	0	0	0
	100	100	100	0	0	0	0	0	0
중소 기업청	588	390	383	7	0	198	112	86	0
	100	66.3	65.1	1.2	0	33.7	19.1	14.6	0
통일부	164	149	148	1	0	15	7	8	0
	100	90.8	90.2	0.6	0	9.2	4.3	4.9	0
특허청	422	416	412	4	0	6	3	3	0
	100	98.6	97.6	1	0	1.4	0.7	0.7	0

구분	총계	국가사무				지방사무			
		소계	국가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통계청	181	118	114	4	0	63	37	26	0
	100	65.2	63	2.2	0	34.8	20.4	14.4	0
행정 안전부	4,561	2,060	2,027	33	0	2,500	1,221	1,279	0
	100	45.2	44.4	0.7	0.0	54.8	26.8	28.0	0
기타	160	133	133	0	0	27	14	13	0
	100	83.1	83.1	0	0	16.9	8.8	8.1	0
국방부	1.42	1.379	1.379	0	0	41	19	22	0
	100	97.1	97.1	0	0	2.9	1.3	1.6	0
법무부	4,814	4,632	4,607	25	0	182	75	107	0
	100	96.2	95.7	0.5	0	3.8	1.6	2.2	0
기획 재정부	1,935	758	1,690	93	0	151	77	74	0
	100	92.2	87.3	4.8	0.0	7.8	4.0	3.8	0
경찰청	462	437	437	0	0	25	14	11	0
	100	94.6	94.6	0	0	5.4	3	2.4	0
외교 통상부	324	324	324	0	0	0	0	0	0
	100	100	100	0	0	0	0	0	0
농촌 진흥청	71	57	57	0	0	14	7	7	0
	100	80.3	80.3	0	0	19.7	9.9	9.9	0
해양 경찰청	143	97	97	0	0	46	15	31	0
	100	67.8	67.8	0	0	32.2	10.5	21.6	0
소방 방재청	1,097	516	507	9	0	581	401	180	0
	100	47	46.2	0.8	0	53	36.6	16.4	0
보건 복지부	2,949	1,625	1,537	88	0	1,324	568	756	0
	100	55.1	52.1	3.0	0.0	44.9	19.3	25.6	0
여성 가족부	625	290	272	18	0	335	150	185	0
	100	46.4	43.5	2.9	0	53.6	24	29.6	0
지식 경제부	2,694	2,073	2,015	58	0	621	308	313	0
	100	76.9	74.8	2.2	0.0	23.1	11.4	11.6	0
국가 보훈처	527	435	435	0	0	92	46	46	0
	100	82.5	82.5	0	0	17.5	8.7	8.7	0
병무청	131	116	116	0	0	15	8	7	0
	100	88.5	88.5	0	0	11.5	6.1	5.3	0
환경부	2,412	1,338	1,156	182	0	1,074	567	507	0
	100	55.5	47.9	7.6	0	44.5	23.5	21	0
위원회	1,837	1,649	1,641	8	0	188	133	55	0
	100	89.8	89.3	0.4	0	10.2	7.2	3	0

※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외(해당 단위사무 '0'건)

※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소 법령은 '기타'에 포함되어 사무생성 됨

※ 위 분류는 원칙리권자 기준임

※ 국가수행사무

- 국가직접처리사무 + (국가 → 특별행정기관) + (국가 → 소속기관) + (국가 → 산하기관) + (국가 → 민간위탁기관)

- ※ 국가사무 중 위임사무
 - 원처리권자인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 국가사무 중 공동사무
 -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 (국가+광역자치단체(장)) + (국가+기초자치단체(장))
- ※ 광역사무
 - 광역자치사무 + 원처리권자인 광역이 기초에 위임한 사무
 - 광역자치단체직접처리사무 + (광역자치단체 → 소속기관) + (광역자치단체 → 산하기관) + (광역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 기초사무
 - 기초자치사무 + 원처리권자인 기초가 광역에 환원한 사무
 - 기초자치단체직접처리사무 + (기초자치단체 → 소속기관) + (기초자치단체 → 산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민간위탁기관) +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 ※ 지방사무 중 공동사무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고용노동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87.4%이고, 지방사무는 12.6%임
-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57.2%이고, 지방사무는 42.8%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60.3%이고, 지방사무는 39.7%임
- 문화재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58.4%이고, 지방사무는 41.6%임
- 산림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63.0%이고, 지방사무는 36.2%임
- 조달청의 경우 국가사무는 74.6%이고, 지방사무는 25.4%임
- 관세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100%임
- 법제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96.2%이고, 지방사무가 3.9%임
- 기상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100%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65.4%이고, 지방사무가 34.6%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60.6%이고, 지방사무가 39.4%임
-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100%임
- 중소기업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66.3%이고, 지방사무가 33.7%임
- 통일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90.8%이고, 지방사무가 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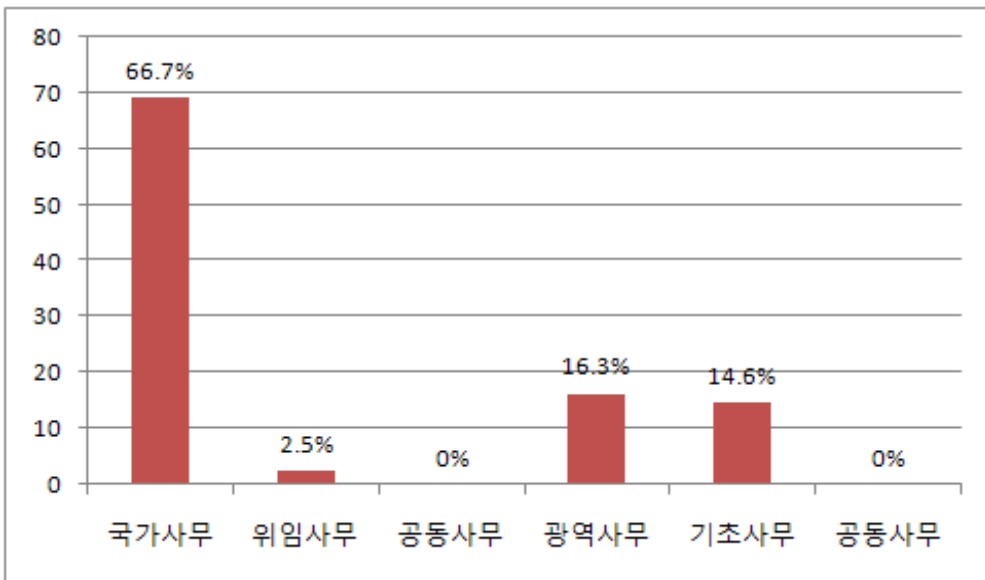
- 특허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98.6%이고, 지방사무가 1.4%임
- 통계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65.2%이고, 지방사무가 34.8%임
-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45.2%이고, 지방사무가 54.8%임
- 기타의 경우 국가사무가 83.1%이고, 지방사무가 16.9%임
- 국방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97.1%이고, 지방사무가 2.9%임
- 법무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96.2%이고, 지방사무가 3.8%임
-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92.2%이고, 지방사무가 7.8%임
- 경찰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94.6%이고, 지방사무가 5.4%임
- 외교통상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100%임
- 농촌진흥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80.3%이고, 지방사무가 19.7%임
- 해양경찰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67.8%이고, 지방사무가 32.2%임
- 소방방재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47.0%이고, 지방사무가 53.0%임
-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55.1%이고, 지방사무가 44.9%임
- 여성가족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46.4%이고, 지방사무가 53.6%임
- 지식경제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76.9%이고, 지방사무가 23.1%임
- 국가보훈처의 경우 국가사무가 82.5%이고, 지방사무가 17.5%임
- 병무청의 경우 국가사무가 88.5%이고, 지방사무가 11.5%임
- 환경부의 경우 국가사무가 55.5%이고, 지방사무가 44.5%임
- 위원회의 경우 국가사무가 89.8%이고, 지방사무가 10.2%임

○ 부처별 사무배분 특징

-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여성가족부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이 지방사무로 지방사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로 나타났다으며 관세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외교통상부는 지방사무의 비중이 0%로 조사결과 지방사무의 비중이 가장 낮은 부처로 나타남
- 이 밖에도 국가사무가 전체의 90% 이상으로 나타난 부처는 통일부, 특허청, 국방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경찰청임

-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은 관세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외교통상부의 경우 사무의 세부유형이 국가직접처리사무로 나타남
- 국가사무의 경우 위임사무와 공동사무의 비중은 모두 합쳐 4%를 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국가직접처리사무임
- 지방사무의 경우 2%의 차이로 광역자치단체사무가 기초자치단체사무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3-2] 2011 사무조사 전체 배분 실태



2.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실태

가.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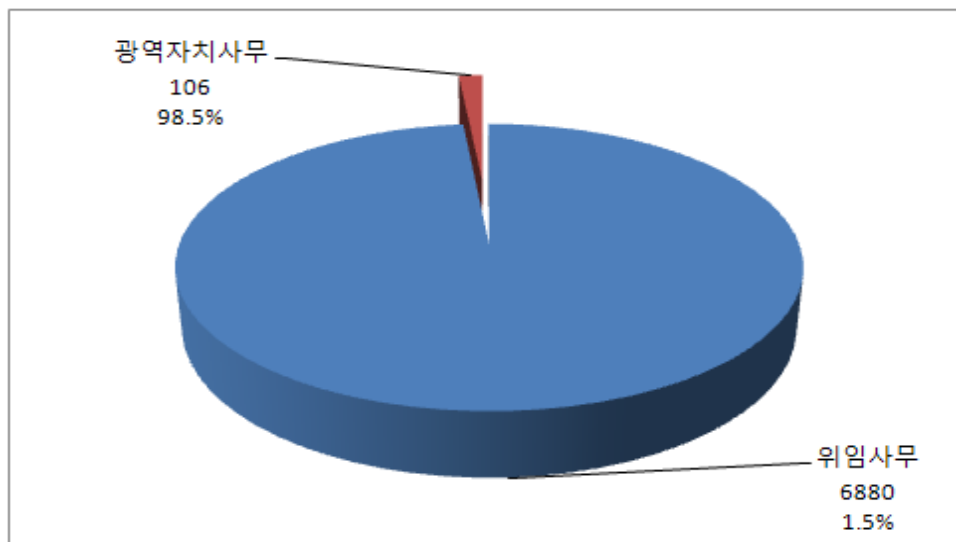
〈표 3-3〉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구 분	광역사무					총계
	광역자치				광역 → 기초	
	직접처리	소속기관/ 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사무수 (건)	6,638	226	43	6,907	106	7,013
비율(%)	94.7	3.2	0.6	98.5	1.5	100

※ 원처리권자 기준임

-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단위사무는 총 7,013개임
 - 광역자치사무가 6,907개, 위임사무가 106개임. 광역자치사무 중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 사무가 전체 광역사무의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는 1.5%로 낮게 나타났음
-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특징
- 자치사무의 비중이 98.5%로 가장 크고, 자치사무에서는 직접처리사무가 9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무유형으로 나타나 현행법상 광역사무의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처리하는 사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자치제의 기본 이념에 따라 향후에는 광역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사무유형을 변화시키도록 현행법의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그림 3-3] 광역사무 배분 현황



나.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표 3-4〉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구 분	기초사무					총계
	기초자치				기초 → 광역	
	직접처리	소속기관/ 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사무수 (건)	6,188	44	25	6,257	2	6,259
비율(%)	98.9	0.7	0.4	99.96	0.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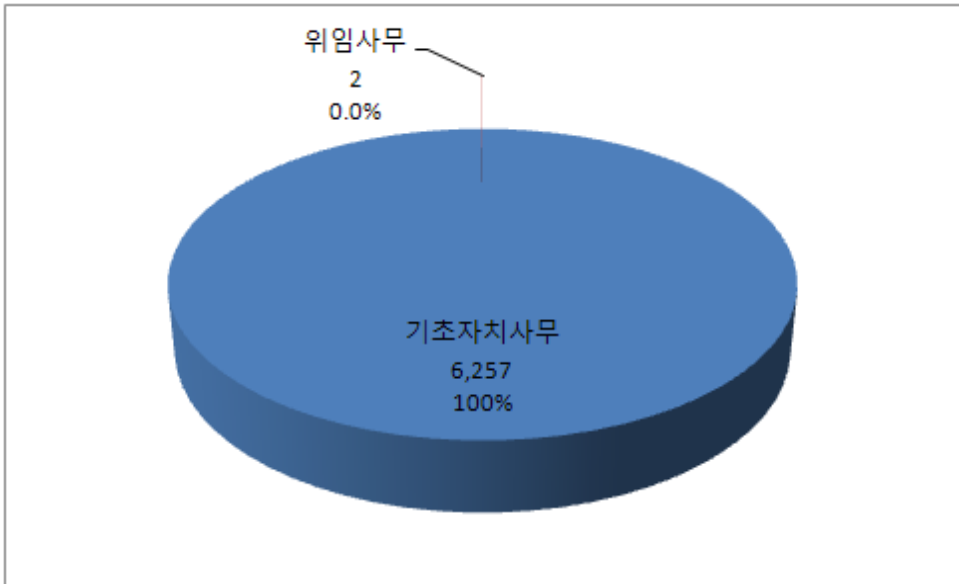
※ 원처리권자 기준임

-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단위사무는 6,259개임
- 기초자치사무가 6,257개, 위임사무가 2개임
- 기초자치사무 중 기초자치단체가 직접처리하는 사무의 비중이 전체 기초사무 중 98.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특징

- 자치사무의 비중이 전체의 99.9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사무에서 는 직접처리 사무가 9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나 현행법상 기초자치 사무 중 광역사무로 재위임 된 사무가 2개로 향후 법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재위임 사무는 광역자치사무로 수정할 있도록 해야할 것임

[그림 3-4] 기초사무 배분 현황



다. 광역-기초 공동

○ 광역-기초 공동사무 배분 실태

〈표 3-5〉 광역-기초 공동사무 배분 실태

구 분	공동사무
	광역+기초
사무수(건)	0
비율(%)	100

※ 원처리권자 기준임

- 광역-기초 공동사무는 0개임
- 2010년 사무조사 시 광역-기초의 공동사무는 7건이었음. 그러나 2011년 사무조사에서는 향후 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공동사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사무의 성격으로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처리권자에 따라 개별사무를 생성하여 공통 사무화하거나 처리권자의 한쪽으로 사무유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광역-기초의 공동사무가 0건이 되었음

3. 국가 및 지방사무 배분 종합

○ 현행 사무배분 실태

〈표 3-6〉 현행 사무배분 실태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 계
	국가수행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직접 처리	특행 기관	소속/ 산하	민간 위탁								
사무 수(건)	20,789	2,528	4,888	439	1,031	0	29,675	7,013	6,259	0	13,272	42,947
비율 (%)	48.4	5.9	11.4	1.0	2.4	0.0	69.1	16.3	14.6	0.0	30.9	100.0

※ 원처리권자 기준임

- 2011년 사무배분에서 총 단위사무 수는 42,947개임
 - 국가사무는 29,675개로 69.1%이고, 지방사무는 13,272개로 30.9%임
 - 국가사무 가운데 직접 처리사무는 20,78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처리 사무는 2,528개, 소속/산하기관 처리사무는 4,888개, 민간위탁사무는 439개임
 - 지방사무 가운데 광역사무는 7,013개, 기초사무는 6,259개임

- 사무배분의 특징
 - 지방사무 보다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음. 국가사무 중에서는 직접처리 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지방사무에서는 광역사무의 비중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현행법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분류이므로 향후 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처리권자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와 같이 처리권자가 여럿으로 나타나 사무의 구분에 있어서 혼란

- 이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는 지방사무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로도 사무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되었음
- 그러므로 향후에는 사무의 성격에 따른 처리권자가 법률상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법의 수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제4절 사무의 성격별 배분실태

1.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 사무의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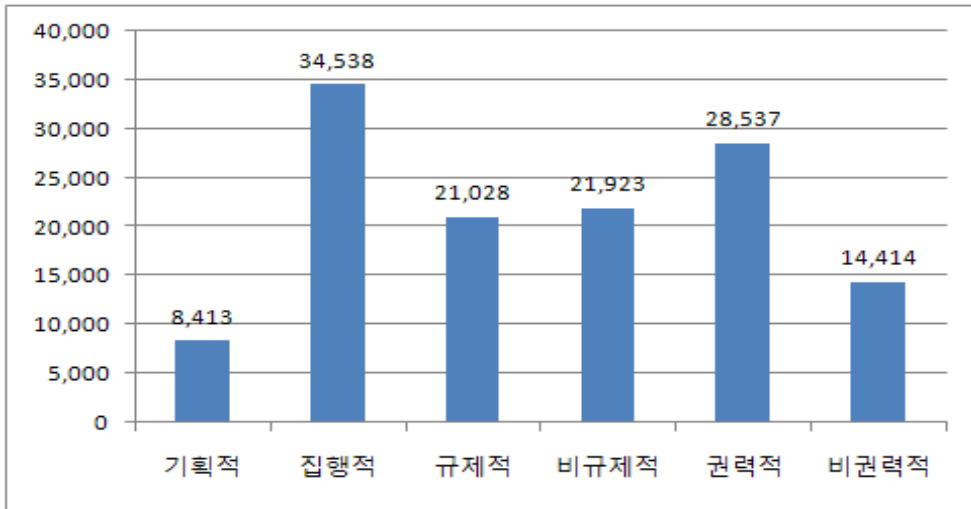
〈표 3-7〉 사무의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구 분	사무의 내용		사무의 목적		사무의 형태	
	기획적 사무	집행적 사무	규제적 사무	비규제적 사무	권력적 사무	비권력적 사무
사무수(건)	8,413	34,538	21,028	21,923	28,537	14,414
비율(%)	19.6	80.4	49.0	51.0	66.4	33.6

※ “사무의 형태”는 복수응답임

- 내용별 분류에서 기획적 사무가 8,413건으로 19.6%, 집행적 사무가 34,538건으로 80.4%를 차지함. 집행적 사무의 비율이 높음
- 목적별 분류에서 규제적 사무가 21,028건으로 49.0%, 비규제적 사무가 21,923건으로 51.0%를 차지함. 비규제적 사무의 비율이 높음
- 형태별 분류에서 권력적 사무는 28,537건으로 66.4%, 비권력적 사무는 14,414건으로 33.6%를 차지함. 권력적 사무의 비율이 높음

[그림 3-5] 사무의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실태



○ 내용/목적/형태별 배분의 특징

- 집행적, 비규제적, 권력적 사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규제적 사무의 비중이 규제적 사무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집행적 사무에 비하여 기획적 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과 비권력적 사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행정사무의 기능이 단순히 집행을 위한 권력적 사무가 아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권력적이고 기획적인 사무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분야별 배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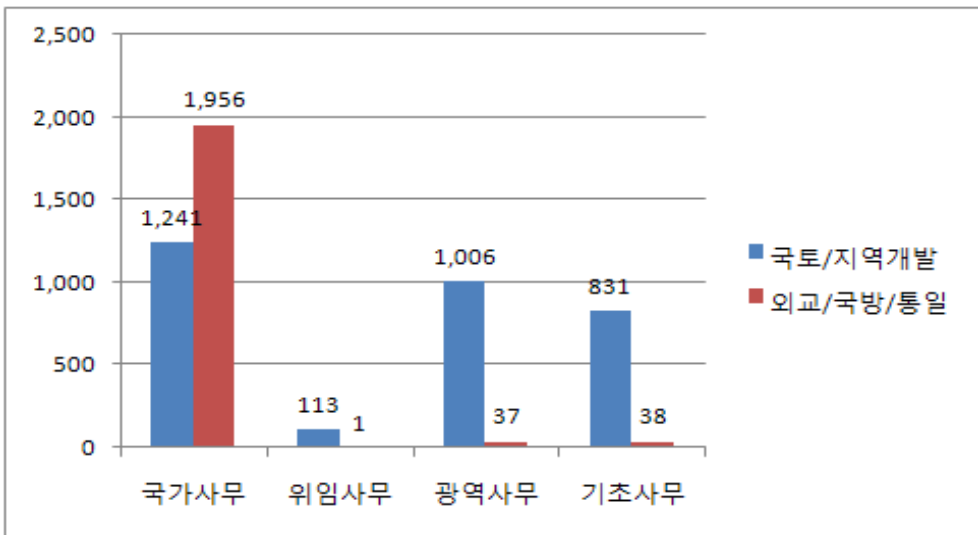
○ 사무의 분야별 배분실태

<표 3-8> 사무의 분야별 배분실태

구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합계
	국가 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일반공공 행정	4,653	101	0	4,754	1,253	1,205	0	2,458	7,212
	64.5	1.4	0.0	65.9	17.4	16.7	0.0	34.1	100.0
공공질서/ 안전	4,948	25	0	4,973	71	109	0	180	5,154
	96.0	0.5	0.0	96.5	1.4	2.1	0.0	3.5	1.0
교육	569	39	0	608	478	103	0	581	1,189
	47.9	3.3	0.0	51.1	40.2	8.7	0.0	48.9	100.0
문화/관광 /체육	709	21	0	730	224	212	0	436	1,166
	60.8	1.8	0.0	62.6	19.2	18.2	0.0	37.4	100.0
환경보호	1,887	225	0	2,112	826	784	0	1,610	3,722
	50.7	6.0	0.0	56.7	22.2	21.1	0.0	43.3	100.0
사회복지	2,150	65	0	2,215	548	647	0	1,195	3,410
	63.0	1.9	0.0	65.0	16.1	19.0	0.0	35.0	100.0
보건	1,113	45	0	1,158	326	385	0	711	1,869
	59.6	2.4	0.0	62.0	17.4	20.6	0.0	38.0	100.0
농업/ 해양수산	2,365	164	0	2,529	714	824	0	1,538	4,067
	58.2	4.0	0.0	62.2	17.6	20.3	0.0	37.8	100.0
산업/ 중소기업	2,404	53	0	2,457	324	317	0	641	3,098
	77.6	1.7	0.0	79.3	10.5	10.2	0.0	20.7	100.0
수송/ 교통	1,737	122	0	1,859	406	343	0	749	2,608
	66.6	4.7	0.0	71.3	15.6	13.2	0.0	28.7	100.0
국토/ 지역개발	1,241	113	0	1,354	1,006	831	0	1,837	3,191
	38.9	3.5	0.0	42.4	31.5	26.0	0.0	57.6	100.0
과학 기술	746	3	0	749	82	56	0	138	887
	84.1	0.3	0.0	84.4	9.2	6.3	0.0	15.6	100.0
외교/국방 /통일	1,956	1	0	1,957	37	38	0	75	2,032
	96.3	0.0	0.0	96.3	1.8	1.9	0.0	3.7	100.0
기타	550	607	0	1,157	287	227	0	514	1,671
	32.9	36.3	0.0	69.2	17.2	13.6	0.0	30.8	100.0

-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국가사무는 65.9%, 지방사무는 34.1%임
- 공공질서/안전분야의 국가사무는 96.5%, 지방사무는 3.51%임
- 교육분야의 국가사무는 51.1%, 지방사무는 48.9%임
-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국가사무는 62.6%, 지방사무는 37.4%임
- 환경보호분야의 국가사무는 56.7%, 지방사무는 43.3%임
- 사회복지분야의 국가사무는 65.0%, 지방사무는 35.0%임
- 보건분야의 국가사무는 62.0%, 지방사무는 38.0%임
- 농업/해양수산분야의 국가사무는 62.2%, 지방사무는 37.8%임
- 산업/중소기업분야의 국가사무는 79.3%, 지방사무는 20.74%임
- 수송/교통분야의 국가사무는 71.3%, 지방사무는 28.7%임
- 국토/지역개발분야의 국가사무는 42.4%, 지방사무는 57.6%임
-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사무는 84.4%, 지방사무는 15.6%임
- 외교/국방/통일분야의 국가사무는 95.3%, 지방사무는 4.7%임
- 기타분야의 국가사무는 69.2%, 지방사무는 30.8%임

[그림 3-6] 사무의 분야별 배분실태



○ 분야별 배분의 특징

- 국가사무의 비중은 공공질서/안전, 과학기술, 외교/국방/통일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지방사무의 비중은 교육, 환경보호,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환경보호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농업/해양수산분야와 같이 사무의 실제적 집행에 있어서 지방사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야 하는 분야에서 국가사무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현행법상 사무성격에 따른 처리권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거나 지방사무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로 규정된 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됨
- 또한 현재 사무조사의 기준상으로 사무의 분야는 해당 소관부처에 따른다는 것에 근거하여 실제 사무의 성격과 달리 분류된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향후 사무조사 기준의 설정시 사무의 분야별 배분기준 또한 사무의 실제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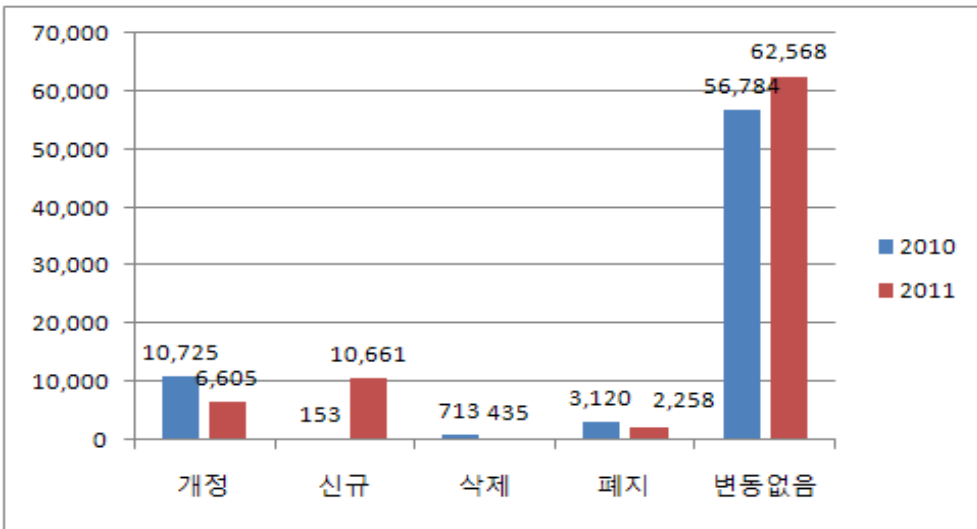
제5절 기존조사와의 비교분석(2010년과의 비교 분석)

1. 조사대상 법령 변동 현황

〈표 3-9〉 조사대상 법령 변동 현황

구분	법령 변동 내용(조항수)						증감 현황
	총계	개정	신규	삭제	폐지	변동 없음	
2010	71,866	10,725	153	713	3,120	56,784	757
2011	78,149	6,605	10,661	435	2,258	62,568	6,283
전년도 대비 증감	6,283	-4,120	10,508	-278	-862	5,784	5,562

[그림 3-7] 법령 변동 현황



○ 증감요인 분석

- 기본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법적 기본 규율에 대한 수요 증가
- 2010년 신규 법조항은 153개였으나 2011년 신규 법조항은 10,508로 약 9배 가량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신규사무의 수가 크게 증가함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가. 2010년 대비 2011년 사무배분 실태

〈표 3-10〉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사무배분 실태 비교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 계	
	국가수행사무				위임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직접 처리	특행 기관	소속/ 산하	민간 위탁									
2010	사무 수 (건)	20,489	2,481	4,881	515	1,098	29	29,493	7,381	6,541	7	13,929	43,422
	비율 (%)	47.2	5.7	11.2	1.2	2.5	0.1	67.9	17.0	15.1	0.0	32.1	100.0
2011	사무 수 (건)	20,789	2,528	4,888	439	1,031	0	29,675	7,013	6,259	0	13,272	42,947
	비율 (%)	48.4	5.9	11.4	1.0	2.4	0	69.1	16.3	14.6	0	30.9	100.0

※ 원처리권자 기준임

○ 2010년도

- 전체 사무 43,422개 가운데 국가사무가 29,493개로 67.9%이고, 지방사무가 13,929개로 32.1%임

○ 2011년도

- 전체 사무 42,947개 가운데 국가사무가 29,675개로 69.1%이고, 지방사무가 13,272개로 30.9%임
- 2010년 대비 2011년 조사결과에서 전체 사무량은 2010년 43,422개에서 2011년 42,947개로 475개가 감소되었음

나. 2010년 대비 2011년 사무의 증감요인 분석

1) 전체 사무수의 감소요인

○ 단위사무의 통합

-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고 기능이 같은 사무지만 2010년 사무 생성 시에는 대상이 되는 조직이 다르다거나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무로 생성하였음
- 이로 인하여 사무수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였으므로 2011년에는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고 기능이 같은 사무의 경우 1조항 당 1개 사무 생성 원칙을 기준으로 사무를 통합하여 전체 사무수가 감소하였음
- 아래는 2010년 동일 조항 내 다수의 사무를 2011년 처리권자가 같은 경우 1개의 사무로 통합한 사례임

〈사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예정지역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⑥ 예정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위의 법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로 사무를 생성할 수 있음
 - 첫째, 국가사무(지식경제부장관)로 ①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 ② 예정지역 변경요청 수리, ③ 예정지역 지정기간 연장, ④ 자유무역지역 지정여부 결정, ⑤ 예정지역 지정 해제 등 5개 단위사무를 생성할 수 있음
 - 둘째, 또 다른 국가사무(중앙행정기관의 장)로 ①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요청, ② 예정지역 변경요청 등 2개의 단위사무를 각각 생성할 수도 있음
 - 셋째, 광역사무(시·도지사)로 ①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요청, ② 예정지역 변경요청 등 2개의 사무를 생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많게는 국가사무 7개, 광역사무 2개를 생성할 수 있으나 1개 조 1개 단위사무 생성원칙을 적용하여 국가사무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지정해제 등(‘등’을 사용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 1개 사무로 생성하고, 광역사무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변경요청 1개 사무 등 2개의 단위사무를 생성하게 됨
- 법조문의 폐지에 따른 단위사무 삭제
- 관련 법조항의 삭제 또는 폐지, 개정 등의 법률 변화로 인하여 삭제된 사무수가 764개로 2010년 대비 2011년 전체 사무가 감소하였음

〈사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 2009.11.22]
제23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때 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 2011. 6.10]
제23조 삭제 <201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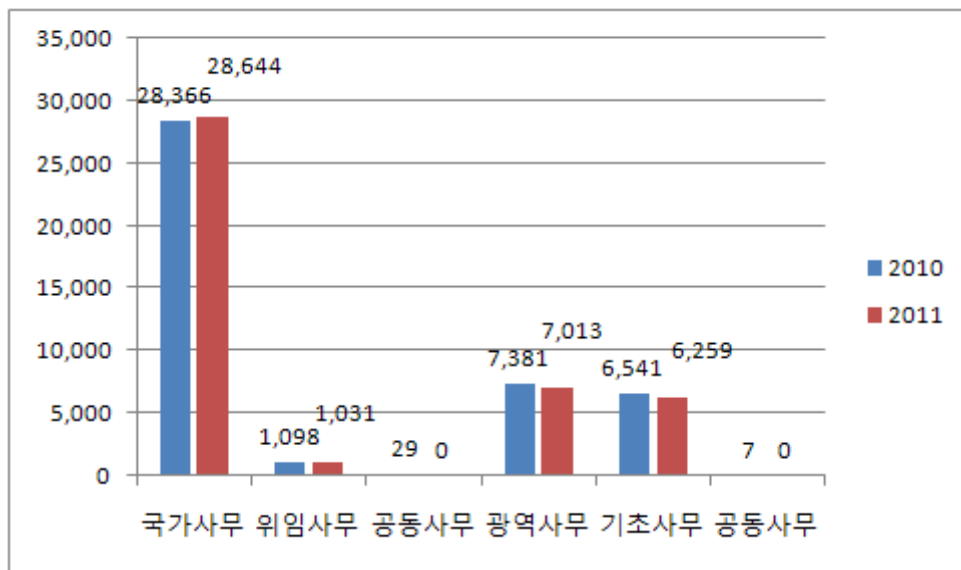
- 위와 같은 경우 법령개정 등에 따라 법조문의 일부가 폐지되어 그에 따라 단위사무가 삭제된 사례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면개정(2010. 4. 14)에 따라 제23조가 삭제되었음
- 따라서 기존 국가사무였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취소가 삭제되게 됨

2) 국가사무의 증가/지방사무의 감소

- 국가사무는 2010년 보다 182개 증가하여 29,675개임
- 지방사무는 2010년 13,929개에서 2011년 13,272개로 675개 감소하였음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의 비중 변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첫째, 신설법률의 큰 증가로 인하여 관련 법률의 현행법상 처리권자가 국가사무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임
- 둘째, 동일 조항 내 처리권자가 같은 사무의 경우 2010년에는 업무 기준으로 다수의 사무를 생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1조항 내 1개의 단위사무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적용하여 처리권자가 같은 경우 사무를 한 개로 생성하고 사무명을 통하여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함에 따른 것임

[그림 3-8] 2010년 대비 2011년 전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



- 2011년 새로운 법의 신설로 생성된 총 사무수는 4,321개이며 이 중 68.5%인 2,962개의 사무유형이 국가사무로 나타남. 또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 중 광역사무의 비율이 약 4%정도 더 높게 나타남. 이는 2011년 총 사무수 중 국가사무의 비율이 2010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과 기초사무보다 광역사무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원인이 됨

〈표 3-11〉 법 신설에 의한 사무 유형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법 신설에 의한 사무수 총계
	국가수행사무				위임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소계	
	직접 처리	특행 기관	소속/ 산하	민간 위탁						
사무 수(건)	2,131	194	505	49	89	2,962	772	587	1,359	4,321
비율 (%)	49.3	4.5	11.7	1.1	2.1	68.5	17.9	13.6	31.5	100.0

- 또한 2011년 법 개정에 의해 수정되거나 신설된 총 사무수는 11,167 개이며 이 중 국가사무가 72.1%로 지방사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국가사무의 증가의 원인으로 해석됨

〈표 3-12〉 법 개정에 의한 사무 유형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법 개정에 의한 사무수 총계
	국가수행사무				위임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소계	
	직접 처리	특행 기관	소속/ 산하	민간 위탁						
사무 수(건)	5,233	1,053	1,484	130	171	8,053	1,600	1,513	3,113	11,167
비율 (%)	46.9	9.4	13.3	1.12	1.5	72.1	14.3	13.5	27.9	100.0

- 2011년의 사무조사 결과 국가사무의 증가와 지방사무의 감소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신설법령의 증가와 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국가사무수의 증가와 지방사무의 삭제로 인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사무의 경우 광역사무에 비하여 기초사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이러한 원인은 법의 신설 및 수정, 삭제, 폐지 등 법률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2010년 지방사무가 2011년 국가사무로 사무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2010년 기초사무가 2011년 광역사무로 사무유형이 변경된 두 경우의 예시를 아래 〈표3-13〉과 〈표 3-14〉를 참고해서 살펴보고자 함

〈표 3-13〉 2010년 지방사무가 2011년 국가사무로 사무유형이 변경된 법률 사례

부처	법령 또는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교육과학기술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해양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병무청	병역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식경제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식경제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법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민방위기본법

- 위의 <표 3-13>의 2010년 지방사무가 2011년 국가사무로 사무유형이 변경된 법률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이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성격의 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2010년 위의 법률들에 해당하는 사무유형은 지방사무였으나 2011년 사무조사 결과 사무유형이 국가사무로 수정되었음
- 아래의 <표 3-14>는 2010년 기초자치단체 사무였으나 2011년 광역자치단체사무로 사무유형이 변경된 법률임

<표 3-14> 2010년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2011년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사무유형이 변경된 법률 사례

부처	법령 또는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국방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국토해양부	하천법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식물방역법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어선법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	어장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법
농림수산식품부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	인삼산업법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재해구호법
소방방재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습지보전법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자연공원법
환경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하수도법

- <표 3-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에 사무유형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였으나 2011년 사무조사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된 경우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 같이 사무의 범위가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중첩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성격의 법률들로 기초자치단체의 단독 사무로 처리하기보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수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성격의 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2010년 위의 법률들에 해당하는 사무유형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였으나 2011년 사무조사 결과 사무유형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되었음

3.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표 3-15〉 광역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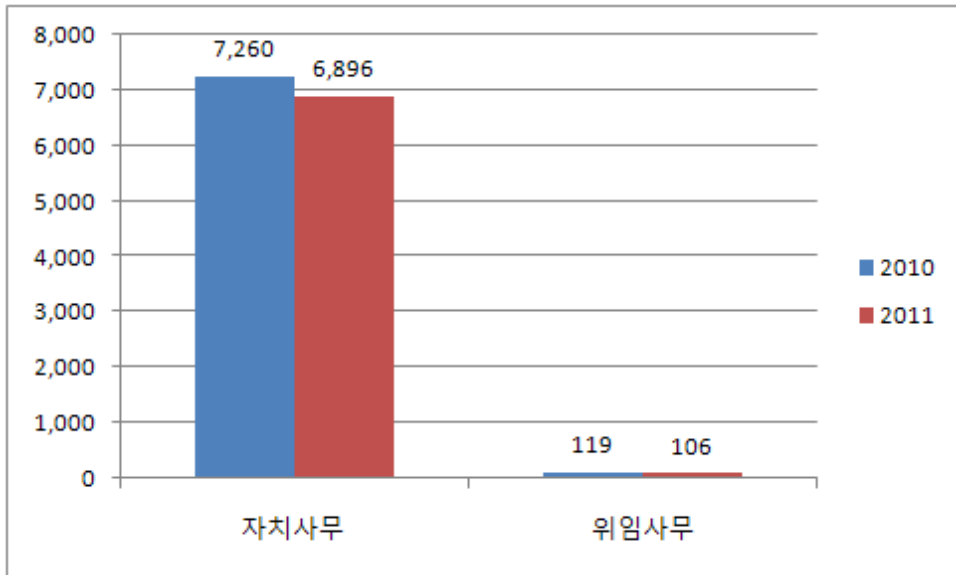
구 분	광역사무						총계
	광역자치				광역 → 기초		
	직접처리	소속기관/ 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2010	사무수 (건)	6,940	260	62	7,260	119	7,381
	비율 (%)	94.0	3.5	0.8	98.4	1.6	100.0
2011	사무수 (건)	6,638	226	43	6,907	106	7,013
	비율 (%)	94.7	3.2	0.6	98.5	1.5	100.0

- 2010년도 : 전체 광역사무는 7,381개이고,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7,260개로 98.4%, 위임사무가 119개로 1.6%임
- 2011년도 : 전체 광역사무는 7,013개이고,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6,907개로 98.5%, 위임사무가 106개로 1.5%임

○ 증감요인

-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전체 광역사무가 개 감소함. 이 중 자치사무가 353개 감소하였으며 위임사무가 13개 감소하였음. 이는 기존 사무의 보완 수정에 따른 분석결과 차이로 판단됨

[그림 3-9] 2010년 대비 2011년 광역사무 배분 실태 비교



○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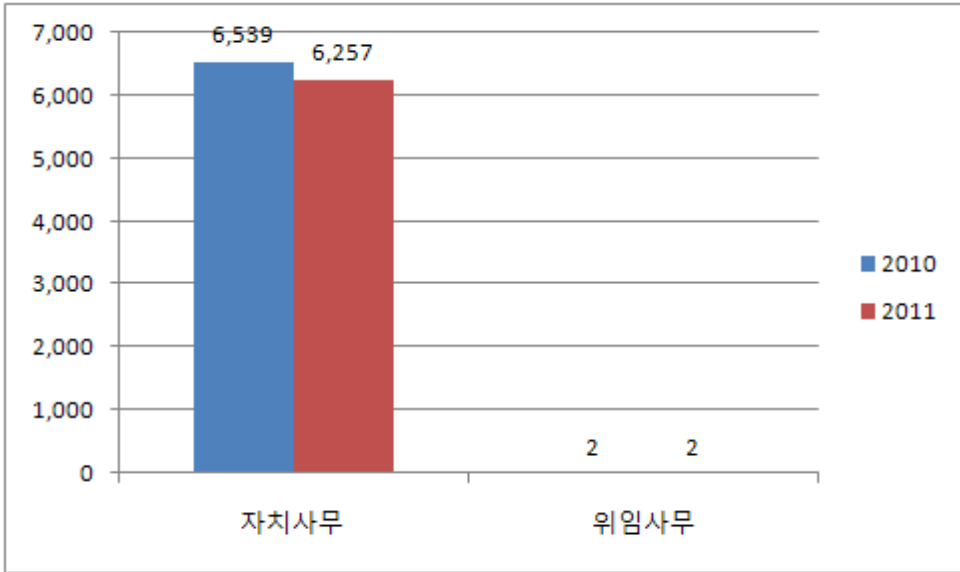
〈표 3-16〉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실태 비교

구분	기초사무					기초 → 광역	총계
	기초자치				소계		
	직접처리	소속기관/산하기관	민간위탁	소계			
2010	사무수(건)	6,414	76	49	6,539	2	6,541
2010	비율(%)	98.1	1.2	0.7	100.0	0.0	100.0
2011	사무수(건)	6,188	44	25	6,257	2	6,259
2011	비율(%)	98.9	0.7	0.4	99.96	0.03	100

- 2010년도 : 전체 기초사무는 6,541개이고,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6,539개로 100.0%임
- 2011년도 : 전체 기초사무가 6,259개이고,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6,257개로 99.96%이고 위임사무가 2개로 0.03%임

- 증감요인 :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전체 기초사무가 282개 감소되었고, 이는 기존 사무의 보완 수정에 따른 분석결과 차이로 판단됨

[그림 3-10] 2010년 대비 2011년 기초사무 배분실태 비교



○ 광역-기초 공동사무 배분 실태

<표 3-17> 광역 - 기초 공동사무 배분 실태

구 분		공동사무	
		광역+기초	
2010	사무수 (건)	7	
	비율 (%)	100.0	
2011	사무수 (건)	0	
	비율 (%)	100.0	

- 2010년도 : 광역과 기초의 공동사무는 7건임
- 2011년도 : 광역과 기초의 공동사무가 0건임

- 증감요인 : 2011년 사무조사부터 사무의 유형 중 공동사무를 최대한 지양하고 어느 한쪽으로 사무를 생성하거나 개별 처리권자의 사무로 생성하여 공통사무로 전환시킴으로 인한 감소임

〈사례1〉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5조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위의 사례의 경우 2010년 사무유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였으나 2011년에는 사무명은 동일하되 각 각 광역자치단체 직접 처리사무와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로 공통사무화 하였음

〈사례2〉 지식경제부, 상공회의소법 54조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례2〉의 경우 201년 사무유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였으나 2011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로 사무유형이 변경됨

- 이외의 2010년 공동사무의 사무유형 변화는 <부록10: 공동사무 유형변화(지방)>을 참고

4. 비교분석의 결과 및 특징(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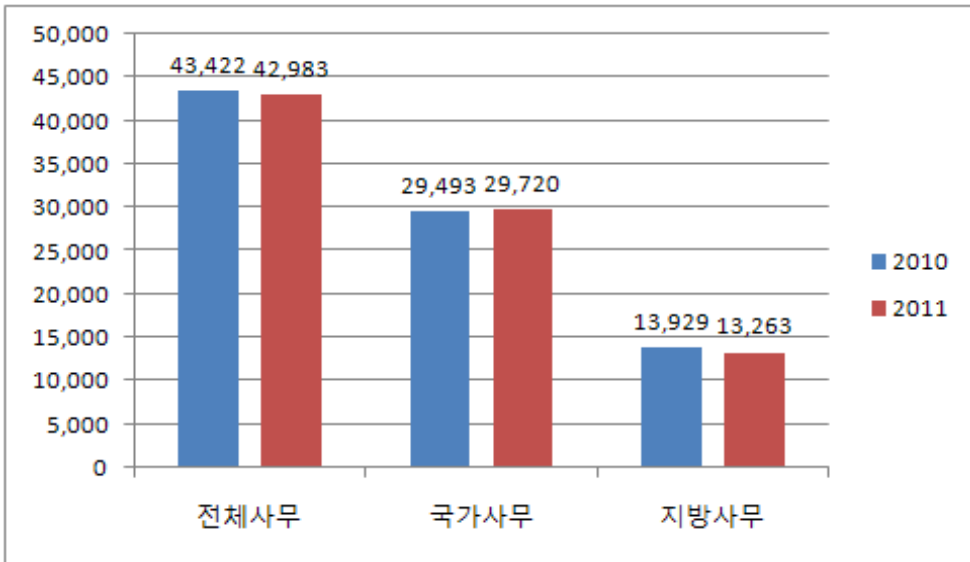
○ 비교종합

<표 3-18> 2010년, 2011년의 사무배분 실태 비교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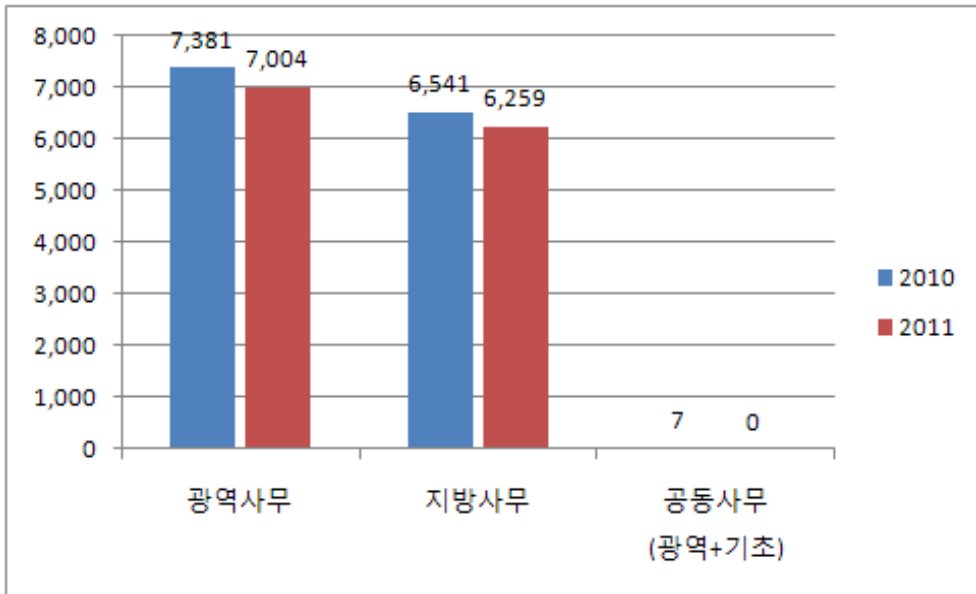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 계	
	국가수행사무				위업 사무	공동 사무	소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동 사무	소계		
	직접 처리	특행 기관	소속/ 산하	민간 위탁									
2010	사무수 (건)	20,489	2,481	4,881	515	1,098	29	29,493	7,381	6,541	7	13,929	43,422
	비율 (%)	47.2	5.7	11.2	1.2	2.5	0.1	67.9	17.0	15.1	0.0	32.1	100.0
2011	사무수 (건)	20,789	2,528	4,888	439	1,031	0	29,675	7,013	6,259	0	13,272	42,947
	비율 (%)	48.4	5.9	11.4	1.0	2.4	0.0	69.1	16.3	14.6	0.0	30.9	100.0
증감	사무수 (건)	-300	47	7	-76	-67	-29	182	-368	-282	-7	-657	-475
	비율 (%)	1.5 (감)	0.2 (증)	0.1 (증)	14.8 (감)	6.1 (감)	100 (감)	0.6 (증)	5.0 (감)	4.3 (감)	100 (감)	4.7 (감)	1.1 (감)

- 2010년 대비 2011년 전체사무는 439건이 감소하였고, 국가사무는 227이 증가되었고, 지방사무는 666건이 감소되었고, 광역사무는 377건이 감소되었고, 기초사무는 282건이 감소되었음. 공동사무는 100%감소하여 0건 됨

[그림 3-11] 2010년 대비 2011년 전체 사무배분 비교



[그림 3-12] 2010년 대비 2011년 지방사무 배분 비교



○ 비교특징

- 2010년 대비 2011년의 조사결과는 전체적인 사무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오히려 국가사무는 201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또한 공동사무의 경우 2010년의 36건이 100% 감소하여 2011년 0건이 되었음

○ 시사점

-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중이 미세하게 줄어든 변동이 있었지만 이는 조사과정 및 수정과정에 나타나는 오류의 범위 수준임. 즉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어왔지만 지방사무의 확대를 위한 분권노력은 법령의 개정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사무비율에 있어서 통계적 오류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를 보여주도록 지속적인 지방이양사무의 발굴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양이 이루어지는 분권노력이 따라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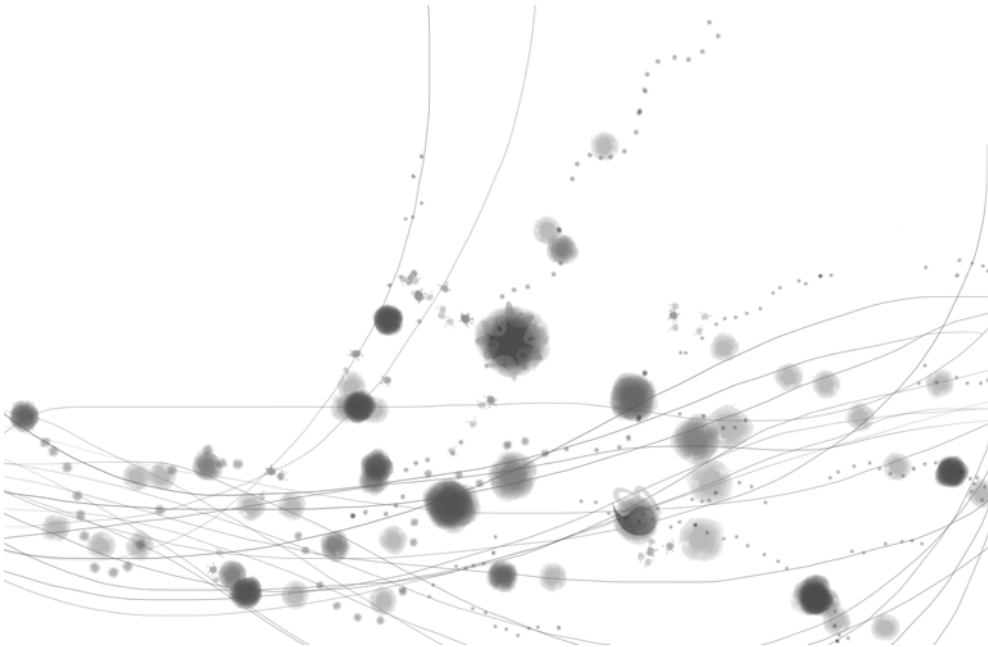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제 4 장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제1절 사무배분기준의 재정립

제2절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제3절 기존 대비 변화(현행 사무배분과의 대비)



제 4 장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제1절 사무배분기준의 재정립

1. 재정립의 목적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사무배분의 이원화
 -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
 - 지방사무는 광역자치사무, 기초자치사무, 법정수임사무로 구분

- 위임사무의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의 도입
 - 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

- 공동사무의 폐지
 - 향후 지방분권을 위해서 공동사무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애매한 사무규정으로 작용하여 분권을 지연시킬 수 있음
 - 2010년 공동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유형을 2011년에 개별 사무로 분류하여 공통사무화 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판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재정립의 내용

- 기초자치사무: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 지역 대응성이 높은 사무
 -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광역자치사무: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광역적인 통일성이 높은 사무
 -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국가사무: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전국적인 통일성이 높은 사무
 - 국가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 법정수임사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무
 - 위임사무 중 지방이양이나 국가환원이 어려운 사무
 - 광역법정수임사무와 기초법정수임사무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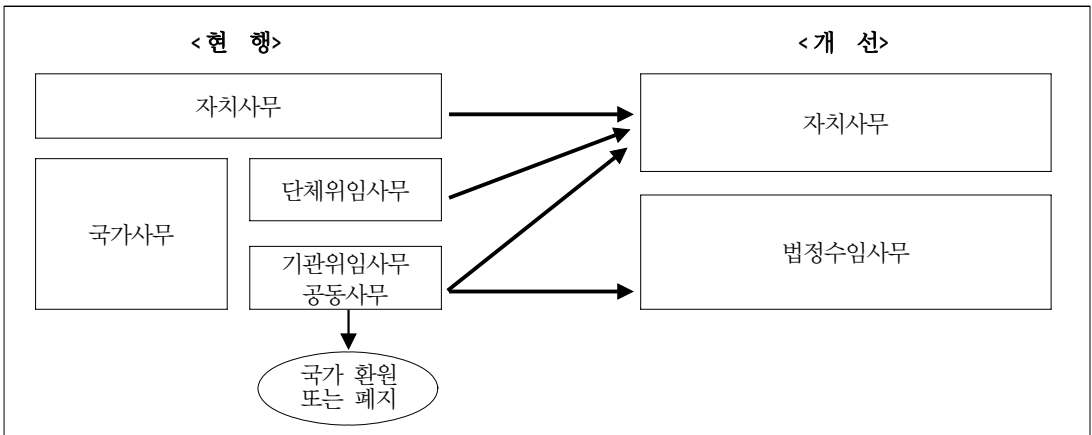
3. 재정립의 효과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
 - 종래의 복잡한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등을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리함
 -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사무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지원 등 재원에 대하여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중앙과 지방 관계의 재정립
 -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 관계에서 대등·협력적 관계를 지향

[그림 4-1]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안



제2절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1.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내역

가. 종합

- 신규기준에 따르면 국가사무는 65.1%, 지방사무는 34.9%로 분석됨
- 지방사무의 경우 자치사무는 34.8%, 법정수입사무는 0.1%로 분석됨

〈표 4-1〉 신규기준에 따른 사무재배분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계
	국가수행사무	법정수입사무	소계	자치사무 (광역자치+기초자치)	법정수입사무	소계	
사무수	27,593	377	27,970	14,946	31	14,977	42,947
비율(%)	64.2	0.9	65.1	34.8	0.1	34.9	100.0

※ 국가수행사무

- 국가직접처리사무 +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 (국가 → 소속/산하기관) + (국가 → 민간위탁기관)

※ 국가사무 중 법정수입사무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사무

- 광역직접처리 + (광역 → 소속/산하기관) + (광역 → 민간위탁) + 50만이상시 사무

※ 기초자치사무

- 기초직접처리 + (기초 → 소속/산하기관) + (기초 → 민간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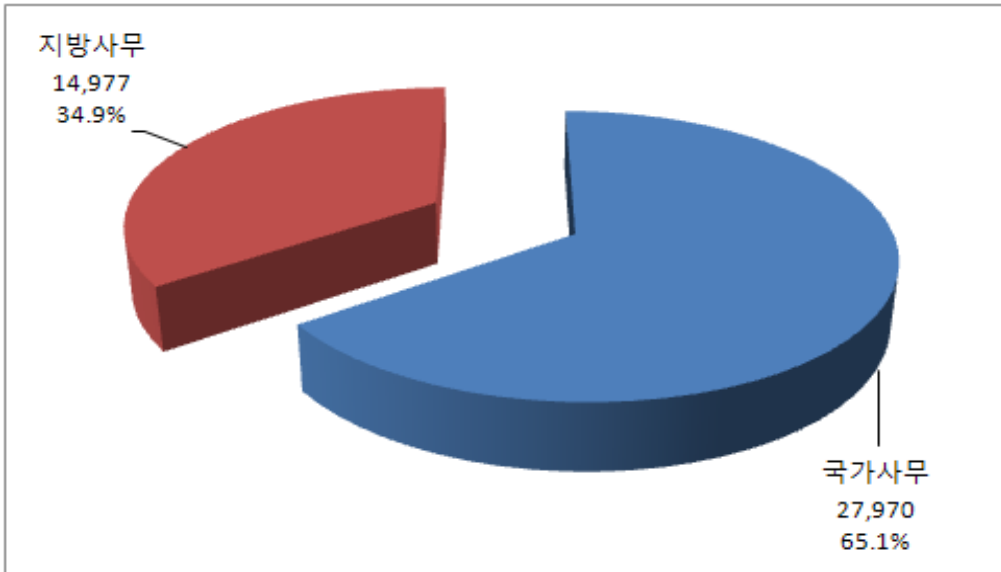
※ 지방사무 중 법정수입사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재배분 사무의 특징

- 새로운 사무재배분 체계에 따라서 없어질 기관위임사무와 공동사무를 가능한 한 자치사무로 전환하려고 노력함
-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와 공동사무에서 지방의 자치사무로 많은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그림 4-2] 사무재배분에 따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



나. 국가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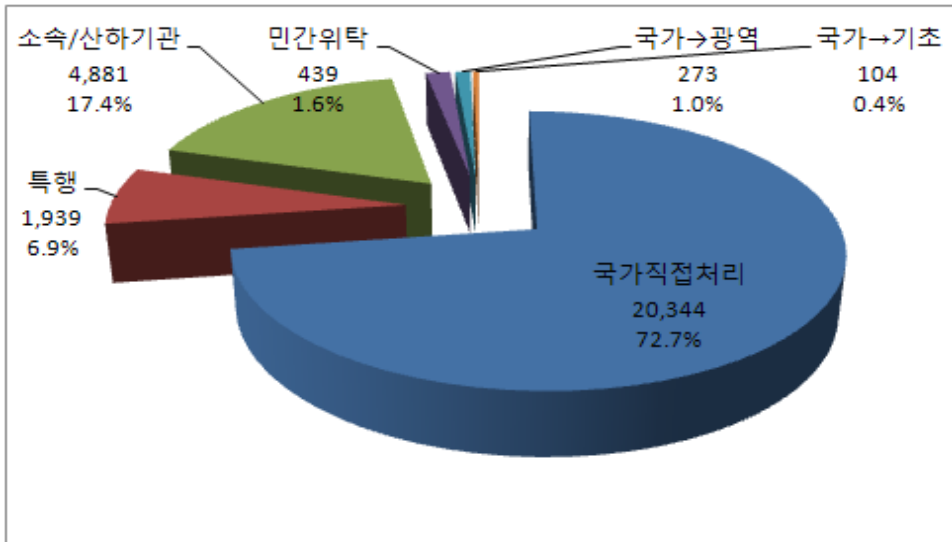
○ 국가사무의 경우

〈표 4-2〉 국가사무의 재배분

구 분	국가사무								총계	총 사무수
	국가수행사무					법정수입				
	직접 처리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소속 기관/ 산하 기관	민간 위탁	소계	국가 → 광역	국가 → 기초	소계		
사무수	20,334	1,939	4,881	439	27,593	273	104	377	27,970	42,947
국가사무에 대한 비율(%)	72.7	6.9	17.5	1.6	98.7	1.0	0.4	1.3	100.0	-
총 사무에 대한 비율(%)	47.3	4.5	11.4	1.0	64.2	0.6	0.2	0.9	65.1	100.0

- 총 사무수 건 중 직접처리는 45.8%, 특별지방행정기관 4.2%, 소속기관/산하기관 11.1%, 민간위탁 1.9%로 분석됨
- 국가사무 중에서 국가 직접처리사무의 비율은 72.4%로 분석됨

[그림 4-3] 사무재배분에 따른 국가사무



○ 국가사무 재배분의 특징

- 국가사무 중에서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비중은 가능한 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경향에 따라서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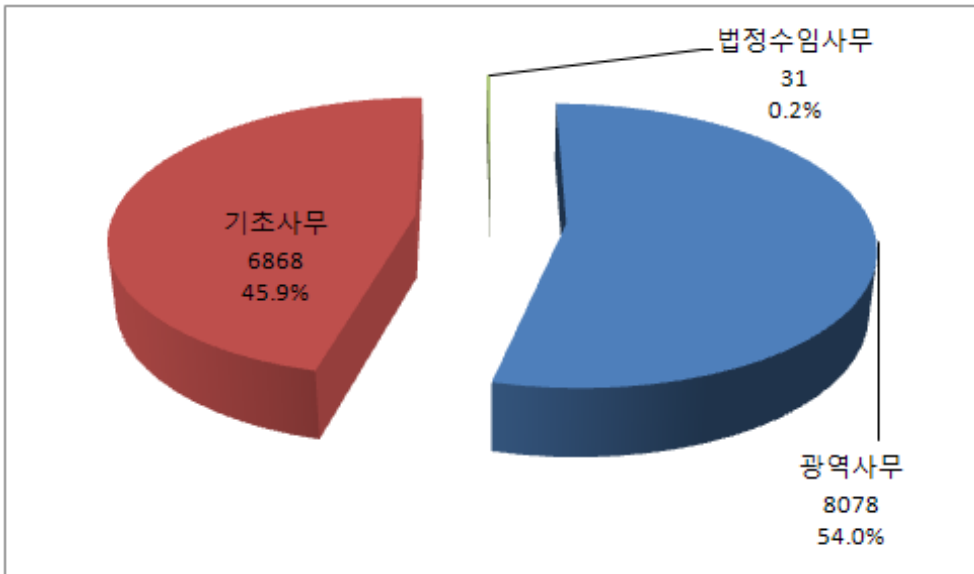
다. 지방사무

〈표 4-3〉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방사무

구 분	광역자치사무					기초자치사무				법정수입사무	총계	총 사무수
	직접 처리	소속 기관/ 산하 기관	민간 위탁	50만 이상시	소계	직접 처리	소속 기관/ 산하 기관	민간 위탁	소계	기초 (광역 → 기초)		
사무수	7,768	267	43	0	8,078	6,774	57	37	6,868	31	14,977	42,947
지방사무에 대한 비율(%)	51.9	1.8	0.3	0.0	53.9	45.2	0.4	0.2	45.9	0.2	100.0	-
총 사무에 대한 비율(%)	18.1	0.6	0.1	0.0	18.8	15.8	0.1	0.1	16.0	0.1	34.9	100.0

- 지방사무의 재배분 실태
 - 지방사무의 총수는 14,977개인데, 그 중 광역자치사무가 53.9%, 기초자치사무 45.9%, 법정수입사무는 0.2%로 분석됨
- 광역사무의 재배분 실태
 - 총사무수 42,947건 중 광역 직접처리사무가 51.9%, 50만 이상 시 사무가 0.0%로 분석됨
- 기초사무의 재배분 실태
 - 총사무수 42,947건 중 기초 직접처리사무 45.2%, 소속기관/산하 기관사무 0.4%, 민간위탁사무 0.2%로 분석됨
- 법정수입사무의 재배분 실태
 - 총사무수 42,947건 중 법정수입사무가 0.2%로 분석됨

[그림 4-4]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방사무



○ 지방사무 재배분의 특징

- 지방사무 중 광역직접처리사무가 가장 많은 것은 대도시권 건설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시행해야 할 사무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법정수임사무의 비율이 광역자치사무나 기초자치사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법정수임사무의 전신인 기관위임사무와 공동사무를 가능한 한 자치사무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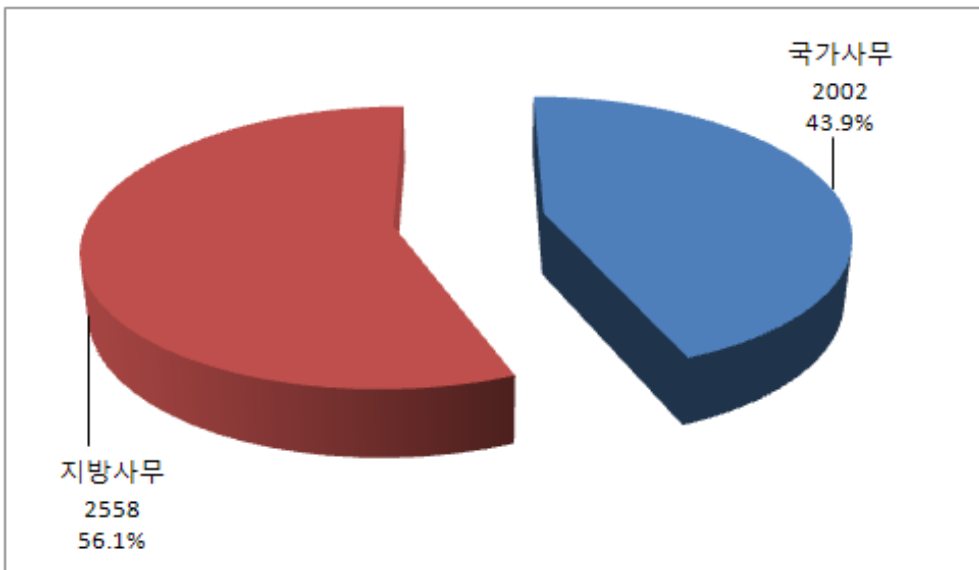
라. 예시: 행정안전부(예시)

○ 총괄

〈표 4-4〉 행정안전부 사무재배분

구 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총계
	국가수 행사무	법정수입 사무	소계	자치사무 (광역자치+ 기초자치)	법정수입 사무	소계	
사무수	1,993	9	2,002	2,557	1	2,558	4,560
비율(%)	43.7	0.2	43.9	56.1	0.0	56.1	100.0

[그림 4-5] 행정안전부 사무 재배분



-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가사무는 43.9%, 지방사무는 56.1%로 분석됨
- 지방사무의 경우 자치사무는 56.1%, 법정수입사무는 0.0%로 분석됨

○ 국가사무

〈표 4-5〉 사무재배분에 따른 행정안전부 국가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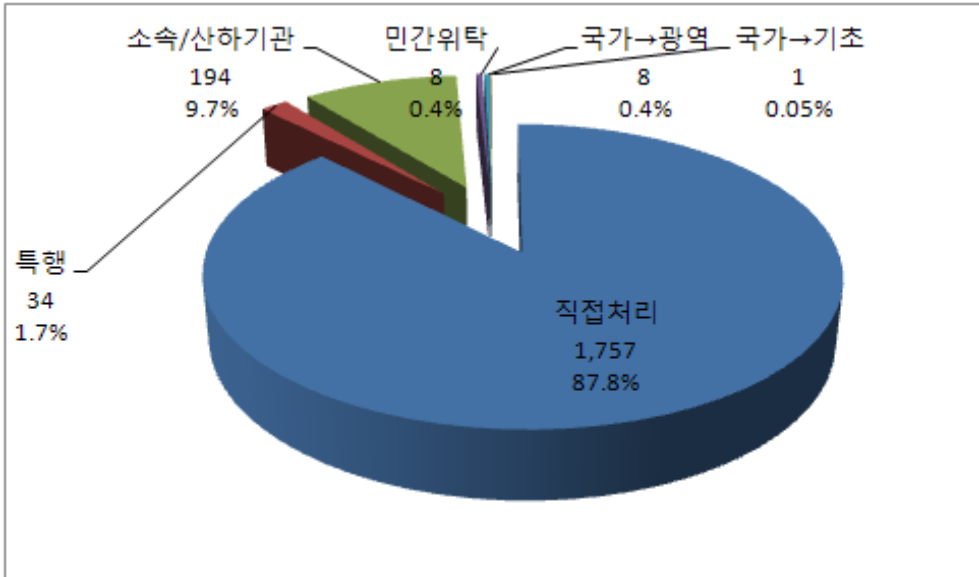
구 분	국가사무								총계	총 사무수
	국가수행사무					법정수입				
	직접 처리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소속 기관/ 산하기관	민간 위탁	소계	국가 → 광역	국가 → 기초	소계		
사무수	1,757	34	194	8	1,993	8	1	9	2,002	4,560
국가사무에 대한 비율(%)	87.8	1.7	9.7	0.4	99.6	0.4	0.0	0.4	100.0	-
총 사무에 대한 비율(%)	38.5	0.7	4.3	0.2	43.7	0.2	0.0	0.2	43.9	100.0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560건 중 국가사무 1,993건의 경우, 국가 직접처리 38.5%, 특별지방행정기관 0.70%, 소속기관/산하기관 4.3%, 민간위탁 0.2%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560건 중 법정수입사무 9건의 경우, 국가 → 광역사무가 0.2%, 국가 → 기초사무가 0.0%로 전체 행정안전부 사무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징

-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공무원을 직접 관리·감독하므로 직접처리사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6] 사무재배분에 따른 행정안전부 국가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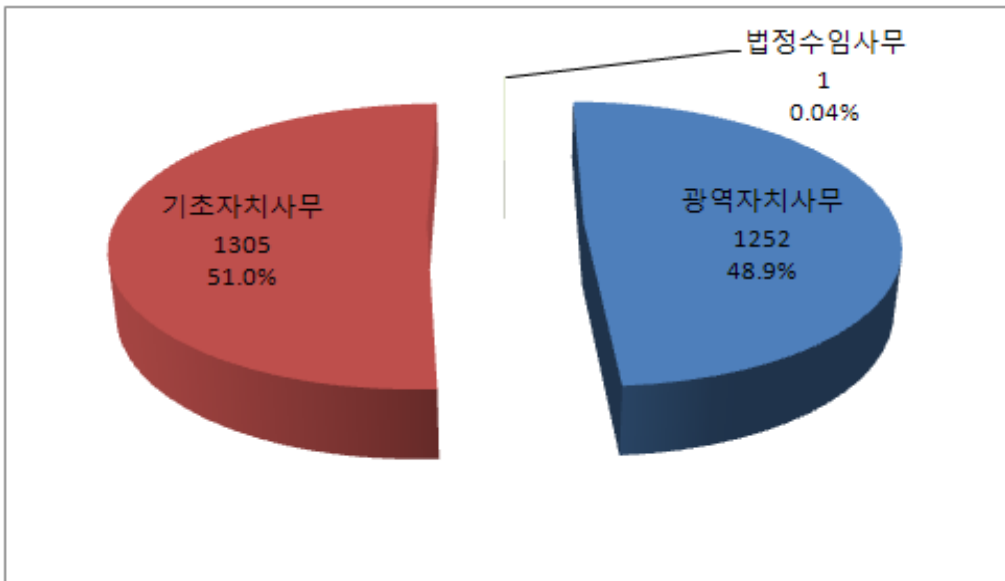
○ 지방사무

〈표 4-6〉 사무재배분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사무

구 분	광역자치사무					기초자치사무				법정수 임사무	총계	총 사무수
	광역 직접 처리	소속/ 산하 기관	민간 위탁	50 만 이 상 시	소계	직접 처리	소속/ 산하 기관	민간 위탁	소계	기초 (광역 → 기초)		
사무수	1,222	26	4	0	1,252	1,283	20	2	1,305	1	2,558	4,560
지방 사무에 대한 비율(%)	47.8	1.0	0.2	0.0	48.9	50.2	0.8	0.1	51.0	0.0	100.0	-
총 사무에 대한 비율(%)	26.8	0.6	0.1	0.0	27.5	28.1	0.4	0.0	28.6	0.0	56.1	100.0

-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 2,558건의 경우, 광역자치사무 48.9%, 기초자치사무 51.0%, 법정수임사무 0.0%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560건 중 광역사무는 광역직접처리사무 26.8%, 소속기관/산하기관처리사무 0.6%, 민간위탁사무 0.1%, 50만 이상 시 처리사무 0.0%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560건 중 기초사무는 기초직접처리사무 28.1%, 소속기관/산하기관 처리사무 0.4%, 민간위탁사무 0.0%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의 총사무수 4,560건 중 법정수임사무는 0.0%로 분석됨

[그림 4-7] 사무재배분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사무



○ 특징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지방사무의 비중이 높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사무보다 광역사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3절 기존 대비 변화(현행 사무배분과의 대비)

1. 국가사무 비교

가. 변화 내용

- 현행 사무구분에 따른 비율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비율 비교
 - 총사무수 42,947건 중 현행 사무배분에 따른 국가사무의 비율이 69.1%에서 65.1%로 약 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2,947건 중 국가직접처리사무의 비율 역시 48.4%에서 47.3%로 약 1.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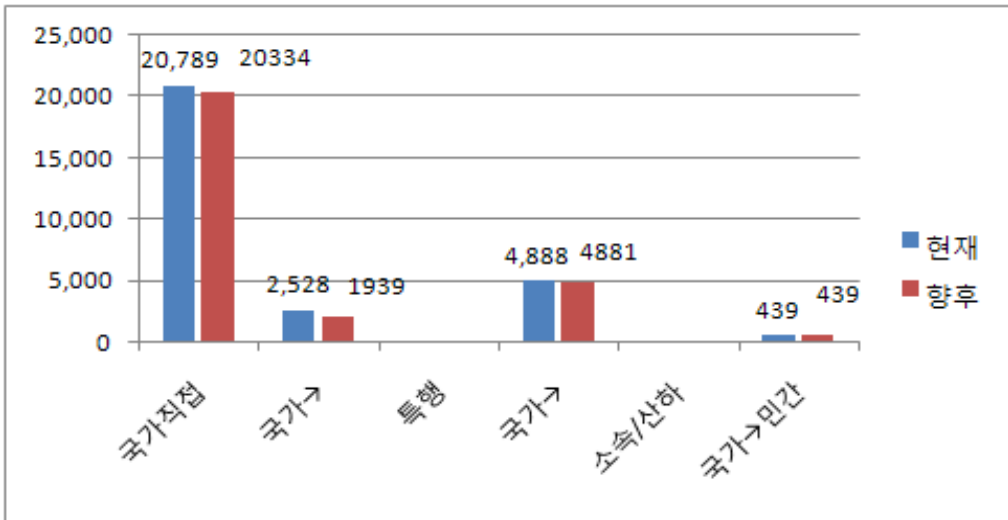
나. 변화요인 분석

〈표 4-7〉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사무비율 비교

사무구분	현행 사무구분			새로운 사무구분		
	사무수	국가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사무수	국가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국가직접처리	20,789	70.1	48.4	20,334	72.7	47.3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2,528	8.5	5.9	1,939	6.9	4.5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4,888	16.5	11.4	4,881	17.5	11.4
국가 → 민간위탁	439	1.5	1.0	439	1.6	1.0
위임사무	1,031	3.5	2.4	-	-	-
공동사무	0	0.0	0.0	-	-	-
법정수입	-	-	-	377	1.3	0.9
소계	29,675	100.0	69.1	27,970	100.0	65.1
총사무 수	42,947	-	100.0	42,947	-	100.0

- 국가직접처리사무 중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455건을 지방 사무로 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 처리사무 중 지방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589건을 지방사무로 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조정과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따라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감소시키고 지방자치사무는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보임

[그림 4-8]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사무비율 비교



2. 지방사무 비교

가. 변화 내용

- 총사무수 42,947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30.9%에서 34.9%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2,947건 중 광역사무의 비율은 16.3%에서 18.8%로 약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2,947건 중 광역 직접처리사무의 경우 15.5%에서 18.1%로 약 2.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2,947건 중 기초사무의 비율은 14.6%에서 16.0%로 1.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총사무수 42,947건 중 기초직접처리사무의 경우 14.4%에서 15.8%로 약 1.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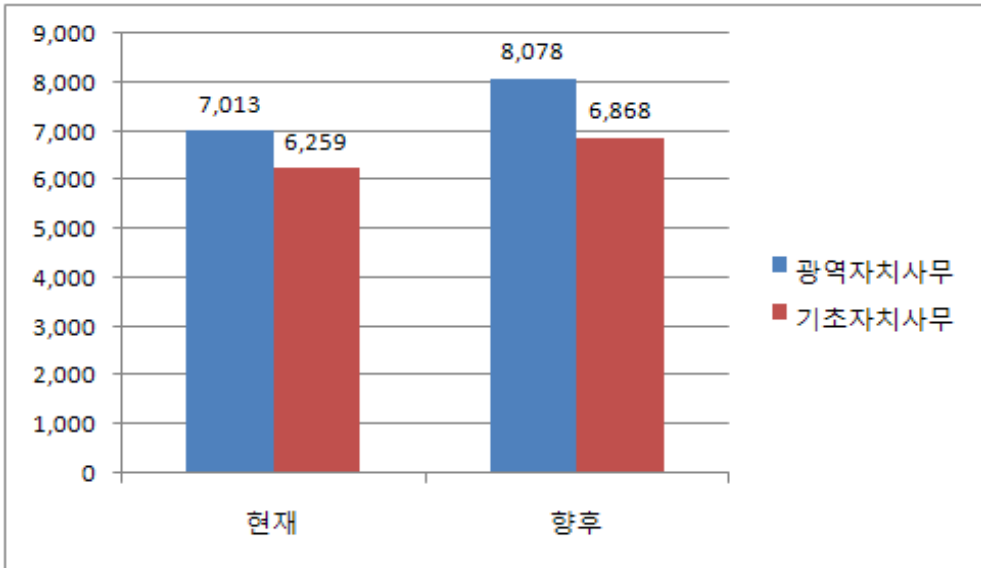
나. 변화요인 분석

〈표 4-8〉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지방사무 비율 비교

사무구분		현행 사무구분			새로운 사무구분			
		사무수	지방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사무수	지방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지방사무	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	6,638	50.0	15.5	7,768	51.9	18.1
		광역 → 소속기관/산하기관	226	1.7	0.5	267	1.8	0.6
		광역 → 민간위탁	43	0.3	0.1	43	0.3	0.1
		광역 → 기초	106	0.8	0.2	0	0.0	0.0
		소계	7,013	52.8	16.3	8,078	53.9	18.8
	기초사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	6,188	46.6	14.4	6,774	45.2	15.8
		기초 → 소속기관/산하기관	44	0.3	0.1	57	0.4	0.1
		기초 → 민간위탁	25	0.2	0.1	37	0.2	0.1
		기초 → 광역	2	0.0	0.0	-	-	-
		소계	6,259	47.2	14.6	6,868	45.9	16.0
	공동사무	광역+기초	0	0.0	0.0	0	0.0	0.0
	법정수입 사무	광역 → 기초	-	-	-	31	0.2	0.1
	지방사무 수		13,272	100.0	30.9	14,977	100.0	34.9
	총사무 수		42,947	--	100.0	42,947	-	100.0

- 국가직접처리사무, 특별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
- 광역사무 중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4-9]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지방사무 비율 비교



3. 위임사무/법정수임사무 비교

가. 변화 내용

- 위임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 － 현행 사무체계에서 위임사무 및 공동사무의 비율이 2.4%였으나, 새로운 사무구분체계에서 법정수임사무는 1.0%로 분석됨

- 이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위임사무와 공동사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임

나. 변화요인 분석

- 단체위임사무는 모두 자치사무로 구분
-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무만 법정수임사무로 구분
- 공동사무의 경우 2011년 사무배분 결과에서 0건으로 나타나 새로운 사무구분 대상이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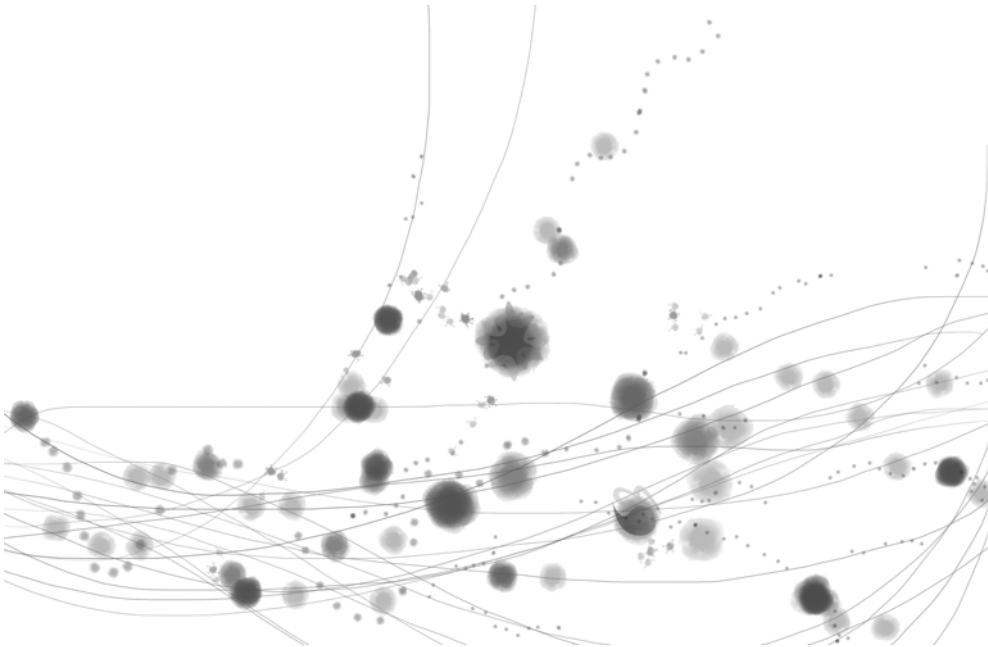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표 4-9〉 현행 사무구분과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위임/법정수임사무 비교

사무구분		사무수	비율(%)
현행 사무구분	위임사무(국가 → 광역)	739	65.0
	위임사무(국가 → 기초)	236	20.8
	위임사무(국가 → 광역+기초)	31	2.7
	재위임(국가 → 광역 → 기초)	25	2.2
	위임(광역 → 기초)	106	9.3
	공동사무(국가+광역)	0	0.0
	공동사무(국가+기초)	0	0.0
	공동사무(국가+광역+기초)	0	0.0
	공동사무(광역+기초)	0	0.0
	소계	1,137	100.0
새로운 사무구분	국가 → 광역	273	66.9
	(국가 → 기초)+(광역 → 기초)	135	33.1
	소계	408	100.0

제 5 장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법령 재정비

제1절 지방이양사무 발굴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후속조치



제 5 장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법령 재정비

제1절 지방이양사무 발굴

1. 사무재분류 현황

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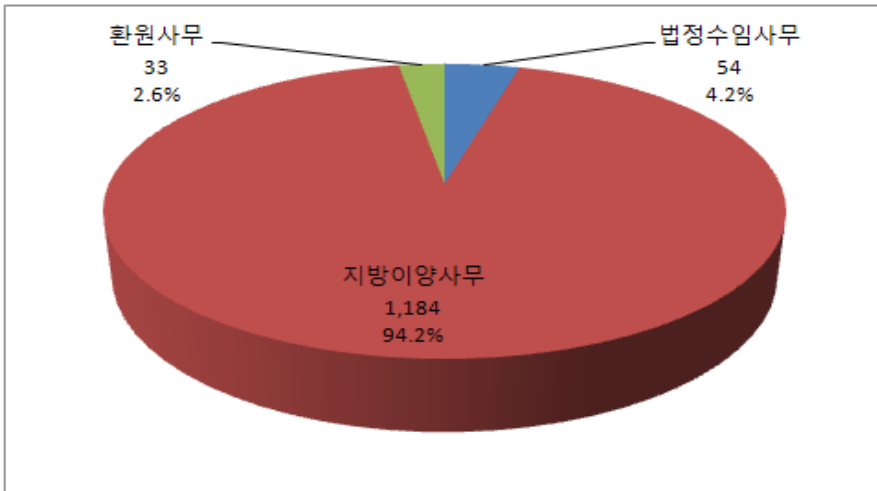
<표 5-1> 사무재분류에 따른 사무유형 변화

구 분	사무변화 유형			
	법정수입사무	지방이양	환원사무	총계
사무수	54	1,184	33	1,271
비율(%)	4.2	94.2	2.6	100.0

○ 특징

- 현재사무 구분체계에서 새로운 사무구분체계로 전환될 때, 변화된 총 사무수는 1,271개인데, 그 중 지방사무로 이양된 것이 1,184개(94.2%)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수입 사무로 변화된 것이 54개(4.2%)이고 환원 사무로 변화된 것은 33개(2.6%)로 나타남
- 국가사무 혹은 위임사무가 집중적으로 지방에 이양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 사무재분류에 따른 사무유형 변화



○ 변화요인 분석

- 국가사무 혹은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비율이 기초사무에 비해 높은 것은 국가사무의 광역단위에서 집행상의 효율성, 광역단체가 처리함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나. 이양사무의 분석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표 5-2> 사무재분류에 따른 국가사무 유형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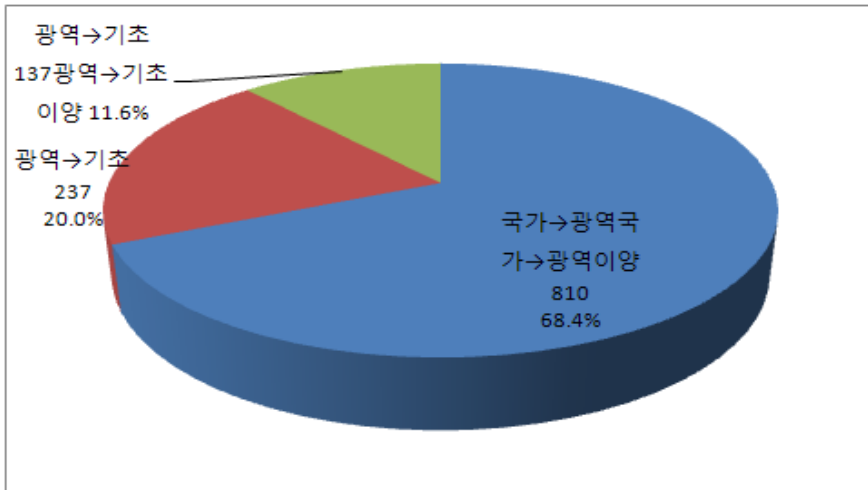
구분	국가 → 광역이양	국가 → 기초이양	광역 → 기초이양	총계
사무수	810	237	137	1,184
비율(%)	68.4	20.0	11.6	100.0

○ 특징

- 총 이양 사무는 1,184개 이고, 그 중 810개(68.4%)는 국가에서 광역자

치단체로, 237개(20.0%)는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은 137개(11.6%)로 나타남

[그림 5-2] 사무재분류에 따른 국가사무 유형변화



○ 변화요인 분석

- 지방분권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반영되어 다수의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대상으로 나타남

1-1)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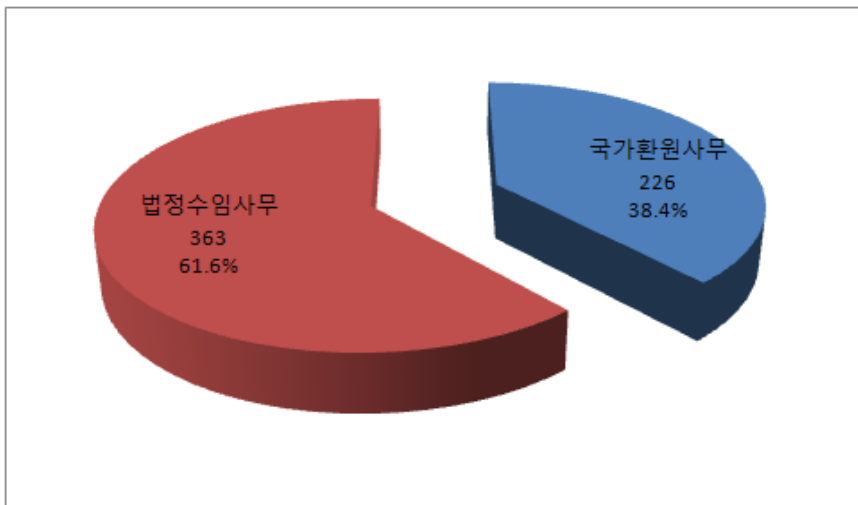
<표 5-3> 사무재분류에 따른 국가사무 유형변화

구분	국가환원 (국가직접)	지방이양 (광역+기초)	법정수입사무 (국가법정수입+ 지방법정수입)	총계
사무수	226	0	363	589
비율(%)	38.4	0.0	61.6	100.0

○ 특징

- 현행 사무구분체계에서 변화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전체 단위 사무 42,947개 중 589개(1.4%)임
- 변화된 사무 중 국가직접처리사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나타난 사무로 226개(38.3%)임
- 변화된 사무 중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사무는 한 건도 없음
- 법정수입사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 사무가 363건 (61.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한 건도 없었음

[그림 5-3] 사무재분류에 따른 국가사무 유형변화



○ 변화요인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대다수 지방으로 분산되었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특성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이양시키기 보다는 법정수입사무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됨

- 그러나 지방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게 함이 지방자치의 이념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어 상당 부분 지방이양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광역/공동(광역-기초)사무의 기초이양

<표 5-4> 사무재분류에 따른 광역/공동(광역기초)사무 유형변화

구 분	광역 → 기초 이양	공동(광역+기초) → 기초이양	총계
사무수	0	0	0
비율(%)	0.0	0.0	0.0

○ 특징

- 변화된 광역/공동(광역-기초)사무는 0개로 나타나 새로운 사무재배분 체계에 따라서 없어질 기관위임사무와 공동사무를 가능한 한 자치사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다. 법정수입사무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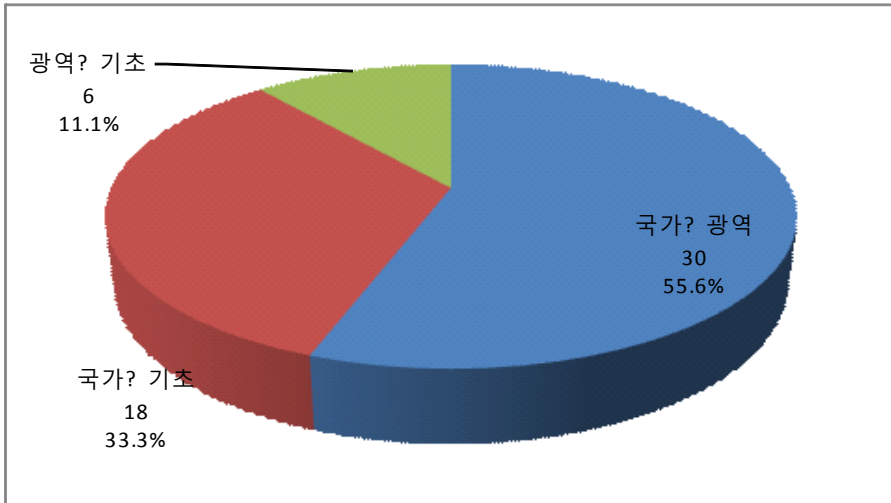
<표 5-5> 사무재분류에 따른 법정수입사무 유형 분석

사무구분	사무수	법정수입사무에 대한 비율(%)	총사무에 대한 비율(%)
국가 → 광역 법정수입사무	30	55.6	0.07
국가 → 기초 법정수입사무	18	33.3	0.04
광역 → 기초 법정수입사무	6	11.1	0.01
총계	54	100.0	0.12
총 사무수	42,947	-	100.0

○ 특징

- 총 법정수임사무 54개 중 국가 → 광역 법정수임사무는 30개(55.6%), 국가 → 기초법정수임사무는 18개(33.3%), 광역 → 기초법정수임사무는 6개(11.1%)임
- 총 사무수 42,947개에 대한 법정수임사무의 비율은 0.12%로 낮게 나타남

[그림 5-4] 사무재분류에 따른 법정수임사무



○ 변화요인

- 위임사무가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종래의 견해가 반영되어 지방이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높고, 주민관련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수임사무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반영됨

라. 환원사무의 분석

<표 5-6> 사무재분류에 따른 환원사무 유형 분석

구 분	기초 → 국가	기초 → 광역시	광역시 → 국가	공동(국가+지방) → 국가	공동(광역시+기초) → 광역	총계
사무수	9	13	11	0	0	33
비율(%)	27.3	39.4	33.3	0.0	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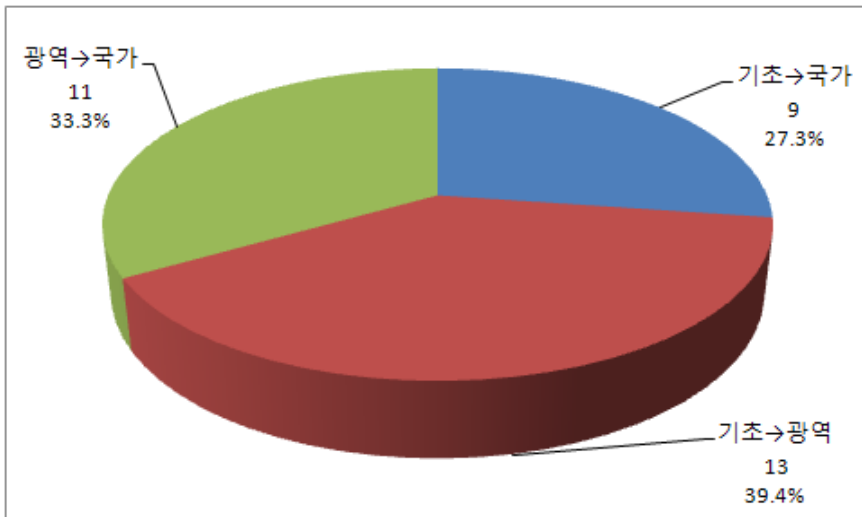
○ 특징

- 총 42,947개의 사무 중 변화된 사무유형이 환원사무로 나타는 것은 33개(0.08%)임

○ 변화요인

- 전체 변화된 사무수 중 환원사무로의 재분류가 33건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의 결과로 분석됨

[그림 5-5] 사무재분류에 따른 환원사무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후속 조치

1. 법령 정비

- 현행 사무배분법제의 문제점
 - 국가사무의 과다
 - 위임사무에 의한 통제
 - 현실상 사무구분의 모호
 - 재정적 조치의 불충분
- 개선방향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가칭)법정수임사무의 두 가지 사무를 수행
 - 현재의 자치사무는 그대로 존속
 -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
 -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는 자치사무로, 일부는 국가 사무로 환원하고 일부는 (가칭)법정수임사무로, 일부는 폐지하거나 민영화
 -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갖는 중앙정부의 포괄적 감독권을 (가칭)법정수임사무에서는 없앴
 - 각각의 사무에 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일반원칙, 기본유형, 절차 등을 명확히 함
 - (가칭)법정수임사무에 관한 지방의회의 관여(조례제정권, 감사권, 조사권 등)를 인정
 - (가칭)법정수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은 전액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
 - (가칭)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대집행, 취소, 정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사무구분체계의 재편성: (가칭)법정수임사무의 도입
 - 기존 우리나라의 국가사무, 자치사무,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체계를 재편

2. 인력 및 자원 조정

- 사전평가의 실시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집행의 비용을 사무이양 시 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함
 - 사무이양 추진절차, 행정기관의 재산처분, 인력 등 정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제정하는 것이 필요

- 이양권한의 고려
 - 행정권한 이양 시 재원의 보전은 이양된 권한과 새로운 권한의 배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지출비용의 증가감소에 대한 지출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총괄지원 안을 세워 이 결과에 따라 세제수입과 교부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등 검토 필요

- 해당 지자체의 입장 반영
 -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 자치사무를 실제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산출

- 교부세 조정에 활용
 -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 인력 및 자원 조정의 한계
 - 예산편성이 기능별로 편성되는 것과 달리 단위사무별로 투입예산을 산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추후 보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 6 장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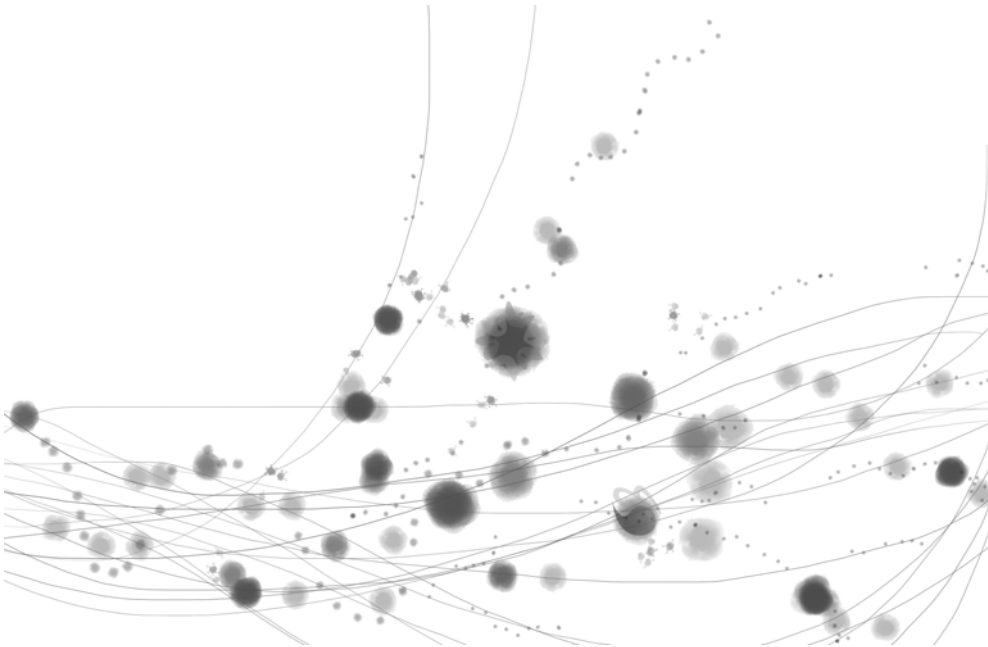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제1절 사업 추진 목적

제2절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제3절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고도화

제4절 법령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제5절 법령사무DB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준비



제 6 장

DB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방안

제1절 사업 추진 목적

- 2009년도에 구축된 법령사무총조사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관리와 법령사무DB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기초 준비과정
 - 연구진 및 관리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의 입력 시스템 구성 및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오류에 대한 수정이 필요
 - 소수 연구진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법령입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에 입력
 - 법령사무DB시스템 구축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준비 작업 실시

-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고도화
 - 법령사무총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 입력단계에서 연구진 및 관리자가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실시
 - 기타 필수적인 기능에 대한 추가 및 수정을 통해 연구진·관리자의 편의성 도모

- 법령 데이터베이스 입력방식 변경 및 고도화
 - 기존에 사용하던 법령 데이터베이스 입력방식(수작업)을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입력 실시

- DB 테이블 정규화 작업 실시 및 스키마 수정을 통한 무결성 보장
- 법령사무DB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준비
 - 최종 목표시스템(법령사무DB시스템)의 통계 및 검색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용성 확장 및 개선
 - 국가기관·지방정부·대국민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준비

제2절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1. 현재 주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 시스템 문제

- 법령 기반의 시스템이 아닌 태생적 한계에 따라 각종 기능 수정 및 추가 불가능, 규명하기 어려운 시스템 오류 발생에 따른 데이터 신뢰성 저하 발생
- 연구결과를 연혁화(형상관리)하기 어려움에 따라 연구결과가 축적될수록 상용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거나, 오류를 발생시키는 기능 존재 및 시스템 전반적 형상관리 부재에 따른 정상적 유지보수 작업의 어려움
- 사무작업 검색 속도, 처리속도 저하, 검색기능 미비, 연구환경 개선 및 고도화 미비에 따른 열악한 연구 환경하에 사무작업 능률 저하, 잘못된 데이터 발생 가능성 증대, 체계적 사무정보 관리의 어려움 발생
- 각종 통계 추출, 사무조사 담당자 자동 배분 등 연구지원 업무에 대한 수작업 실시에 따라 전반적 관리비용 증대

나. 데이터 베이스의 문제

- DB 추출 및 입력의 역할 이원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데이터베이스 오류 발생시 신속한 처리의 어려움
- 계속적(연혁적)DB축적 인프라 부재에 따라 향후 연구결과의 실질적 활용화의 어려움 및 연구결과가 축적될수록 향후 DB통합비용은 크게 증대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DB 품질관리체계 및 방안부재에 따라 가시화되지 않은 데이터 오류 및 문제점이 내재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축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DB 품질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다. 유지·보수 업체의 문제

- 법령처리 경험 부재에 따른 시스템 개선의 한계 발생
- 각종 연구업무 지원 부재, 기능수정 부재에 따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문제점 발생 및 불만 증대

라. 해결방안

- 법령처리 엔진기반의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계속적 DB 구축 인프라 엔진을 제공하는 풍부한 편의기능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데이터베이스 축적방안 제공
- 현 연구시스템의 철저한 분석과 연구원의 사용경험을 반영한 고도화된 연구체계 구축
- 연구단계 및 상시 DB 품질관리체계 및 방안마련을 통하여 DB품질을 유지하고 각종 오류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을 실시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계속적으로 DB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통계추출 및 실시간 정보집계 등의 기능구현을 통한 시스템 자동화 방안 마련
- 경험도 높은 인력자원 할당을 통하여 원활한 연구업무지원 및 전반적 문제점 사전 통제

2. 기존사무 검색 및 연구 방법

- 사용자 및 연구원의 편의보다 DB와 1:1로 매칭되는 단순한 입력, 검색, 조회, 수정화면으로 구성된 시스템 구현 편의 위주로 구축되어 있으며, 시스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각종 오류 및 현저한 반응속도 저하 등 전반적 문제에 따라 연구능력 감소 및 단순 연구시스템 이상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연구결과 공개를 어렵게 할 수 있음

[그림 6-1] 현재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 시스템



3. 개선된 사무작업 방안

가. 검색 시스템

- 사무내용 열람 및 작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색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제처 및 유관 법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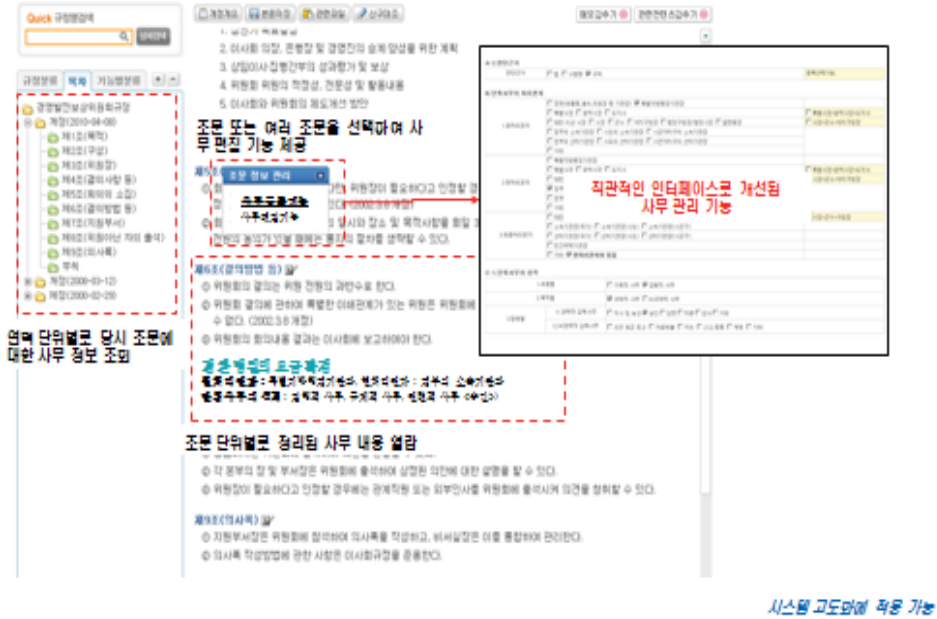
[그림 6-2] 개선된 사무작업 시스템 예시



나. 조회 시스템

- 연구원과 사용자가 일반적인 법령조회화면에서 조문 단위별로 사무등록 및 편집·조회를 함으로써 효율성 및 편의성이 증대됨
- 연혁별로 사무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과 과거 연혁과의 비교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검수작용에 의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그림 6-3] 개선된 조회 시스템 예시



시스템 고도연계 적용 가능

다. 비교 시스템

- 변경된 조문 및 사무에 대한 조회·비교기능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조문이 바뀌었고 어떻게 사무가 변경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상호비교를 통한 인관성 있는 사무조사 장업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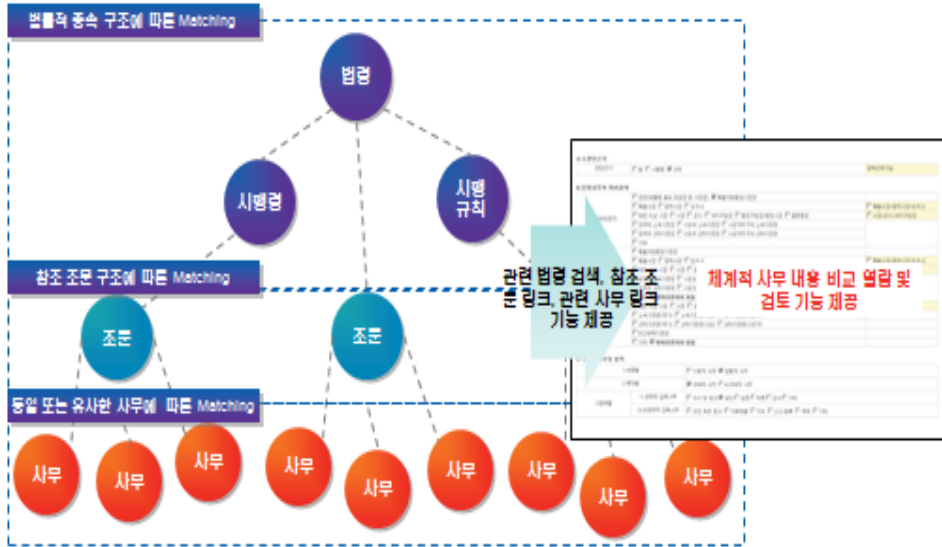
[그림 6-4] 개선된 비교 시스템 예시



라. 유관사무 검색 방안

- 법률적 종속구조, 참조조문 구조, 동일 또는 유사사무 구조별로 Matching 기능을 구현하여 법령을 열람할 때 유사한 사무를 검색하거나 조문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사무내용 열람 및 비교를 제공하며, 연구원에게 체계적인 사무내용 검토방안을 제공함

[그림6-5] 개선된 유관사무 검색 방안



시스템 고도화에 적용 가능

4. 향후 사무조사 DB 유리·보수 및 개편관련 예산 상세내역

가. 개편내용 비교

〈표 6-1〉 개편내용 비교

비교항목		기존 시스템	시스템 개·보수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베이스	추출 및 입력	이원화	단일화	단일화
	품질 관리	없음	부분 가능	가능
	통합 및 연혁화	없음	불가능	가능
시스템	오류 수정	없음	부분 가능	가능
	기능 수정	없음	부분 가능	가능
	속도 개선	없음	부분 가능	가능
	통계 기능	없음	부분 가능	가능
	오픈 사이트 개설	별도 비용	포함	포함
지원	연구 작업 지원	없음	포함	포함
비용		N/A	47,960,000	236,770,000

나. 필요 업무 내역

〈표 6-2〉 필요 업무 내역(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구분	업무 내용		개·보수	필수 여부	특장점	비용
시스템 유지 보수	단위 사무 검토 기능	분야별 단위 사무 성격, 소관부처 및 관련 분야 별로 사무 검토	불가	X	데이터 신뢰도 및 일관성 향상	-
	코드 추가	자치시 및 각종 단위 사무 선택 관련 코드 추가 및 수정, 삭제	가능	O		-
	검색 기능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색 및 조항, 조명 확인 기능, 상세 수준 단위의 검색 기능	부분	X	연구 능력 향상	2,200,000
	불필요 기능 정리	단위 사무 입력 및 불필요 기능 정리	가능	X	연구 능력 향상	1,100,000
	법령 열람 기능	조문 하이라이트 기능 (각 조항 별로 라인 인덴트 및 조문 색상 처리) 및 조문 확인 기능 개선	불가	X	연구 능력 향상	-
	통계 기능	시스템으로 통계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작업	부분	X	수작업 제거	2,200,000
	연구 작업 분배 기능	기존 연구원이 동일한 법령이 개정되어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부분	X	수작업 제거	1,100,000
	오픈 사이트	연구된 데이터를 대중들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가능	O		2,200,000
	시스템 오류 수정	발견된 각종 시스템 오류 수정	부분	O	데이터 신뢰도 향상	8,800,000
시스템 성능 개선	검색 및 조회 관련 성능 개선	부분	O	연구 능력 향상	3,300,000	
데이터베이스	법령 DB 추출	법제처에서 법령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연구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형태로 추출하는 작업	부분	O	법제처 기존 법령 정보 사용에 따른	11,000,000
					데이터 신뢰도 향상	
	법령 DB 입력 및 품질 관리	추출된 법령 정보를 연구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부분	O	DB 입력에 따른 품질 관리 절차 수립에 따라 각종 데이터 발생을 줄이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	11,000,000
연구 DB 품질 관리	기존 DB에 대해서 중복 조항, 연구 데이터 데이터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작업	부분	O	각종 데이터 발생을 줄이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		
연구 지원	연구 관련 회의 참석 및 업무 지원		가능	O	연구 관련 회의 참석 및 업무 지원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소	5,060,000
총 계						47,960,000

〈표 6-3〉 필요 업무 내역(시스템 고도화)

업무 구분	업무 내용		필수 여부	특장점	비용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일정, 자원, 품질 관리	○	고품질의 시스템 구축	21,870,000
시스템 구축	시스템 도입	법령 처리 엔진 도입	○	연구 및 서비스 체계 확립	44,000,000
	단위 사무 검토 기능	유관 법령 및 단위 사무에 대한 검토 기능	○	데이터 신뢰도 및 일관성 향상	110,840,000
	코드 관리 기능	시스템 내부에서 유동적으로 각종 사무 코드 관리 기능	○	시스템 관리비용 감소	
	검색 기능	업무 및 법령 검색 관련 전반적인 기능	○	연구 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법령 열람 기능	조문 하이라이트 및 조문 확인 등 법령 열람 관련 전반적 기능	○	연구 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통계 기능	시스템으로 통계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	○	시스템 관리 비용 감소	
	자동화 기능	수작업 위주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	○	시스템 관리 비용 감소	
	오픈 사이트	연구된 데이터를 대중들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		
	시스템 오류 수정	기존 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는 오류 수정 작업	○	데이터 신뢰도 향상	
	시스템 성능 개선	시스템 전반적으로의 성능 측정 및 개선 작업	○	연구 능률 향상	
	커스터마이징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기능 추가 및 수정 사항 반영 작업	○	연구 능률 향상	
	(특히 UI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DB 통합	기존 DB에 대해서 신규 시스템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작업	○	데이터 정형화에 따른 DB 구축 체계 수립	33,000,000
	법령 DB 추출	법제처에서 법령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연구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형태로 추출하는 작업	○	법제처 기존 법령 정보 사용에 따른	11,000,000
				데이터 신뢰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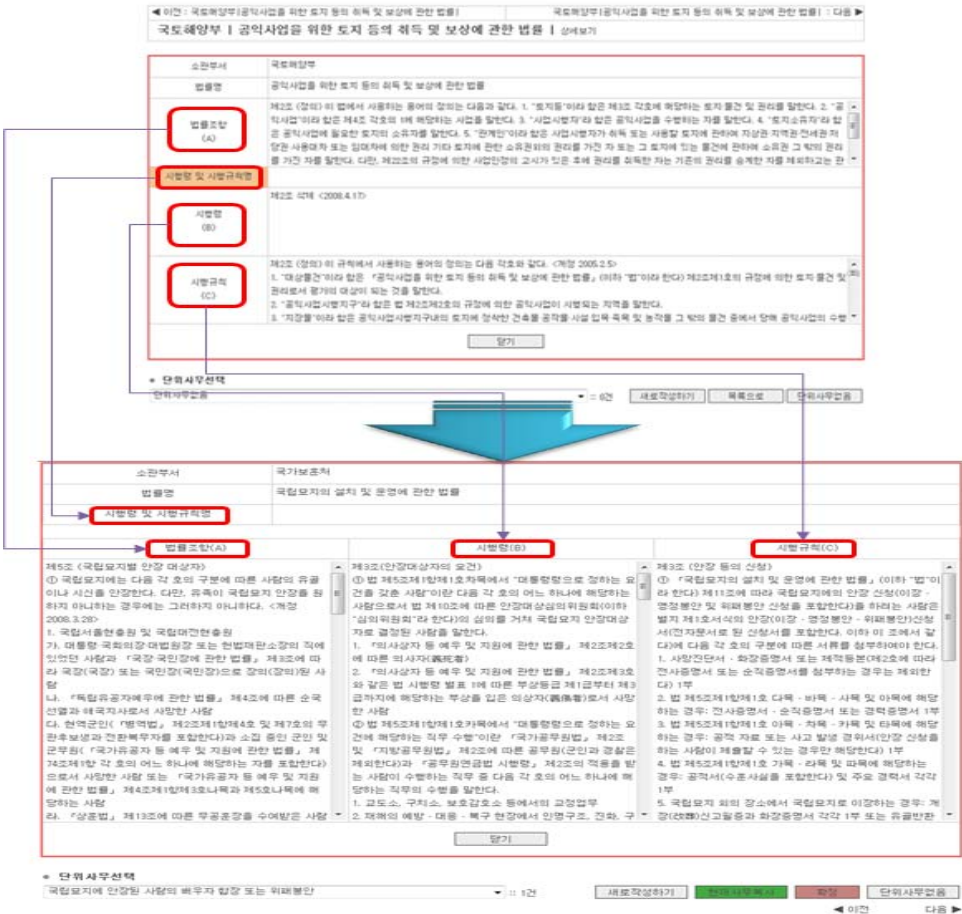
업무 구분	업무 내용		필수 여부	특장점	비용
	법령 DB 입력 및 품질 관리	추출된 법령 정보를 연구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	DB 입력에 따른 품질 관리 절차 수립에 따라 각종 데이터 발생을 줄이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	11,000,000
	연구 DB 품질 관리	기존 DB에 대해서 중복 조항, 연구 데이터 데이터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작업	○	각종 데이터 발생을 줄이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	
연구 지원	연구 관련 회의 참석 및 업무 지원		○	연구 관련 회의 참석 및 업무 지원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소	5,060,000
총	계				236,770,000

제3절 사무데이터베이스 입력시스템 고도화

1. UI(User Interface) 변경

- 기존 사무DB 입력시스템에서 세로로 구성되어 스크롤 증가, 사용자 불편 초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을 가로보기로 UI 전환

[그림 6-6] 법률보기 UI 전환



- 법률조항의 띄어쓰기 및 정렬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부분을 법률입력 시스템화 실시로 정렬 및 해소, UI 개선

2. 연구진 / 관리자 편의기능 추가 구현

- 연구진이 사무배분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필요한 각종 편의기능 추가
 - 현재사무복사 : 현재 선택되어 있는 사무를 그대로 복사하여 처리권자(국가, 광역, 기초) 등과 같은 내용이 약간 변경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추가 구현
 - 확정버튼 : 해당 법률에서 기존 사무와 현재사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도록 버튼 생성
 - 이동버튼 : 법률확인 결과 사무작업이 완료된 현재 법률에서 이전 법률 및 다음 법률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추가해 입력 편의성을 도모함
 - 보류버튼 : 현재 작업하고 있는 법률의 단위사무가 확정적이지 않고, 회의 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도록 추가된 기능

[그림 6-7] 편의기능 추가

소관부서	국가보훈처
법률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명	

법률조항(A)	시행령(B)	시행규칙(C)
제5조 <국립묘지법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국장) 또는 국민장(국민장)으로 장의(장의)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관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상호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	제3조 <안장대상자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등에 유 및 자침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2. 「의사상자 등에 유 및 자침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1. 고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범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민원구조, 진화, 구	제3조 <안장 등의 신청>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이장·영장봉안 및 위패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법 제1호서석의 안장(이장·영장봉안·위패봉안)신청서(간지문서로 할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장서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제2호에 따라 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차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 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우후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무 경력서 각각 1부 5. 국립묘지 회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계장(계장신청서류들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

[닫기]

* 단위사무선택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 합산 또는 위패봉안 [1건] 새로작성하기 **이전** 단위사무선택 다음 ▶

- 시스템 관리자가 작업현황을 모니터링 할 때 필요한 기능 구현
 - 이력보기 기능 : 사무 작업을 완료한 연구진의 입력일, 이름, 작업내역이 파악 가능하도록 신규 구현
 - 단위사무 통계 : 부처별 총 작업량과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진별로 보완결과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페이지 추가
 - 단위사무 수정 확인 기능 : 연구진이 작업한 법률의 단위사무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 가능하도록 작업된 사무(수정, 추가, 확정 등)는 검정색으로 표현, 작업하지 않거나 확정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사무는 붉은색으로 표현 가능하도록 구현

[그림 6-8] 이력보기 기능

소관부서	법률명 또는 시행령/규칙의 명칭	법률조항	단위사무	단위사무명	업무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산교육의 실시 등) ..	1건	[이력] 등산교육 실시 및 위탁..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한국등산지원센터) ..	1건	[이력] 한국등산지원센터 설치..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	3건	[이력] 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	[등록]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 ..	8건	[이력] 등산로 휴식년제 미허가.. [이력] 등산로 휴식년제 미허가.. [이력] 등산로 휴식년제 미허가.. [이력] 등산로 휴식년제 미허가..	[등록]

[그림 6-9] 단위사무 통계 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단위사무 보환결과

'09 단위사무	'10 법률조항	'10 검토완료	검토율	총계	신규	수정	삭제	기본추가	기본삭제	변동없음
3015	2109	2109	100%	2971	1093	1665	876	13	274	213

주1 : 총계 = ('09 단위사무) + 신규 + 기본추가 - 삭제 - 기본삭제
 주2 : 기본삭제 : 2010년도 법령 폐지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된 단위사무의 수

연구진별 보환결과

이름	총 법률 건수	작업율	신규	수정	삭제	변동없음
오희환	2111	100%	598	979	672	13
김성현	876	100%	174	203	46	187
김필두	290	100%	20	86	31	1
전성훈	723	100%	301	397	127	12

부처별 보환 결과

년도	총계	법국가사무				지방사무			
		계	국가사무	위임사무	국가+지방	계	광역사무	기초사무	광역+기초
2009	3015	2026	1727	104	195	989	408	553	28
		67.2	57.28%	3.45%	6.47%	32.8%	13.53%	18.34%	0.93%
2010	2971	1830	1717	90	23	1141	505	629	7
		61.6	57.79%	3.03%	0.77%	38.4%	17%	21.17%	0.24%
		-196	-10	-14	-172	152	97	76	-21

- 기타 수정사항
 - DB 스키마 수정 : 기존 법률입력 방식의 변경으로 법률입력을 위한 테이블 추가 및 사무DB 입력시스템의 DB 스키마 수정
 - 기타 오류사항 수정 : 이동버튼 클릭 시 발생하는 문제점, 법률 및 사무 검색시 발생하는 오류, 단위사무 등록 키 추가, 기타 키의 오류값 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페이지 수정

제4절 법령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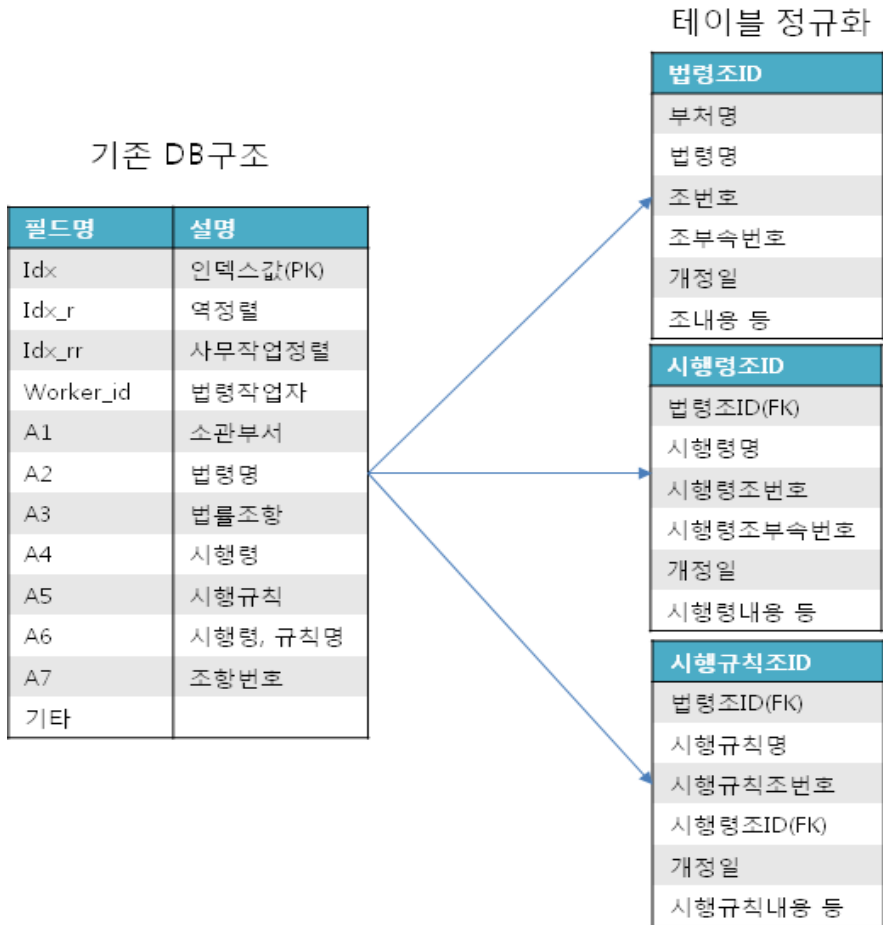
1. 기존 법령입력 작업의 문제점 도출

- 기존 법령입력은 소수 연구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정, 제정, 폐지를 수작업으로 진행
- 상기 입력과정 중에서 법령입력 연구진은 법률 변화에 대한 육안식별과 복사붙여넣기 작업을 병행하여 법령데이터에 오류 발생 및 법률 데이터 무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또한 데이터 입력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법률이 입력되는 등 사무배분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법령입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법률 데이터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단위사무 입력시스템의 UI 변경과 시스템에 오류를 유발시키는 등 법령 입력과정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

2. 법령데이터 입력 고도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3단보기를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 후 테이블 정규화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법령입력작업으로 전환
-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법령입력 구조를 자동화된 구조로 개선하여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및 UI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 실시
-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사무총조사 입력시스템 DB의 법령 3단보기 일치화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하여 원천적 차단
- DB 스키마 구조의 변경 및 테이블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법령사무DB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그림6-5]
- 총 40개 부처 71,866건의 법령을 DB로 입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3단보기 DB와 일치성 확보

[그림 6-10] DB테이블 정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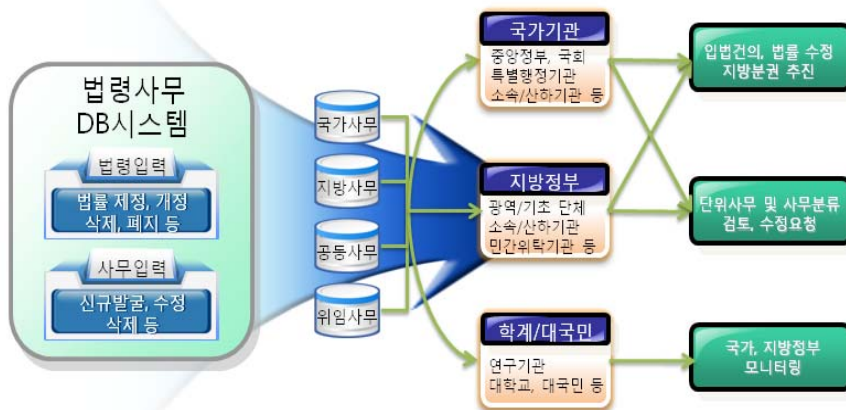


제5절 법령사무DB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준비

1. 시스템 고도화 컨셉 설정

- 국가기관 · 지방정부 · 대국민을 위한 단위사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을 본 시스템의 컨셉으로 설정하고 기존 법령사무DB시스템을 고도화
 - 법령사무DB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지방분권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 국가기관 · 지방정부 · 대국민이 같이 사용하여 단위사무에 대한 계속적 보완, 추가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국가 행정체제 구축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본 시스템의 컨셉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그림 6-6]과 같이 설정
 - 단기간적 DB 구축사업이 아닌 매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DB 서비스를 구현

[그림 6-11] 시스템 고도화 컨셉 및 서비스 네트워크



2. 주요 요구사항(CSF; Critical Success Factors) 분석

- 법령사무DB시스템의 사용자별 공개수준 설정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 사용자에게 강력한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각종 리포트, 보고 자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위원회 등에서 법령사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검색 및 활용가능하도록 서비스 구현
 - 국가기관·지방정부·대국민 사용자는 단위사무 및 유형에 대하여 일 반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기존 시스템의 보완 및 고도화
 - 전 부처 및 특정부처의 조합된 단위사무 통계기능 제공
 - 법령과 관련한 통계 자료 제공
 - 단위사무 각 분야별(단위사무 처리권자, 성격, 유형 등) 조합된 통계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검색시 선택버튼의 기능 다양화 및 결과내 검색 기능 추가
 - 리포팅 틀에 기반한 프린트 디자인 구현

- 시스템 안내 및 FeedBack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제공
 - 법령사무DB시스템 구축 목적, 사용방법 안내 등의 시스템 안내 페이지 추가
 - 국가기관·지방정부·대국민 사용자가 분류된 단위사무에 대한 각종 제안,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시스템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3. 기능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 법령사무DB시스템의 기능 구현은 단위사무 입력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각종 기능을 도출하였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Feedback이 가능하도록 프레임 워크 설계
- 단위사무 입력 프로세스 및 기능구현 프레임워크는 [그림 6-1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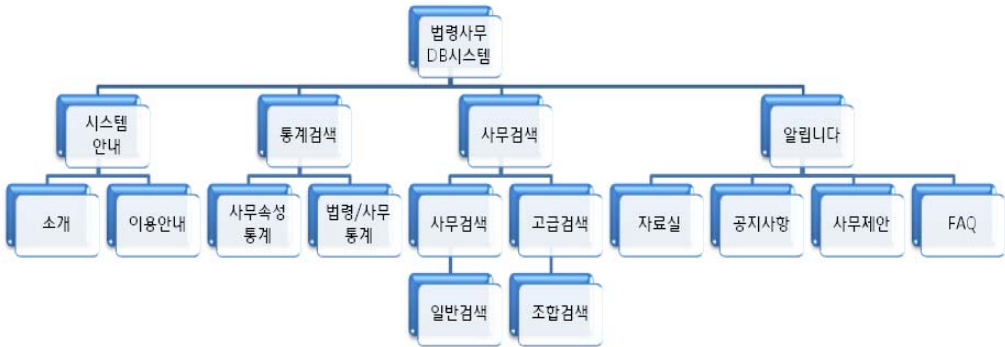
[그림 6-12] 기능구현 프레임워크 설정



4. 법령사무DB시스템 사이트맵 구성

- 법령사무DB시스템의 사이트맵 구성은 기능구현 프레임워크에서 도출된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
- 시스템 안내, 통계, 단위사무 검색, 정보마당으로 각 요소별로 분류하여 [그림 6-13]와 같은 사이트 맵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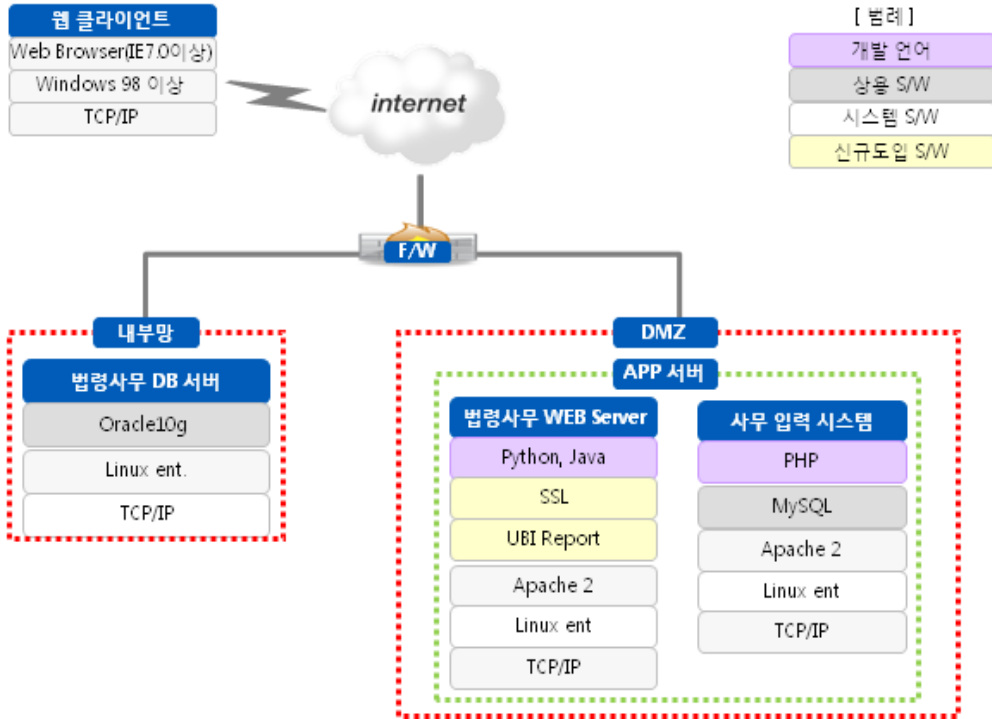
[그림 6-13] 사이트맵 구성



5. 시스템 구조

- 법령사무DB시스템 클라이언트의 사양은 웹 브라우저 IE 7.0이상, Windows 98 이상의 사양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구현
- 법령사무DB시스템의 구조는 DB서버와 WEB APP서버로 분리되어 있으며, 방화벽을 통하여 네트워크간 분리(NAT) 되어 있음
- WEB APP서버에서는 법령사무DB시스템과 사무입력시스템이 웹서비스를 위해 DMZ 상에서 운영되고 있음
- DB서버는 내부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사무DB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구축되었음
- 법령사무DB시스템의 구조 및 개발언어는 다음의 [그림 6-14] 와 같음

[그림 6-14] 시스템 구조



6. 시스템 개발 현황

- 법령사무DB시스템은 4개(시스템안내, 통계검색, 사무검색, 알립니다)의 대분류로 메인 네비게이션이 설계되었음
- "시스템안내"는 법령사무DB시스템 소개, 찾아오는 길의 중분류로 구성됨
- "통계검색"은 부처별 속성통계, 법령통계로 중분류되어 있으며, 단위사무의 속성에 대한 수치를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서비스하고, 각 부처별 법령수 및 사무수를 표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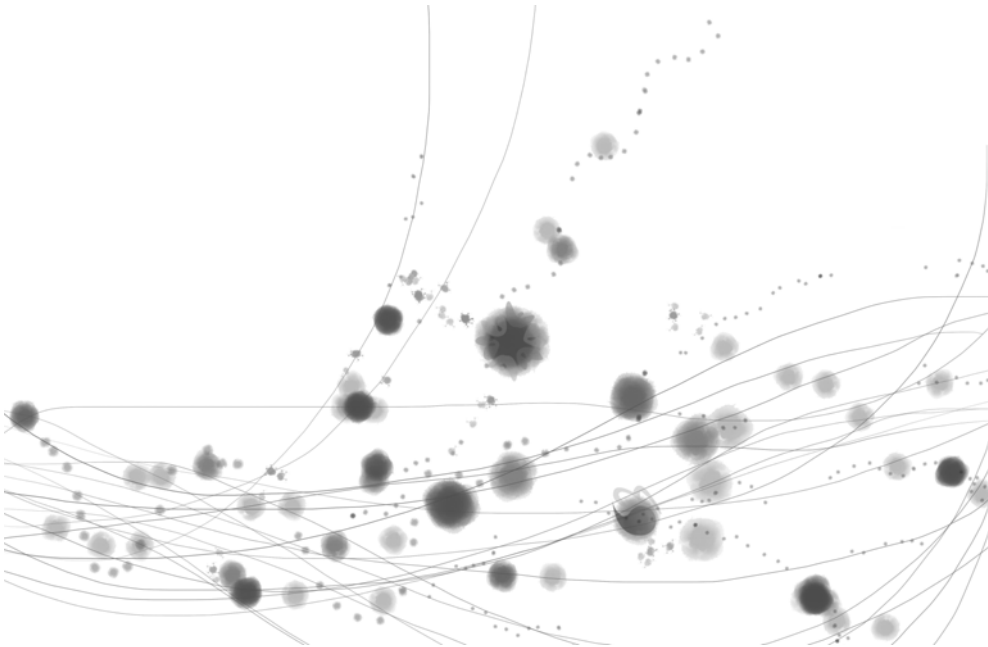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 "사무검색"은 부처별 검색과 조합검색으로 중분류하고, 각 부처별 단위사무에서는 부처별 단위사무에 대한 내용, 법 조문보기로 구성
- 대분류 "사무검색"의 조합검색은 부처별 단위사무의 속성에 대한 조합된 검색결과를 제공하며, 행정안전부 및 연구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
- "알립니다"는 공지사항, 자료실, FAQ, Q&A, 사무제안의 게시판으로 운영되며, 사무에 대한 피드백 및 각종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그림 6-15] 시스템 개발 현황



제 7 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건의



제 7 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건의

1. 연구결과의 활용

- 현행체계에서의 법령상 사무배분 실태 파악
 - － 각 중앙부처별 법령상 사무배분의 실태 파악
 - － 각 중앙부처별 법령상 배분사무의 중앙과 지방간 처리비율 파악
 - － 법령상 사무의 성격별 배분실태 파악
 - － 법령상 단위사무의 흐름(중앙 → 지방) 파악

- 지방자치 관련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을 위한 사무배분 실태 분석
 - －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위한 사무배분 실태 분석
 - － 현재의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분권과 사무이양의 실태 파악
 -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비율 파악
 - － 국가사무의 구성내역과 구성비율 파악
 - －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구성내역과 구성비율 파악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조직진단의 기초자료
 -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시 사무의 흐름도(중앙 → 광역 → 기초) 파악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
 - － 지방자치 혹은 지방행정 전공 교수 연구자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2. DB의 활용

- 조사결과의 Data-Base화로 단위사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법령 변화(제정, 개정, 삭제, 폐지)에 따른 단위사무의 변화 관리
- 지방분권의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정부 업무의 효율적 지원, 정부 업무수행 모니터링,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단위사무 분석을 통한 법률 제정, 개정, 폐지 등 정부 및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 국가 - 지방정부 - 대국민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국가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
-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구현
- 국가의 전체 사무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3. 정책건의

- 연구결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연구지원 기반 마련 필요
 - 연간 30%이상 법률변화에 따른 사무수 변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매년 변동된 법률에 대한 단위사무 업데이트 필요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연구지원, 사무관리를 위한 법령사무조사센터 설치 및 상근 인력 필요

<참고> 법령상 사무 총조사 업무의 지속적 지원방안**1. 지원근거 및 타당성**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10.01) 통과로 지방분권가속화 및 관련 사무규정 필요
 - 국가·지방의 단위사무 이양 및 배분이 원활히 되기 위한 DB 구축 필요
 - 과학적인 행정체제 구축 및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
 - 제6조(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제2항,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구 간의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 제38조(사무배분의 원칙)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배분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1-2 지방분권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1-2-6; 지방행정체제 개편, 1-2-7; 지방정부권한 확장, 1-2-8; 광역경제권 구축)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계층구조 단순화 및 규모의 적정화 산출을 위한 단위사무 데이터 필요
 - 지방정부 권한 확장을 위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
 - 기존 기관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한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마련 및 법률 정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필요 및 정책수립의 과학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단위사무 체계적 구축 필요
 -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필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1 성과를 창출하는 지능형 행정체제 확립(4-1-1; 지식정보의 범정부적 유통·활용 활성화)
 - 수요가 높고, 활용가치가 큰 오프라인 상의 지식정보 및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DB화를 통한 지식공유 기반 확장에 기여, 스마트 정부 구현

2. 지원방법

- 전자정부 전략사업으로 지원
 - IT기반의 정부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19개 과제, 1천304억원 예산 확보
- 정보화 촉진기금 활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 행정안전부 사무총조사 소관부서 발주 용역사업
 - 소관부서인 선거의회과가 자체 용역재원을 확보하여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

3. 소요예산**가. 2012년도 소요예산 : 818,020천원**

- 단위사무 DB 구축 인건비 : 385,020천원
 - 객원연구원(박사급) : 2,000,000원 × 20명 × 9개월 = 360,000,000원
 - 연구보조원(석사급) : 1,390,000원 × 2명 × 9개월 = 25,020,000원
- 시스템 구축 : 385,000천원
 - DB 구축용 시스템(웹 기반) 구축 : 1식 15,000천원
 - 법령 사무DB 시스템 구축 : 1식 200,000천원
 - H/W 및 S/W 구입
 - H/W : 100,000천원(서버(4식), L4, L3스위치, 방화벽, 보안장비 등)
 - S/W : 70,000천원(DBMS, 검색엔진, 리포팅 툴, 보안솔루션 등)
- 회의비 : 48,000천원
 - 자문회의비 : 20,000원 × 20명 × 10회 = 4,000,000원
 - 자문 수당 : 200,000원 × 20명 × 10회 = 40,000,000원
 - 연구진회의비 : 20,000원 × 20명 × 10회 = 4,000,000원

나. 2011년도 이후 소요예산 : 매년 548,52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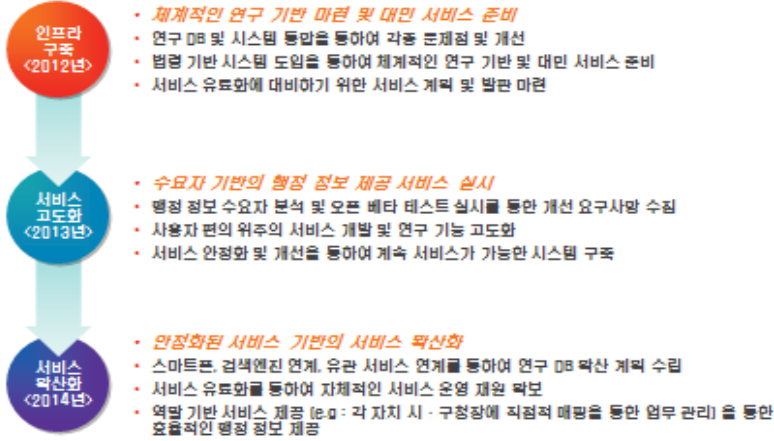
- 인건비 100% : 385,020천원 + 회의비 48,000천원 + 시스템 구축 예산의 30% : 115,500천원

- 법령사무DB시스템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비전, 목표, 고도화 등이 반영된 향후 시스템 운영, 관리계획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간 예산계획의 수립,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법령사무DB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으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표 7-1〉 법령사무DB시스템 운영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초DB구축, 서비스 기반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스템 연계	법령사무DB센터 운영
계획기간	2009 ~ 2010	2011 ~ 2013	2014 ~ 계속
단계별 목표	법령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서비스 기반구축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법령사무 DB센터 운영
사업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집단 조사 •DB 입력시스템 구축 •웹 기반 정보 서비스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와 DB 연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협업기반 구축 •법령사무DB센터 시범 시스템 구축 운영 •서비스 모델 (법령사무 DB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공동협업 •법령사무DB센터 인력 충원 및 정식 서비스 오픈 •모바일 등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관리

[그림 7-1]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방안



○ 2012년도 구축 계획

<표 7-2> 법령사무DB시스템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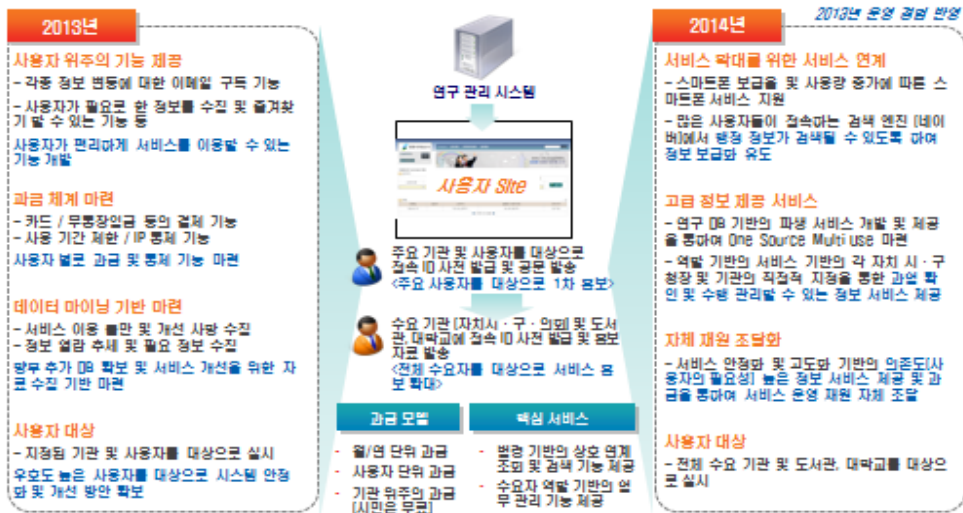
업무구분	업무 내용		필수여부	특장점	비용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일정, 자원, 품질 관리	○	고품질의 시스템 구축	15,870,000
시스템구축	시스템 도입	법령 처리 엔진 도입	○	연구 및 서비스 체계 확립	44,000,000
	검색 기능	업무 및 법령 검색 관련 전반적인 기능	○	연구 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30,840,000
	법령 열람 기능	주문 하이라이트 및 주문 확인 등 법령 열람 관련 전반적 기능	○	연구 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오픈 사이트	연구된 데이터를 대중들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		
	시스템 오류 수정	기존 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는 오류 수정 작업	○	데이터 신뢰도 향상	
데이터베이스	DB 통합	기존 DB에 대해서 신규 시스템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작업	○	데이터 정형화에 따른 DB 구축 체계 수립	33,000,000
	법령 DB 추출	법제처에서 법령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연구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형태로 추출하는 작업	○	법제처 기존 법령 정보 사용에 따른	11,000,000

			데이터 신뢰도 향상		
	법령 DB 입력 및 품질 관리	추출된 법령 정보를 연구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	DB 입력에 따른 품질 관리 절차 수립에 따라 각종 데이터 발생을 줄이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	11,000,000
	연구 DB 품질 관리	기존 DB에 대해서 중복 조항, 연구 데이터 데이터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작업	○	각종 데이터 발생을 줄이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향상	
연구 지원	연구 관련 회의 참석 및 업무 지원		○	연구 관련 회의 참석 및 업무 지원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소	5,060,000
총 계					150,770,000

○ 향후 서비스 계획(유료화)

- 2013년 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 운영, 2014년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연구 DB를 수요자 전반에 유료로 보급화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마이닝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계속적 서비스 기반 및 핵심 콘텐츠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함

[그림 7-2] 향후 유료화 서비스 제공 방안



○ 향후 제공될 서비스 방향

- 수요자 중심의 사무 업무 제공 및 체계화된 지방행정 업무 정보 제공 기반 마련을 통하여 국내 유일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그림 7-3] 향후 제공될 서비스 방향



○ 사무이양 심의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업 필요

- 단위사무의 지방이양, 사무분류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단위사무 심의 기관(지방분권촉진위원회)과의 공동협업 및 연구 필요
- 연구진 및 심의기관이 공동으로 사무분류를 할 수 있는 통합연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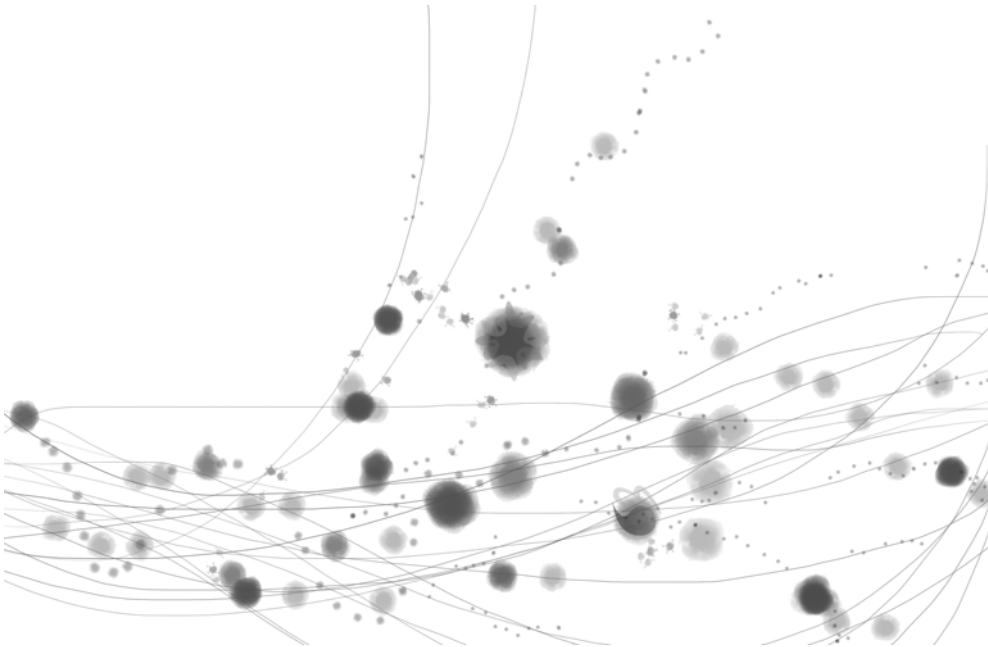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4. 향후 연구과제

- 사무배분기준의 보완
 - 법률용어의 통일과 명확한 개념정의 필요 : 행정법학자 도움 필요
 - 사무의 성격(내용/목적/형태) 판단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사무조사 범위 확대 필요
 - 위(중앙정부)로부터의 사무조사가 가지는 미흡한 점을 아래로부터(지방)의 사무조사로 보완
 - 법령에는 없는 조례나 규칙에 명시된 사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 사무의 정확한 재위임 과정 규명

- 지방분권추진단과의 시스템 공유
 - 지방분권추진단과 사무총조사 DB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이양사무 등에 대한 실시간 검토 실시

부 록



<부록1 :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 국가사무>

부처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총계	
	국가 직접 처리 사무	국가 > 특별 지방 행정 기관	국가 > 소속 기관	국가 > 산하 기관	국가 > 민간 위탁 기관	소계	국가 > 광역 자치 단체장	국가 > 기초 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 자치 단체장 > 기초 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 자치 단체장 + 기초 자치 단체장	소계	국가+ 광역 자치 단체(장) + 기초 자치 단체(장)	국가+ 광역 자치 단체(장)	국가+ 기초 자치 단체(장)	소계		
경찰청	102	222	95	6	12	437	0	0	0	0	0	0	0	0	0	0	437
관세청	4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4
교육과학기술부	1377	5	112	25	29	1548	52	4	0	0	56	0	0	0	0	0	1604
국가보훈처	249	158	6	18	4	435	0	0	0	0	0	0	0	0	0	0	435
국방부	813	3	557	6	0	1379	0	0	0	0	0	0	0	0	0	0	1379
국토해양부	2464	405	139	184	47	3239	203	54	18	3	278	0	0	0	0	0	3517
위원회	1316	0	121	162	42	1641	8	0	0	0	8	0	0	0	0	0	1649
기상청	46	0	0	0	4	50	0	0	0	0	0	0	0	0	0	0	50
기타	120	0	13	0	0	133	0	0	0	0	0	0	0	0	0	0	133
기획재정부	1025	582	47	16	20	1690	68	11	0	14	93	0	0	0	0	0	1783
고용노동부	515	261	15	197	20	1008	7	5	0	0	147	0	0	0	0	0	1020
농림수산식품부	1157	17	442	96	39	1751	57	38	2	1	98	0	0	0	0	0	1849
농촌진흥청	25	32	0	0	0	57	0	0	0	0	0	0	0	0	0	0	57

부처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총계
	국가 직접 처리 사무	국가 > 특별 지방 행정 기관	국가 > 소속 기관	국가 > 산하 기관	국가 > 민간 위탁 기관	소계	국가 > 광역 자치 단체장	국가 > 기초 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 자치 단체장 > 기초 자치 단체장	국가 > 광역 자치 단체장 + 기초 자치 단체장	소계	국가+ 광역 자치 단체(장) + 기초 자치 단체(장)	국가+ 광역 자치 단체(장)	국가+ 기초 자치 단체(장)	소계	
문화재청	117	0	4	2	1	124	5	0	0	0	5	0	0	0	0	129
문화체육관광부	611	0	68	30	17	726	4	1	0	0	5	0	0	0	0	731
방위사업청	3	0	2	0	0	5	0	0	0	0	0	0	0	0	0	5
법무부	3041	148	1351	54	13	4607	0	25	0	0	25	0	0	0	0	4632
법제처	50	0	0	0	0	50	0	0	0	0	0	0	0	0	0	50
병무청	54	52	9	1	0	116	0	0	0	0	0	0	0	0	0	116
보건복지부	1173	101	146	75	42	1537	41	34	5	8	88	0	0	0	0	1625
산림청	259	162	83	0	7	511	32	15	0	0	47	0	0	0	0	558
소방방재청	415	42	23	21	6	507	9	0	0	0	9	0	0	0	0	516
여성가족부	267	0	2	3	0	272	9	9	0	0	18	0	0	0	0	290
외교통상부	309	0	1	11	3	324	0	0	0	0	0	0	0	0	0	324
조달청	134	1	6	0	0	141	0	0	0	0	0	0	0	0	0	141
중소기업청	333	9	0	0	41	383	5	2	0	0	7	0	0	0	0	390
지식경제부	1597	35	211	129	43	2015	53	5	0	0	58	0	0	0	0	2073
통계청	108	3	3	0	0	114	4	0	0	0	4	0	0	0	0	118
통일부	140	0	1	0	7	148	1	0	0	0	1	0	0	0	0	149
특허청	353	0	50	1	8	412	4	0	0	0	4	0	0	0	0	422
해양경찰청	56	35	6	0	0	97	0	0	0	0	0	0	0	0	0	97
행정안전부	1798	40	127	50	12	2027	27	5	0	1	33	0	0	0	0	2060
환경부	758	247	56	73	22	1156	150	28	0	4	182	0	0	0	0	1338
총계	20789	2528	3728	1160	439	28644	739	236	25	31	1031	0	0	0	0	29675

<부록2 : 현행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배분실태 - 지방사무>

부처	광역사무						기초사무						공동사무		총계
	광역 자치 단체 직접 처리 사무	광역 자치 단체 > 소속 기관	광역 자치 단체 > 산하 기관	광역 자치 단체 > 민간 위탁 기관	광역 자치 단체 > 민간 위탁 기관	광역 자치 단체(장) > 기초 자치 단체(장)	소계	기초 자치 단체 직접 처리 사무	기초 자치 단체 > 소속 기관	기초 자치 단체 > 산하 기관	기초 자치 단체 > 민간 위탁 기관	기초 자치 단체(장) > 광역 자치 단체(장)	소계	광역 자치 단체 + 기초 자치 단체	
경찰청	11	0	0	0	3	14	11	0	0	0	0	11	0	0	25
관세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교육과학기술부	570	70	0	2	4	646	204	0	0	0	0	204	0	0	850
국가보훈처	46	0	0	0	0	46	46	0	0	0	0	46	0	0	92
국방부	19	0	0	0	0	19	22	0	0	0	0	22	0	0	41
국토해양부	1361	5	32	8	55	1461	1150	3	3	8	2	1166	0	0	2627
위원회	126	0	0	4	3	133	55	0	0	0	0	55	0	0	188
기상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14	0	0	0	0	14	13	0	0	0	0	13	0	0	27
기획재정부	77	0	0	0	0	77	74	0	0	0	0	74	0	0	151
고용노동부	74	0	0	1	1	76	70	0	0	1	0	71	0	0	147
농림수산식품부	512	9	2	6	11	540	665	7	0	5	0	677	0	0	1217
농촌진흥청	7	0	0	0	0	7	7	0	0	0	0	7	0	0	14

부처	광역사무						기초사무						공동사무		총계
	광역 자치 단체 직접 처리 사무	광역 자치 단체 > 소속 기관	광역 자치 단체 > 산하 기관	광역 자치 단체 > 민간 위탁 기관	광역 자치 단체(장) > 기초 자치 단체(장)	소계	기초 자치 단체 직접 처리 사무	기초 자치 단체 > 소속 기관	기초 자치 단체 > 산하 기관	기초 자치 단체 > 민간 위탁 기관	기초 자치 단체(장) > 광역 자치 단체(장)	소계	광역 자치 단체 + 기초 자치 단체	소계	
문화재청	46	0	0	0	0	46	46	0	0	0	0	46	0	0	92
문화체육관광부	255	4	0	2	2	263	207	1	0	4	0	212	0	0	475
방위사업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법무부	74	1	0	0	0	75	107	0	0	0	0	107	0	0	182
법제처	1	0	0	0	0	1	1	0	0	0	0	1	0	0	2
병무청	8	0	0	0	0	8	7	0	0	0	0	7	0	0	15
보건복지부	554	7	0	5	2	568	742	10	0	4	0	756	0	0	1324
산림청	170	0	0	0	4	174	142	0	0	0	0	142	0	0	316
소방방재청	335	56	0	4	6	401	179	1	0	0	0	180	0	0	581
여성가족부	144	2	2	0	2	150	183	0	2	0	0	185	0	0	335
외교통상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조달청	24	0	0	0	0	24	24		0	0	0	24	0	0	48
중소기업청	109	0	0	3	0	112	86	0	0	0	0	86	0	0	198
지식경제부	298	1	1	6	2	308	313	0	0	0	0	313	0	0	621
통계청	36	0	0	0	1	37	26	0	0	0	0	26	0	0	63
통일부	7	0	0	0	0	7	8	0	0	0	0	8	0	0	15
특허청	3	0	0	0	0	3	3	0	0	0	0	3	0	0	6
해양경찰청	7	8	0	0	0	15	31	0	0	0	0	31	0	0	46
행정안전부	1195	24	0	0	2	1221	27	5	0	1	0	1279	0	0	2500
환경부	555	1	1	2	8	567	505	0	0	2	0	507	0	0	1074
총계	6638	188	38	43	106	7013	6188	39	5	25	2	6259	0	0	13272

<부록3 :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 국가사무>

	국가사무				법정수입사무		국가계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국가>기초자치단체(장)	
경찰청	99	137	109	16	0	0	361
관세청	4	0	0	0	0	0	4
교육과학기술부	1368	5	135	29	8	0	1545
국가보훈처	248	108	23	4	0	0	383
국방부	814	3	562	0	0	0	1379
국토해양부	2160	276	299	48	31	9	2823
위원회	1314	0	283	42	0	0	1639
기상청	46	0	0	4	0	0	50
기타	119	0	14	0	0	0	133
기획재정부	1025	582	63	20	9	8	1707
노동부	501	153	199	20	0	3	876
농림수산식품부	1134	18	539	38	42	28	1799
농촌진흥청	21	0	0	0	0	0	21

	국가사무				법정수입사무		국가계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국가>기초자치단체(장)	
문화재청	117	0	6	1	3	0	127
문화체육관광부	611	0	98	17	2	0	728
방위사업청	3	0	2	0	0	0	5
법무부	3036	147	1422	13	0	25	4046
법제처	50	0	0	0	0	0	50
병무청	54	52	10	0	0	0	116
보건복지부	1144	61	227	42	25	19	1518
산림청	258	19	83	0	0	0	367
소방방재청	417	29	44	6	6	0	502
여성가족부	267	0	5	0	3	0	275
외교통상부	309	0	12	3	0	0	324
조달청	134	1	6	0	0	0	141
중소기업청	332	4	0	41	0	0	377
지식경제부	1582	34	353	43	47	3	2062
통계청	108	3	3	0	0	0	114
통일부	140	0	1	7	1	0	149
특허청	353	0	51	8	0	0	412
해양경찰청	56	35	6	0	0	0	97
행정안전부	1757	34	194	8	8	1	2002
환경부	753	238	132	22	88	8	1241
총합계	20334	1939	4881	439	273	104	27970

<부록4 : 새로운 체계에 의한 단위사무의 재배분 - 지방사무>

	지방사무 - 광역				소계	지방사무 - 기초				법정수입사무		총계
	광역자치 단체 직접처리 사무	광역자치 단체 > 소속기관/ 산하기관	광역자치 단체 > 민간위탁 기관	광역자치 단체사무 (50만이상시)		기초자치 단체 직접처리 사무	기초자치 단체 > 소속기관/ 산하기관	기초자치 단체 > 민간위탁 기관	소계	광역자치 단체(장) > 기초자치 단체(장)	소계	
경찰청	85	1	0	0	86	14	1	0	15	0	0	101
관세청	0	0	0	0	0	0	0	0	0	0	0	0
교육과학기술부	630	68	2	0	700	209	0	0	209	0	0	909
국가보훈처	97	0	0	0	97	47	0	0	47	0	0	144
국방부	19	0	0	0	19	22	0	0	22	0	0	41
국토해양부	1733	55	5	0	1793	1506	4	18	1528	0	0	3321
위원회	134	0	4	0	138	60	0	0	60	0	0	198
기상청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14	0	0	0	14	13	0	0	13	0	0	27
기획재정부	150	0	0	0	150	77	0	0	77	0	0	227
노동부	204	1	1	0	205	82	2	1	85	0	0	291
농림수산식품부	536	11	6	0	553	693	8	5	706	8	8	1267
농촌진흥청	43	0	0	0	43	7	0	0	7	0	0	50

	지방사무 - 광역					지방사무 - 기초				법정수입사무		총계
	광역자치 단체 직접처리 사무	광역자치 단체 > 소속기관 / 산하기관	광역자치 단체 > 민간위탁 기관	광역자치 단체사무 (50만이상시)	소계	기초자치 단체 직접처리 사무	기초자치 단체 > 소속기관/ 산하기관	기초자치 단체 > 민간위탁 기관	소계	광역자치 단체(장) > 기초자치 단체(장)	소계	
문화재청	48	0	0	0	48	46	0	0	46	0	0	94
문화체육관광부	247	5	2	0	254	217	1	4	222	2	2	478
방위사업청	0	0	0	0	0	0	0	0	0	0	0	0
법무부	67	1	0	0	68	102	1	0	103	0	0	171
법제처	1	0	0	0	1	1	0	0	1	0	0	2
병무청	8	0	0	0	8	7	0	0	7	0	0	15
보건복지부	600	29	5	0	634	773	16	5	794	3	3	1431
산림청	307	0	0	0	307	200	0	0	200	0	0	507
소방방재청	349	55	4	0	408	179	2	0	181	6	6	595
여성가족부	150	4	0	0	154	194	2	0	196	0	0	350
외교통상부	0	0	0	0	0	0	0	0	0	0	0	0
조달청	24	0	0	0	24	24	0	0	24	0	0	48
중소기업청	119	0	3	0	122	89	0	0	89	0	0	211
지식경제부	303	1	5	0	309	320	0	0	320	0	0	632
통계청	39	0	0	0	39	28	0	0	28	0	0	67
통일부	7	0	0	0	7	8	0	0	8	0	0	15
특허청	7	0	0	0	7	3	0	0	3	0	0	10
해양경찰청	7	8	0	0	15	31	0	0	31	0	0	46
행정안전부	1222	26	4	0	1252	1283	20	2	1305	1	1	2558
환경부	618	2	2	0	322	539	0	2	541	8	8	1171
총합계	7768	267	43	0	8078	6774	57	37	6868	31	31	14977

<부록5 : 사무유형 변화비교>

사무유형 현재 - 사무 재배분판정	건수
(지방이양사무)	
국가사무 - 광역사무로 변화된 건수	810
국가사무 - 기초사무로 변화된 건수	237
광역사무 - 기초사무로 변화된 건수	0
(국가-지방)공동사무 - 광역사무	0
(국가-지방)공동사무 - 기초사무	0
(광역-기초)공동사무 - 기초사무로 변화된 건수	0
계	1184
(법정수입사무)	
법정수입사무 :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30
법정수입사무 :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18
법정수입사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6
계	54
(환원사무)	
광역사무 - 국가사무로 변화된 건수	11
기초사무 - 국가사무로 변화된 건수	9
기초사무 - 광역사무로 변화된 건수	13
국가(국가-지방)공동사무 - 국가사무로 변화된 건수	0
지방(광역-기초)공동사무 - 국가사무로 변화된 건수	0
지방(광역-기초)공동사무 - 광역사무로 변화된 건수	0
계	33

<부록6 : 통합된 단위사무 >

부처	법률	사무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주, 용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수탁기관 등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광역)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 및 설치 협의, 승인요청(광역: 소속/산하기관 포함)
교육과학기술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설립·운영자·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 관련 조사·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조인력 제공·각종 교구 등 설비 제공 등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법	학생·학부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보고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관련 식품·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및 시정명령(광역)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초·중등학생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수리·확인·교육정보시스템에의 기록 및 예방접종 지도·협조 요청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학교생활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 및 관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보고 수리 및 전담기구 구성·조사결과 보고 수리·전담기구에 대한 지원 등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기본법	단위물류정보망 직접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비용 지원·연계체계 구축대책 수립(광역)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말소 등 요청 및 처분내용·처분사유 등 보고(광역: 소속/산하기관 포함)
국토해양부	건축법	건축행정에서의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조치·조치결과 보고 수리·시정결과 보고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광역)
국토해양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광역)
국토해양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외견수립·협의·광역(일반 포함)복합환승센터 지정·변경 지정 승인 요청 및 지정 요청 수리
국토해양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의료기관 설치·운영 시 설치계획 작성·제출 및 의료기관 설치 인·허가 신청(광역: 산하기관 포함)
국토해양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변경 수립·승인·협의·폐지·고시 및 통보(국가)
국토해양부	도선법	도선사면허 취소·업무 정지 명령·청문 실시 및 처분 내용 통지·면허중 회수(국가: 국가관리항)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건설·공유수면 매립·기초조사·토지 매수 등 위탁 및 위탁 수수료 지급·신택개발 승인 요청(광역: 산하기관 포함)
국토해양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의 건설 소요비용 일부 보조·용자 및 정비사업비용 보조 또는 용자 앞선(광역)
국토해양부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운영 운임 범위 결정·운임조정위원회 설치·의견 수렴 및 도시철도 운임 결정·변경 신고 수리·통보(광역)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토지 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의 위탁(광역: 산하기관 포함)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검사 및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검사(광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기본법	지역물류현황조사 실시·자료요청·직접 조사 요청·조사 전문기관 의뢰 및 조사지침 작성·통보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통합·이전·폐쇄명령(특별시·광역시 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관련 향토산업·농어촌지역 특화산업 보호·육정정책 수립·시행(광역)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신교채용시험·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실시(국가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탁)
소방방재청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대원 편성·운영, 위험물제조소 자체소방대 화재현장 출동명령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 및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 수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전국조합·협동조합연합회의 결산관계 서류 수리(광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전국조합·협동조합연합회의 총회 개최 및 결과 등 보고 수리, 규약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승인(광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전국조합·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관련 보고 수리 및 회계상황 검사(광역)
지식경제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접수·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 발급
환경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시등에관한규칙	먹는물 수질검사신청서 제출 수리·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검사성적서 발급(광역: 소속기관)

<부록7 : 법조문의 폐지·수정에 따라 삭제된 단위사무>

부처	법률	사무
경찰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관리·운영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 지정교육기관 지정·지정취소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국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등록등에관한업무위탁
기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위촉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접수(광역)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검역법	검역법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결핵예방 경비보조
보건복지부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상환기한의 연장 및 집행
보건복지부	기생충질병예방법	기생충 예방상 필요시 수거 및 검사(국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태료의 부과, 징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	기생충질병예방법	기생충 감염원 기능 시설의 관리(광역)
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환경 개선 위한 자원 조달,교육실시(국가)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재산세등 물납자의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통지
행정안전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지방교부세산정의 특례사무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설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사업자의 물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제정 및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기준 변경 시 변경 전후 사항을 모두 표시하도록 기준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중·장기정책목표 설정·통보·공표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자료제출 요청·시행계획수립지침 제정·통보(국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별법	학교의 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이공계 인력의 재교육·재훈련인력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광역)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사립학교의 교수요원·연구요원·교직원의 범위 및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사무직원의 범위 등 지정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설립등기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결과 보고 수리(국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설립등기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결과 보고 수리(광역)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개발진흥법	국가우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연구과제 선정·협약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차입·기술료 징수 등 보고 수리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교육·학예 관련 사항 재의 요구 및 제소 지시·직접 제소·집행정지결정 신청 등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교육·학예 관련 사항 재의 요구 및 재의 요청 수리·제소·집행정지결정 신청
교육과학기술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약품 제조 허가 및 의약품 수입 승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 명령·의견제출 및 학교용지 매입비용 협의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학술연구 활동 경비 지급 시 연구결과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방안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부모 등의 금융소득 관련 자료요청 및 비영리 장학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정보보호
교육과학기술부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추진 및 기술료 징수에 따른 보고 수리·납부 기술료 사용 협의
국토해양부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공시
기상청	기상법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협약 및 비용 출연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사업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약체결 및 비용 지원
기획재정부	관세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수리·발급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 명령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서류철부
기획재정부	국세징수법	입류재산 공매를 위한 매각예정가격 결정 시 점유관계·차입 또는 보증금 액수 등 현황 조사 및 질문·문서 제시 요구 등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중앙관서별 국유재산 총괄부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국·내외 발생현황 정보공개(광역)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금대여 신청거부, 대여취소, 기금회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예술문화위원회 설치·지방문화예술 진흥 재단법인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성계획 승인 협의, 승인 통보

문화체육 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방송통신 위원회	전파법	방송통신기가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문화체육 관광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보건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소득업무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기술사의 고용확대 시책 수립
국방부	군인사법	군 복지·체육시설 설치·운영 사항 결정
국방부	군인사법	원수 임명
국토해양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출자총액제한기간의 연장
국토해양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출자총액제한 기간 연장
국토해양부	건축사법	건축사협회 회장·부회장 선출 보고 수리
국토해양부	황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황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국토해양부	황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퇴직금의 용자 지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양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중원 교체임명 명령
노동부	기능대학법	기능대학의 설립(국가)
노동부	기능대학법	기능대학 및 법인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
보건복지부	약사법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식경제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해방지심의위원회 설치
지식경제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 취소 처분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제개혁의 강화 및 규제의 합리적 관리 등
환경부	특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도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한 조치사무

<부록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사무>

부처	법령	조항	단위사무명	현재사무유형	항후사무유형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5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7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실시 공고(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9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 심사(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10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 합격 결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10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11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공고(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13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14	역사 교과용도서에 대한 인정 심사 신청 수리(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16	역사 교과용도서에 대한 인정도서 인정 등(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18	역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19	역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위촉·임명(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20	역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장 임명(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22	역사 교과용도서심의회 간사 지명(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과용도서예 관한규정	23	역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연구위원 위촉(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7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행정권한)(특사)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7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행정권한: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6	학군문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대학설립·운영규정	11	대학 설립·경영하는 자의 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보유현황 보고 수리(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7	교원자격증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행정권한: 민간)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제출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제출 수리(행정권한)(특사)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조건부 허가 및 통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재산 이전 등의 증명서 제출 수리 및 법인 등기 보고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제출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 및 감독(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및 청문 실시(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제출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청산종결 신고 수리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6	교원자격증의 박탈(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7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행정권한: 교육감)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27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의 접수 등(행정권한)	국가 > 산하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40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수리(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46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 설치의 인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62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폐쇄 명령(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3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의 인수 운송 및 관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0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행정권한: 국공립 대학, 교육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전문대학)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63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폐쇄명령 시 청문(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육성법	7	과학관 설립계획(농지전용)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과학관육성법	7	과학관 설립계획(농지전용)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	사립학교의 경영기관,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적용대상 지정(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사립학교법	31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수리 및 지도(행정권한)	국가 > 산하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사립학교법	54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 접수(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사립학교법	54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유아교육법	22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2,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 자격증 수여, 재교부 및 정정 (행정권한: 민간위탁)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유아교육법	22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및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교원자격증 수여, 재교부, 정정(행정권한: 교육감)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유아교육법	22	유치원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 자격증 수여(행정권한: 교육감)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초·중등교육법	29	특수학교 국경도서의 편찬 및 수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초·중등교육법	29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 및 인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초·중등교육법	29	교과용도서(수학, 과학, 역사 제외)의 검정 및 인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초·중등교육법	29	교과용도서(수학, 과학)의 검정 및 인정(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초·중등교육법	21	교원 자격 검정 및 자격증 수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4	학교시설사업(농지전용) 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위임)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4	학교시설사업(농지전용) 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위임)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집처리사무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월납전에 침전하고 전역한 지등 또는 납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에우맞지 원에 관한 법률	6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에우맞지 원에 관한 법률	6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에우맞지 원에 관한 법률	6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에우맞지 원에 관한 법률	6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행정권한)	국가 > 산하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국립묘지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송부 요청 및 안장 여부 결정과 통보(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국립묘지 안장 여부 및 묘의 면적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국토해양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1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변경 승인에 관한 협의의 중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집처리사무
국토해양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1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변경 승인에 관한 협의의 중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집처리사무
국토해양부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의 중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집처리사무
국토해양부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의 중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집처리사무
국토해양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협의에 대한 사항 중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집처리사무
국토해양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협의에 대한 사항 중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3	국유토지 또는 바다 또는 군사시설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매장물 관리(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4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4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구거·하천·유지·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해안매립지 등) 내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18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행정권한: 수출자유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국가 > 산하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18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행정권한: 수출자유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제외)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관세법	93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물품의 확인(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기획재정부	관세법	71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기획재정부	관세법	95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기획재정부	관세법	108	국토해양부장관의 관할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18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행정권한: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2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2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40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2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가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행정권한: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양여를 목적으로 용도 폐지한 국유재산 제외)의 관리·처분(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재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취득 및 공고(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및 기부서·이행각서 제출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 필요 조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에 대한 협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4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재산 용도 폐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4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재산 대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8	소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처분(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취득 및 공고(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3	소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및 기부서·이행각서 제출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4	소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 필요 조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6	소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에 대한 협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29	소관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0	소관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2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사용료 징수 및 보증금의 예치, 이행보증조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4	소관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5	소관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6	소관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처분 및 손실 보상(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7	소관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시 청문 실시(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9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소홀 제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40	소관 행정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용도 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46	소관 일반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대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47	소관 일반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대부보증금 반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72	소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73	소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과 관련된 사용자·가산금 등에 대한 연체료 징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74	소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을 철거(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75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사용자·대부로 등의 과오납금 반환 시 가산금 반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8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관리·처분(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취득 및 광고(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3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으로 기부채납 및 기부서·이행각서 제출 수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4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취득 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 필요 조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16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관리전환에 대한 협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24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행정권한: 국토해양부)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29	소관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0	소관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사용 허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2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 징수 및보증금의 예치, 이행보증조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4	소관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사용료 면제(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5	소관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사용허가 갱신(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6	소관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처분 및 손실 보상(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7	소관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시 청문 실시(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39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소홀 제재(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40	소관 행정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용도 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46	소관 일반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대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47	소관 일반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대부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대부보증금 반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70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멸실 또는 철거 시 보고(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72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73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과 관련된 사용료·가산금 등에 대한 연체료 징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74	소관 국유재산(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내 불법시설을 철거 및 필요 조치(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37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에 대한 보관·사용·처분 등(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1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5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의 기관·사업·성질별 분류 및 소속분류 전환(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6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의 표준 지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8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의 관리(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9	지식경제부 소속 물품관리관 지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12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관리에 대한 분임 및 대리공무원 지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16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18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기준 제정 및 관리(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23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25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관리사무의 전자화를 통한 관리(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35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품의 폐기 승인(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37	지식경제부 소관 불용품에 대한 처분 등(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38	지식경제부 소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한 무상 양여(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48	지식경제부 소관 물품에 대한 검사(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35	보건복지부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품의 폐기 승인(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7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농지의 전용)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7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농지의 전용)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기획재정부	주세법	20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울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 설립 허가(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6	박물관·미술관 준학에서 시험의 관리(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18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협의 중 농지 전용(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18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협의 중 농지 전용(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병무청	병역법	37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위원 편입 대상자 선발시험의 실시(행정권한)	국가 > 산하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54	현역병 등 연간소요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행정권한: 국방부)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85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의 기준 제정(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31	의약품 제조업 허가·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수리 등(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32	신약 등 재심사(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33	의약품 재평가(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34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35	의약품 제조업 조건부 허가·허가취소(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36	의약품 제조 관리자(기술자) 승인(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38	의약품 동 생산 실적 보고 수리(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39	위해의약품 등 회수계획 보고 수리 등(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42	품목별 의약품 수입허가, 신고 수리(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43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 수출·수입·공해 반입허가(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52	의약품·의약품의 제법 등 기준 제정(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53	국가검정의약품 검정(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54	방사성 의약품 제조·수입사항 협의·결정(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62	타르색소 지정(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68	제조·수입 의약품 광고 심의(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69	의약품권 종사자 등 자료제출 요구 등(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0	의약품 제조업자 등 업무 개시 명령(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1	불량 의약품 폐기 명령 등(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2	의약품 등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3	제조·수입 의약품 등 검사명령(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4	의약품 제조업자 등 시설 개수·사용중단 명령(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5	관리자 변경명령(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6	의약품 제조업자 등 허가취소·업무정지 명령(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7	의약품 제조업자 허가 취소 등 청문(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78	약사감시원 임명(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81	의약품 등 제조업자 등 업무정지처분 길이 과징금 부가·징수(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약사법	98	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행정권한: 동물용)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입목시험·연구를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신고 수리 (행정권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내)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33	청소년수련시설(농지의 전용)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52	청소년 수련지구조성계획(농지의 전용)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33	청소년수련시설(농지의 전용)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52	청소년 수련지구조성계획(농지의 전용)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5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계획(농지 전용) 승인을 위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5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계획(농지 전용) 승인을 위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특허청	변리사법	5	변리사 등록신청서 제출 수리 및 등록증 교부·변리사등록부 기재·통지(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특허청	변리사법	5	변리사 등록 거부 조치(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특허청	변리사법	5	변리사 등록 취소 처분(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특허청	변리사법	6	변리사의 등록료 수납(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특허청	변리사법	6	변리사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시 신고 수리(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특허청	변리사법	6	변리사 법인설립 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특허청	변리사법	6	변리사법인 내 소속변리사 임면 및 변경에 대한 신고 수리(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시 인력·예산 이관 및 필요 교육 실시·처리지침 시달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11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시 사무처리지침 시달 및 필요 조치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6	행정권한의 수입·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취소·정지 처분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1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시 민간수탁기관 자격 제한 및 보완조치 마련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13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시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14	행정권한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조치명령·보고명령·취소 처분 등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15	행정권한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사무편람 승인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16	행정권한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처리상황 감사 및 시정조치·문책 요구 등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7	법무부 소속공무원(검사 제외)에 대한 승급 및 호봉 확정(행정권한: 소속/특행에 위임)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9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사 제외)에 대한 호봉 재확정(행정권한: 소속/특행에 위임)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공무원여비규정	29	공무원의 상시출장여비 지급액·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9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확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7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승급 및 호봉 확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승급 및 호봉 확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확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9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확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7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승급 및 호봉 확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14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기관, 범위 및 지급방법 등(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5	우정사업본부 소관 차량의 정부 배정 및 소속기관별 정부 배정(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7	우정사업본부 소관 차량 교체에 대한 승인(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26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결직 허가(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7	교육감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승급 및 호봉확정(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9	교육감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확정(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	26	교육감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결직 허가(행정권한)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공무원교육훈련법	13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행정권한)	국가 > 산하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법	62	국가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중어를 받을 경우 허가(행정권한: 대통령이 장관으로)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법	66	노동조합에 가입된 국가공무원(기획재정부)의 조합 업무 전임 허가(행정권한)	국가 > 소속기관	국가 > 소속기관/산하기관
행정안전부	농어촌주거택관촉진법	6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은천법	24	은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및 은천자원·수위변동 실태 등 조사(행정권한)	국가 > 민간위탁기관	국가 > 민간위탁기관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14	자전거도로공사 시행(농지전용) 또는 공사 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14	자전거도로공사 시행(농지전용) 또는 공사 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지원법	0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 시 농지전용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지원법	0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 시 농지전용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	54	지방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중어를 받는 경우 허가(행정권한: 대통령이 장관으로)	국가직접처리사무	국가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지방수도음육성지원법	9	지방수도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농지전용에 대한 시장·군수와의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지방수도음육성지원법	9	지방수도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농지전용에 대한 시장·군수와의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6	금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8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농지전용)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8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농지전용)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수도법	1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 제외)의 사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수도법	4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중 1일 1만톤 초과 사업에 대한 폐업 또는 휴업 허가(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수도법	48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수도법	6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 제외)의 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1일 1만톤 초과) 인가 취소, 효력 정지, 공사중지 등 명령(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수도법	6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 제외)의 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1일 1만톤 초과)에 대한 수도시설 개선 명령(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수도법	79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소 등 청문(행정권한: 국토부장관 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수도법	46	일반수도사업(농지전용) 인가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수도법	46	일반수도사업(농지전용) 인가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6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집개선사업계획승인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자연공원법	12	국립공원계획(농지전용)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자연공원법	13	도립공원계획(농지전용)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자연공원법	14	군립공원계획(농지전용)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자연공원법	12	국립공원계획(농지전용)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자연공원법	13	도립공원계획(농지전용)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자연공원법	14	군립공원계획(농지전용)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농지의 전용)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농지의 전용)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하수도법	17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또는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하수도법	17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또는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 선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	15	수질개선사업계획(농지 전용)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기초)	국가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 선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	15	수질개선사업계획(농지 전용)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권한: 광역)	국가 >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18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 수리 및 협의·고시, 실시계획 사본송부(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24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27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의 접수(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2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28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명령(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17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25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행정권한)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록9 : 공동사무의 사무유형 변화(국가)>

부처	법률	조항	사무명	2010년 사무유형	변경후 사무유형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유아교육 관련 업무 위탁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교육비 지원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국가)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등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제17조	설치계획 결정고시, 열람	국가+기초자치단체(장)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국가+기초자치단체(장)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고용정책의 분석 및 평가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법	제14조	원유검사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법	제21조	낙농진흥사업 사무 지도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비상대비 농수산물조사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비상대비 농수산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임무고지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시·군·구별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보건 복지부	정신보건법	제50조	진단 및 치료비 지원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 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보건 복지부	정신보건법	제52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보조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 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기초)
보건 복지부	정신보건법	제13조	정신보건사업 실시	국가+기초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기초)
보건 복지부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보건 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관리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보건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보건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입원조치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보건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명령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보건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 연장 결정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보건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퇴원 조치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공통사무(국가, 광역)
보건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보조	국가+광역자치단체(장)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보건 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비용 부담	국가+기초자치단체(장)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중소 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상인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국가+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지식 경제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 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지식 경제부	석탄산업법	제39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계상	국가+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 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협회에 대한 경비의 일부지원 사무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 단체(장)	공통사무(광역, 기초)
행정 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의 부과징수(국가/소속, 산하기관 포함)	국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 단체(장)	기초자치단체)소속/산하기관

<부록10 : 공동사무의 사무유형 변화(지방)>

부처	법률	조항	사무명	2010년 사무유형	변경후 사무유형
농림수산식품부	가족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5조	축사 이전비 등 지원요청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공동사무(광역,기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62조	관광진흥법 보상금 지급 등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주간 행사에 관한 사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공동사무(광역,기초)
지식경제부	상공회의소법	제54조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자체 장의 자금 우선 지원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법개정으로 사무삭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	사업승인권자의 시행승인내용 보고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직접처리사무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95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법개정으로 사무삭제